

2014 역사와교육학회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nd Its History Education

일시 2014년 11월 7일 10:00

장소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주최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표집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4 역사와교육학회 ·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The Territorial Disputes in East Asia
and Its History Education

주최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역사와교육학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학술대회 일정

□ 참가자 등록 09:30~10:00

□ 개회식 10:00~10:30

□ 사회 : 윤선태 (동국대)

■ 개회사 : 강택구 (역사와교육학회장)

■ 축사 : 김혜숙 (동국대 사범대학장)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장)

※ 기념 촬영·Tea Time

□ 제1부 주제발표 10:30~12:30

동아시아의 영토·국경인식 : 현황과 과제

□ 사회 : 윤선태 (동국대)

■ 근대 이후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인식 10:30~11:10

□ 발표 張華 (中國 中央民族大學 歷史文化學院)

□ 토론 손준식 (중앙대)

■ 일본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 11:10~11:50

□ 발표 사카모토 유리치(坂本悠一) (日本 立命館大)

□ 토론 한철호 (동국대)

■ 몽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11:50~12:30

□ 발표 TS. 쉐렌도르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 토론 김장구 (동국대)

♣ Lunch Time 12:30~14:00

□ 제2부 주제발표

14:00~17:00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 사회 : 심재욱 (동국대)

■ 한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14:00~14:40

□ 발표 강승호 (한성대)

□ 토론 황인규 (동국대)

■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14:40~15:20

□ 발표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 Tea Time

15:20~15:30

■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15:30~16:10

□ 발표 조성운 (경기대)

□ 토론 김인호 (동의대)

■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

16:10~16:50

□ 발표 박재영 (중앙대)

□ 토론 최선아 (서원대)

♣ Tea Time

16:50~17:00

□ 종합 토론

17:00~18:00

□ 좌장 : 조병로 (경기대)

□ 토론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리셉션

18:00~19:30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by 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HEA)** in Korea under the sponsorship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Dongguk Univ. &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eminar room, Dahyang-gwan,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November 7, 2014

Registration	09:30~10:00
---------------------	-------------

Opening Ceremony	10:00~10:30
-------------------------	-------------

Chair : **Yoon, Seon-Tae** (Dongguk Univ)

Opening Remarks : **Kang, Taek-Koo** (President of the HEA)

Congratulatory Message

: **Kim, Hye-Suk**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

: **Hwang, In-Gyu** (Director of 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

※ Picture-taking & Tea Time

Section 1	10:30~12:30
------------------	-------------

Territories in East Asia and Border Perception

: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Chair : **Yoon, Seon-Tae** (Dongguk Univ)

“Changes in Chinese Territory and Its Perceptions of Territorial Issues in the Modern Ages”	10:30~11:10
--	-------------

Zhang, Hua (Minzu University of China)

Discussion with **Son, Jun-Sik** (Chung-Ang Univ.)

“The Beginning of Japanese Border Disputes”	11:10~11:50
--	-------------

Sakamoto Yuichi (Ritsumeikan University)

Discussion with **Han, Cheol-Ho** (Dongguk Univ.)

“Territorial Issues in Mongolian History Education”	11:50~12:30
--	-------------

TS. Tserendorj (History Institute of Mongol Science Academy)

Discussion with **Kim, Jang-Goo** (Dongguk Univ.)

Lunch Time	12:30~14:00
-------------------	-------------

Section 2

14:00~17:00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y

Chair : **Shim, Jae-Wook** (Dongguk Univ)

“Territorial Issues in Korean History Education”

14:00~14:40

Kang, Seung-Ho (Hansung Univ.)

Discussion with **Hwang, In-Gyu** (Dongguk Univ.)

“Territorial Issues in Chinese History Education”

14:40~15:20

Lim, Sang-Se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iscussion with **Park, Jang-Bae** (NAHF)

Tea Time

15:20~15:30

“Territorial Issues in Japanese History Education”

15:30~16:10

Cho, Seong-Woon (Kyonggi Univ.)

Discussion with **Kim, In-Ho** (Dong-Eui Univ.)

“The Oder-Neisse line issue and German history textbooks”

16:10~16:50

Park, Jae-Young (Chung-Ang Univ.)

Discussion with **Choi, Sun-Ah** (Seowon Univ.)

Tea Time

16:50~17:00

Comprehensive Discussion

17:00~18:00

Moderator: **Cho, Byung-Ro** (Kyonggi Univ.)

Discussion with all guest speakers and panels

Reception

18:00~19:30

목차

■ 개회사

강택구 (역사와교육학회장) -----	1
----------------------	---

■ 축 사

김혜숙 (동국대 사범대학장) -----	3
-----------------------	---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장) -----	5
---------------------------	---

□ 제1부 주제발표

동아시아의 영토·국경인식 : 현황과 과제

■ 근대 이후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인식 ----- 9

張 華 (中國 中央民族大學 歷史文化學院)

▫ 토론 : 손준식 (중앙대) -----	29
------------------------	----

■ 일본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 ----- 31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日本 立命館大 社會システム研究所)

▫ 토론 : 한철호 (동국대) -----	68
------------------------	----

■ 몽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 71

TS. 체렌도르지(Tserendorj)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 토론 : 김장구 (동국대) -----	87
------------------------	----

□ 제2부 주제발표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 한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91
강승호 (한성대)	
▫ 토론 : 황인규 (동국대) -----	115
■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119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	148
■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151
조성운 (경기대)	
▫ 토론 : 김인호 (동의대) -----	165
■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 -----	167
박재영 (중앙대)	
▫ 토론 : 최선아 (서원대) -----	187

□ 종합토론

- 좌장 : 조병로 (경기대)
- 토론 :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CONTENTS

Opening Remarks

Kang, Taek-Koo (President of the HEA) -----	1
---	---

Congratulatory Message

Kim, Hye-Suk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 -----	3
Hwang, In-Gyu (Director of 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on) -----	5

Section 1

Territories in East Asia and Border Perception :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Changes in Chinese Territory and

Its Perceptions of Territorial Issues in the Modern Ages” -----	9
---	---

Zhang, Hua (Minzu University of China)

Discussion Son, Jun-Sik (Chung-Ang Univ.) -----	29
---	----

“The Beginning of Jpanese Border Disputes” -----	31
--	----

Sakamoto Yuichi (Ritsumeikan University)

Discussion Han, Cheol-Ho (Dongguk Univ.) -----	68
--	----

“Territorial Issues in Mongolian History Education” -----	71
---	----

TS. Tserendorj (History Institute of Mongol Science Academy)

Discussion Kim, Jang-Goo (Dongguk Univ.) -----	87
--	----

Section 2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y

“Territorial Issues in Korean History Education”	91
Kang, Seung-Ho (Hansung Univ.)	
Discussion Hwang, In-Gyu (Dongguk Univ.)	115
“Territorial Issues in Chinese History Education”	119
Lim, Sang-Se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Discussion Park, Jang-Bae (NAHF)	148
“Territorial Issues in Japanese History Education”	151
Cho, Seong-Woon (Kyonggi Univ.)	
Discussion Kim, In-Ho (Dong-Eui Univ.)	165
“The Oder-Neisse line issue and German history textbooks”	167
Park, Jae-Young (Chung-Ang Univ.)	
Discussion Choi, Sun-Ah (Seowon Univ.)	187

Comprehensive Discussion

Moderator: Cho, Byung-Ro (Kyonggi Univ.)

Discussion with all guest speakers and panels

개회식 Opening Ceremony

■ 개회사 Opening Remarks

강택구 (역사와교육학회 회장)

Kang, Taek-Koo (President of the HEA)

■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김혜숙 (동국대 사범대학장)

Kim, Hye-Suk (Dean of the college of Education, Dongguk Univ.)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장)

Hwang, In-Gyu (Director of the History Education Association)

개 회 사 Opening Remarks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영토 분쟁은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 영토 분쟁, 쿠릴열도 분쟁,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등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긴장과 대립 상황은 직접적으로는 영토문제와, 간접적으로는 영토와 관련된 역사인식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영토문제는 역사교육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며, <국사>라는 ‘매트릭스’는 자신과 타자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단절시키며, 심지어는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그들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국가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공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역사교과서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불화와 대립,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학습 내용이 타민족이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극복하여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학회는 위와 같은 필요성 및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번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를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이라 설정하였습니다. 제1주제 발표와 토론은 서로의 인식차이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하여 영토문제를 보는 동아시아 각국의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제2주제는 한중일 3국의 역사교육에서 영토문제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역사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동아시아 3국의 역사교과서 서술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에 동참하여 주신 국내외 저명학자들과, 특히 중국, 몽골, 일본학자 선생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국제학술회의를 후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감사를 드리오며, 학술회의를 주관하여 준비해 주신 학회 임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년 11월 7일

역사와교육학회장 강택구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청명한 공기와 높고 푸른 하늘이 마음의 여유를 베푸는 만추의 계절에 뜻 깊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의 주최인 역사와교육학회는 1980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역사학자들과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역사와 교육을 화두로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천착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강택구 회장님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오랜 시간 나와 우정을 쌓아온 분이래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이 학회의 개최를 축하하게 됩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꾸준히 지속하는 연구소로서, 연구소장이신 황인규 교수님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주임교수님으로서 언제나 열정과 화합에 앞장 서는 분이시래 더욱 축하의 마음을 보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역사가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과거 역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 속에 미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인식을 바르게 지녀야만 오늘의 좌표가 보다 충실하게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대의 주역이 바로 우리이며, 바로 교수와 학생이 사제동행을 해 나갈 때 비로소 더욱 충실하게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역사와교육학회와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가 주관하고 동북아역사재단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에서 후원하는 학술대회 ‘동아시아 역사문제와 역사교육’은 그러한 점에서 그 뜻이 더욱 깊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몽골,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전체의 위상을 교내외에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범대학은 미래의 사범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외 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의 장을 여는 것은 사범대학이 추구하는 교육과 연구 두 분야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와교육학회와 역사교과서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한 역사와교육학회장 강택구 교수와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장 황인규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후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두가 동참하여 학회와 연구소, 그리고 사범대학이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사범인의 행운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2014년 11월 7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장 김 혜 숙 두손 모음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안녕하십니까?

금번 역사와교육학회에서 ‘동아시아의 영토문제와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교육학회는 동국역사교육학회에서 시작하여 전국학술단체로 출발한 이후 많은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다문화와 역사교육’등에 이어 ‘중등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사 서술’ 등을 비롯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도 역사학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인들에게 중요하고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과거 역사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핵심국으로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좌우하였습니다. 예컨대 고대의 나당전쟁이나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은 양국 또는 삼국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동아시아의 판도를 좌우하는 국제전wod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서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분쟁은 반드시 역사 화해와 역사평화로 새롭고 바람직한 동아시아형 국제질서를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역사와교육학회의 자매기관이라고 할 역사교과서연구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공동역사과서 협의와 동아시아 공동역사교과서의 편찬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역사 분쟁은 미래를 이끌어갈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가 공유하는 공동역사교과서의 협의 편찬 및 간행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역사와교육학회에서 다루는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역사교육도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에서 한중일의 역사적 영토인식 문제를 어떻게 공유하고 이를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동아시아형 역사와 역사교육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중국 일본 몽골 학자와 국내 전문가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역사와교육학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후원해주신 동북아역사재단과 동국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 역사교육학계를 선도하는 역사와교육학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7일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장 황 인 규 올림

제1부 주제발표 Section 1

동아시아의 영토 · 국경인식 : 현황과 과제

Territories in East Asia and Border Perception :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 근대 이후 중국의 국경 변천과 영토인식

“Changes in Chinese Territory and Its Perceptions of Territorial Issues in the Modern Ages”

張 華 (中國 中央民族大學 歷史文化學院)

Zhang, Hua (Minzu University of China)

▣ 토론 : 손준식 (중앙대)

Discussion Son, Jun-Sik (Chung-Ang Univ.)

■ 일본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

“The Beginning of Japanese Border Disputes”

坂本悠一 (日本 立命館大)

Sakamoto Yuichi (Ritsumeikan University)

▣ 토론 : 한철호 (동국대)

Discussion Han, Cheol-Ho (Dongguk Univ.)

■ 몽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Territorial Issues in Mongolian History Education”

TS. 체렌도르지 (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TS. Tserendorj (History Institute of Mongol Science Academy)

▣ 토론 : 김장구 (동국대)

Discussion Kim, Jang-Goo (Dongguk Univ.)

근대 이후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 인식

장 화

(중국 중앙민족대학 역사문화학원)

-
1. 중국 근대 이후 강역의 변천
 - (1) 제정 러시아의 동방(東方) 확장
 - (2) 청나라 동북변 국경선의 확립
 - (3) 청 왕조, 중국 역사의 대일통강역(大一統疆域)을 계승 및 회복
 - 1) 제정 러시아가 동북 변방 영토를 차지
 - 2) 「감분서북계약기(勘分西北界約記)」에 의해 중국 서쪽 강역 변경
 - 3) 번속국(藩屬國) 상실로 인한 강역의 화변(禍變)
 - (4) 열강의 침범으로 변강(邊疆) 위기 촉발
-

국경은 근대 국가의 개념으로 이는 관련 국가들이 조약의 서명을 하고 측량을 통해 각각의 방위를 측정하여 국가 간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역사에서의 강역(疆域)은 고대 국가 개념으로, 이는 근대 이전 역사에서 다른 시기에 왕조 국가 스스로 인정하여 관리 및 통제할 범위에 해당한다. ‘주권(sovereignty)’이란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인데 곧 최고 권력이란 뜻이다. 『간명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주권을 국내와 국제, 두 방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대내(對內)주권은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지는 책임 혹은 권위’라고 하였고, 대외(對外)주권은 ‘한 국가가 외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서 ‘국가의 자주와 독립’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주권은 국가가 지닌 대·내의 최고 권력이자 대외의 독립적 지위로서 국가의 주권은 민족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근본적 속성이기에 민족국가를 ‘주권국가’라고 달리 부르는

것이다.

전통적 국가주권이론의 맹아기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로, 중세 시대의 변천과 발전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19세기에 이르러 하나의 완비된 이론 체계를 갖추게 된다. 민족국가주권원칙이 국제관계사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Westfalen條約)」이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은 실천적으로 국가의 주권·국가영토 그리고 주권평등을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데 긍정하였고, 더 나아가 현대주권국가체계를 탄생시킴으로써 주권국가를 정치 통치의 기본형식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대혁명은 주권의 본질과 주권 행사의 동일성을 실천을 통해 확인시켜 주었다.¹⁾

영토·국민·정부·주권은 하나의 국가가 구비해야 하는 네 가지 요소로,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속성(statehood)이다. 이 때문에 민족국가(state nation)를 주권국가라고도 칭하는 것이다. 주권국가는 가장 주요한 국제정치 행위 체이자 국제체계의 기본 구성단위이다. 주권은 국가가 저 유한한 영토 내에서 독립하고 자주적으로 자기의 대내·외 사무를 처리하는 최고 권력이다. 대내 최고권력이란 국가가 그의 영토 범위 내에서 일체의 사람과 사무, 나아가 영토 너머의 본국 국민과 본국 산업에 대한 관한 권력을 실행하는 것으로 즉 국제법의 의미에서 말하는 ‘속지우월권(屬地优越权)·속인우월권(屬人优越权)’이고, 한 국가가 본국의 영토 범위 내에서 모든 사무를 통치하며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외독립권은 국가가 국제관계에서 완전히 자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외래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주권은 독립국가 간의 평등관계를 상징한다. 이는 국제 교류 가운데 그 한 국가가 자기의 영토 범위 내에 담지하고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 겸 법률적 권위이자, 다른 더 높은 합법적인 권위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고 국내 관할 사건에 속한다면 반드시 다른 국가나 국제 조직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권에 대해 서술한 이 두 가지 기본 속성은 국가주권에 대한 본질의 표현이자 국가 주권의 이론적 기본 설명이다. 주권은 국가 존재의 기초이고 국가주권의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국제법은 각종 행위자를 제약하는 원천이다.

1) 마소군(马小军), 「영토주권이론적변화여중국영토안전재인식(领土主权理论的变化与中国领土安全再认识)」, 공식망(共识网), 2010.05.13, <http://www.21ccom.net>.

1. 중국 근대 이후 강역의 변천

역향추리(逆向推理)에 의거하여 설명하자면, 강역이란 중국 역사에서 강역이 확립된 이후 통일된 나라의 제도 안에서 중화 각 민족의 역사상으로 생겨난 구역과 범위의 총계인데, 이는 곧 중국 각 민족의 역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론하여 정리해 본 방식이다. 역사진보론은 중국의 역사적 강역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이 보여주지만 역향추리론은 국경지대의 역사귀속을 입증할 때 자주 이용된다. 18세기 중기에 이르러 역사진보론으로 중국 역사 강역을 최종 확립했을 때, 동시에 역향추리에 의거하여 중국 역사 강역을 확립했을 때, 곧 국가는 대통일의 가운데에 놓이게 되고 중화 각 민족의 활동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통치하는 강역 내의 활동이 되는 바, 이는 오늘 중국의 통일적인 다민족국가와 다원 일체화된 중화민족의 구성의 기초를 다졌다.²⁾

(1) 제정 러시아의 동방(東方) 확장

1581년 제정 러시아 식민지 점령군은 우랄 산맥을 넘어 아시아에 진입했다. 17세기 초 제정 러시아는 동방(東方)으로의 식민영역 확장 중에 중국 서북변 국경 지대에 있는 액로특몽골인(厄鲁特蒙古人, 지금 서부 몽골족에 속하는 오이라트족(Oirats))과 접촉하였는데, 이후 쌍방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바로 이런 관계가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침략과 반침략, 식민과 반식민, 통제(控制)와 반통제의 투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정치 왕래가 병존하였던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약탈과 반약탈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와 교류·병존하였는데 양쪽의 활동은 주로 어얼치스(额尔齐斯) 강 유역에서 집중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정 러시아는 또 시베리아를 따라 빠르게 동쪽을 향해 식민지 확장을 실행하였고, 1630년대에 이르러 그 세력은 아시아의 동단(东端)까지 도달하였다. 50년

2)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백수이(白寿彝), 「중국역사상적강역문제(中国历史上的疆域问题)」, 『역사지식(历史知识)』 제4기(期), 1981; 양건신(杨建新), 「사아최초점점중국령토화역사상적중국강역문제(沙俄最早侵占中国领土和历史上的中国疆域问题)」, 『중아관계사논문집(中俄关系史论文集)』, 감숙인민출판사(甘肃人民出版社), 1979; 담기양(谭其骧), 「대역사시기적중국변계화변강적계점간법(历史时期的中国边界和边疆的几点看法)」, 『중국사연구(中国史研究)』 제11기, 중국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1979; 조영춘(赵永春), 「관우중국역사상강역문제적계점인식(关于中国历史上疆域问题的几点认识)」, 『중국강역사지연구(中国边疆史地研究)』 제3기,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2002.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정 러시아는 아시아 식민지 확장으로 영토 면적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른 것이다.

(2) 청나라 동북변 국경선의 확립

1643년 제정 러시아는 야쿠츠크(雅庫茨克)를 거점으로 중국 흑룡강 유역을 향해 영토를 확장하였는데 비교적 집중된 경우는 세 차례에 해당된다(1643년~1646년의 폴라코프(波亞科夫) 침입, 1649년~1653년의 하바로프(哈巴羅夫) 침입, 1653년~1658년 스테파노프(斯捷潘諾夫) 침입). 그러나 청나라 동북 국경의 군민들의 반격(1685년과 1686년, 두 차례의 아극살(雅克薩) 반격전이 있었음)으로 인해 제정 러시아의 식민 확장은 억제되고 있었다. 이에 청나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1689년 담판을 통해 「중·러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중·러 네르친스크 조약」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조약인데 이로 인해 「아바합의도약(阿巴哈依圖界約)」과 「흡극도계약(恰克圖界約)」(일명 카흐타 조약)이 구성된 것이다. 조약에서는 사빈다바하(沙賓達巴哈)에서 어얼구나(額爾古納)강 상류를 기준으로 청나라 북부와 제정 러시아의 경계를 확정하였는데, 지금의 몽고인민공화국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이다.

(3) 청 왕조, 중국 역사의 대일통강역(大一統疆域)을 계승 및 회복

1683년 청나라는 출병하여 대만을 되찾고 다음 해에 대만부(台灣府)를 설치하여 복건성(福建省)에 예속시켰다. 1727년 청나라는 티베트에 '주찰서장관사대신(駐扎西藏辦事大臣)'을 설치하여 티베트의 사무까지 직접 관할하였다. 또 1755년~1757년 청군은 잇따라 준가얼(准噶爾)을 평정하여 서역 천산(天山) 이북 지역까지 통일하였으며 1759년에도 출병하여 크고 작은 호자(和卓, 위구르족 무슬림 지도자)들의 반란을 평정하고 서역 천산(天山) 남쪽 지역까지 통일하였다. 청 왕조는 산해관에 들어간 후 백 여 년간의 노력으로 이같이 역사상 중국 강역의 통일을 최종적으로 계승 및 회복하였다. 그 중 동북과 북방 지역은 러시아와 조약 체결을 통해 정식으로 변경을 확정하였는데 파티션(partition)측량(分区测绘)을 도입하여 1762년 「건륭내부여도(乾隆內府輿圖)」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청나라 시기 강역의 기준이 되었다.

1842년 8월 청(淸) 정부는 영국의 압박에 못 이겨 근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듬해 10월, 양국은 「오구통상점선후조관(五口通商附

粘善後條款)」(즉 호문조약(虎門條約)), 「오구통상장정 : 해관세칙(五口通商章程 : 海關稅則)」을 체결하였는데, 영국은 「남경조약」을 통해 주요 통상에 관한 권리와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공행(公行) 제도를 폐지하고 중국을 압박하여 광주(廣州), 복주(福州), 하문(廈門), 저파(寧波), 상해(上海)를 개방하고, 관세협정권·영사재판권·일방적인 최혜국대우를 취득하는 동시에 홍콩을 강제 분할하고 무역의 집산지로 삼았다. 영국이 「남경조약」에서 취득한 통상 권익은, 일찍이 1792년 매카트니(g. macartney)가 거느렸던 첫 번째 영국 사절단이 북경에 왔을 때부터 이미 제출되었는데, 70년 이후 영국은 이제 ‘포함정책(炮艦政策)’을 이용하여 청나라 정부를 강박한 것이다.

1) 제정 러시아가 동북 변방 영토를 차지

영국과 달리 제정 러시아는 제2차 아편전쟁이라는 중국민족의 대혼란을 활용하여 일종의 약탈과 같은 행위를 취했는데, 그들은 1858년 청 정부를 강박하여 「애혼조약(璦琿條約)」을 체결하고, 1860년에 또 「북경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광활한 중국 영토를 강점하며, 제정 러시아의 통치를 이룬바 ‘확고한 질서’를 아직 건립하지 못한 모든 이웃 나라의 영토까지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1856년 러시아 외교대신 고르차코프(Gortchakov)의 말이다.).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후 중국과 러시아 동쪽 변경이 확정되었는데 청나라 동북쪽 변경은 백 여 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는 피터 대제(Peter大帝) 때부터 러시아는 반드시 ‘네바강 하구, 돈하 하구, 흑룡강 하구를 점유’한다는 전략을 견고히 실시하였는데, 이것을 ‘러시아 미래의 발전에 대해 특히 중요’(18세기 초 피터 대제의 말)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때, 일부 제정 러시아 확장론자들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할 때 할양한 영토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고 주창하며 이 조약의 성질을 극력 왜곡하였는데, 러시아가 조약은 ‘강요당해서 체결한 것’이며 ‘국제공법에 위배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다. 또 중요 거점인 흑룡강 좌측 해안을 점유하거나 ‘최소한 흑룡강을 따라 캅차카 반도(堪察加半島)와 일본까지의 항행권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제기하기도 했다.

1860년 제정 러시아는 청 정부를 강박하여 「북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또한 영토를 할양하는 조약인데, 「애혼조약」을 확인하는 기초에서 진일보하여 중국 영토를 할양하라는 조약이었다. 전문은 총 15조인데 주요내용은 여전히 영토할양에 있어, 장차 흑룡강(黑龍江) 이북과 우수리강(烏蘇裏江) 이북의 중국영토를 러시아에게 할양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네르친스크 조약」과 비교해보면 「북경조약」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쪽 국경이 확정되면서 중국은 100만 평방미터의 영토(이 가운데 흑룡강 이북이 60만 평방

미터, 우수리강 이동 40만 평방미터)를 잃어버렸다. 이로 인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 동북쪽 변경의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이 확정적으로 드러났다.

2) 「감분서북계약기(勘分西北界約記)」에 의해 중국 서쪽 강역 변경

1822년 제정 러시아는 「서서백리아길이길사인조례(西西伯利亞吉爾吉斯人條例)」를 반포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초원에 대한 점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즉 러시아 세력이 점차 중국 서북 변경 인접까지 접근한 것이다. 아편전쟁 후 제정 러시아는 청 왕조의 허약을 이용하여 신강 서쪽 지역을 끊임없이 침범하며 점거하였다. 1844년~1847년 러시아 군대는 잇따라 신강 파이크스호(Lake Balqash) 동쪽의 아라타오산(阿拉套山) 일대를 수차례 침입하였고, 과파이(科帕尔) 보(堡)(지금의 카자흐스탄 카파얼(卡帕尔))를 건립하여, 러시아의 세미팔라틴스크(Semipalatinsk, 현 카자흐스탄 도시) 남쪽 하단에서부터 신강의 카슈가르(喀什噶尔)와 중앙아시아 하오한(浩罕)까지 연결하면서 타슈켄트(Tashkent)의 요충을 장악하려 하였다.

1854년 러시아 군대는 다시 신강 이리하(伊犁河) 중류 이남 지역을 침입하고 고이반 아리마도(古尔班阿里玛图)에 유이내(维尔内)보를 건립하였다.(지금의 카자흐스탄의 알마티(阿拉木图)) 1840년대부터 50년대 말까지 채 2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러시아는 무장 침입은 물론 군사 보루까지 건설하며 강제로 이민을 시키는 등의 수단을 통해 신강 파이크스호 동쪽과 남쪽의 중국영토를 끊임없이 침입하였다. 아울러 불평등조약을 통해 그 동안 점유한 중국영토를 합법화하려고 하였다.

3) 번속국(藩属国) 상실로 인한 강역의 화변(禍變)

근대 즈음까지 청 왕조와 중번 관계를 유지했던 국가로는 ‘조선(朝鮮), 월남(越南), 유구(琉球), 면전(缅甸, 미얀마)’ 등이 있다. 이런 중번 관계는 대부분 역사의 계승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진행된 주요 형식을 살펴보면 책봉이나 조공(조선은 년 1회, 월남과 유구는 2년 1회, 면전은 10년 1회) 그리고 번속국 군왕이 즉위할 때, 청 정부가 전문적인 사절을 보내고 칙서(敕書)와 인신(印信)을 가지고 군왕을 책봉하였다. 이는 원래 고대 속국(屬國)제도에서 시작하여 근대까지 변천되며 형성된 일종의 특수한 번속 국가관계로서 번속국은 종주국에 대하여 일정한 종속과 의존관계가 되고, 종주국으로서 청 왕조는 번속국에 대하여 일정한 지배와 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열강을 포함한 국제상의 승인을 포괄적으로 얻은 것이었다.

- 유구국 : 1872년 10월 일본은 유구국왕 상태(尙泰)에게 분봉을 강행하여 변왕으로 삼았는데 이로써 유구는 중국과 일본 양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일본은 이것은 유구를 침범하는 첫 단계로 여겼다. 2년 후 일본은 또한 중·일 「북경전약」의 내용을 왜곡하여 (조약 가운데 ‘유구의 일반 민중(琉球船民)’ 부분을 오도하여 ‘일본국의 속민’이라고 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으로 일본은 청나라가 이제 유구가 일본에 귀속되었음을 승인했다는 근거로 여긴 것이다) 유구를 병탄하고 번치현(藩置縣) 폐지를 선포하였다.
- 조선국 : 1876년 2월 일본은 ‘군함 외교’로 조선을 강박하여 이른바 「강화조약(江華條約)」을 체결하였다. 제1조에서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주권을 보유한다’고 하며, 일본은 조선이 우선 청 왕조와의 종번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하였다. 1882년 일본 또한 조선을 강박하여 「인천조약(仁川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 자국 군대를 주둔하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점차 깊이 하였는데 이후 ‘갑오전쟁’이 발발하였다.
- 월남 : 1873년 프랑스 군대는 하노이(河內)를 침범하고 월남을 강박하여 「서공조약(西貢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조약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가 월남의 보호국이라는 것이 승인되었다. 1882년~1883년 프랑스 군대는 중국의 이웃 나라 월남 북쪽을 여러 번 침입하고 나아가 ‘중·법전쟁(中法戰爭)’(1883~1885)의 실마리를 일으켰다.

(4) 열강의 침범으로 변강(邊疆) 위기 촉발

제정 러시아가 신강의 이리(伊犁)를 침범하자 서북 변강이 위기에 빠졌다. 1871년 제정 러시아는 신강의 반청 봉기와 하오한(浩罕) 군관 야쿠브 베그(阿古柏)의 침입으로 신강의 후방이 혼란국면이 된 이 틈을 이용, 즉각 출병하여 이리(伊犁)를 점거하자 비로소 변강의 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당시 제정 러시아의 신강 형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청 정부는 신강을 수복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 그래서 초기에 청 정부에게 이리(伊犁)를 침범하는 것은 청나라를 대신하여 수복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는 임시변통의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대고, 산해관 내외를 모두 숙청하고 우루무치(烏魯木齊)와 마나스(瑪納斯)현 등의 각 성이 탈환되면 바로 돌려준다’라고 말했다. 1878년 좌종당(左宗棠, 1812~1885)이 신강을 되찾았는데 다만 제정 러시아가 이리(伊犁)를 강점하고 있었기에 청 정부는 곧 러시아와 협상을 개시하여 4년간 돌려받는 교섭담판을 진행하였다.

한편 마가예사건(馬嘉禮事件)과 서남 변강의 위기를 살펴보자. 청나라와 미얀마의 중

변관계는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는데 이에 영국은 일찍이 미얀마를 병탈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1874년 영국은 약 200여명에 가까운 무장 첩병부대를 앞세워 미얀마로 진입하여, 미얀마에서 운남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탐측하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후문을 열려고 하였다. 영국군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어 통역원 마가예(马嘉礼)가 독단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남쪽으로 나아가 영접하려 하다가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피살되었다. 이때 영국은 압박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단숨에 둘 사이에는 긴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듬해 중국과 영국은 「연대조약(煙台條約)」을 체결하여 이 일을 수습하였는데 1885년 영국군은 미얀마에 침입하였고 이듬해 미얀마를 함락시켜 영국의 식민지로 삼았다. 동시에 중국과 영국은 「회의면전조관(會議緬甸條款)」을 체결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 정부는 부득이 영국의 미얀마 점유를 승인하고 말았다.

일본 군대가 대만을 침범하여 동남쪽 변경도 위급함을 알렸다. 1874년 일본은 대만 고산족(高山族)이 대만으로 표류해 온 유구의 해상 난민을 과실치사시킨 사건을 이용하여 출병,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범함으로써 동남쪽 변경이 위급해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해 10월, 중국과 일본이 「북경전약(北京專約)」을 체결하자 일본군은 비로소 대만에서 철수하였다.

영국 군대는 다시금 룡투산(隆吐山)을 침범하여 티벳이 급함을 알렸다. 1888년 3월 영국 군대는 2000여 병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티벳 변경 요새인 룡투산(隆吐山)에 침범한 제1차 ‘침강전쟁(侵藏戰爭)’을 일으켰는데, 이에 1890년 양국이 「장인조약(藏印條約)」을 체결하면서 영국이 물러가게 되었다. 영국과 러시아의 파미르(帕米尔) 침범으로 서북 변경이 또한 다시금 위기에 빠졌다. 1891년과 1892년, 제정 러시아는 두 차례 출병하여 파미르를 침범하였으며, 영국도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1892년 파미르 중심 지역 ‘소만탑십(蘇滿塔什)’에 침입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와 영국은 서로 결탁하여 자신들끼리 중국의 영토였던 파미르를 분할하려고 하였다.³⁾

‘일아전쟁(日俄戰爭)’ 이후 특히 1907년 제1차 「일아밀약(日俄密約)」이 체결되자 제정 러시아는 중국 몽골 지역의 침투와 침략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 정부는 ‘새로운 정치(新政)’를 실행하려는 기회를 활용하여, 변경지역에서 전격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변경의 낙후되고 보수적인 사회경제문화를 개선하고, 변경의 국방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1909년 말, 청 정부는 외(外)몽고지역에서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였는데 제정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한편, 제정 러시아는 외교와 군사 압력을 이용하여 청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던 ‘새로운 정치’를 정지

3) 려성(厉声), 「근대중국변계변천여변강문제(近代中国边界变迁与边疆问题)」, 『백년호(百年潮)』 제 10기(期), 중국중공당사학회(中国中共党史学会), 2007.

시켰다. 그 외에도 '새로운 정치'가 촉발시킨 이익과 권력의 분쟁을 이용하여 몽골 상층의 봉건 왕족 사이의 불만을 촉발시키고 독립을 선동하기도 했다.

'신해혁명' 폭발 후, 제정 러시아는 또 다시 중국 동북 변경 영토를 잠식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자 1914년 11월 중국과 러시아는 「회정호룬페이조건(會訂呼倫貝爾條件)」을 체결하여 후룬베얼(呼倫貝爾)의 '독립'을 취소하고 '하나의 특별 구역으로 정하여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10월 혁명 후에 소수 분열 세력은 그 무대와 후원세력을 잃어버리자 '자발적으로 특별 구역을 취소'하고 위 조약을 폐지한다고 선포하게 되는데, 후룬베얼(呼倫貝爾) '독립'을 둘러싼 촌극은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

1903년 말 영국군은 '제2차 침장전쟁(侵藏戰爭)'을 일으켜, 이듬해 8월에 라사(拉薩)를 점령하자 티벳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라사조약(拉薩條約)」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은 티벳 정부가 영국의 보호를 받는 '독립정부'의 수립을 대외적으로 보인 것인데, 이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대가 촉발되었다. 그 후에 체결한 「신정장인조약(新訂藏印條約)」에서 영국은 부득이 중국의 티벳에 대한 주권을 다시 승인하였는데 이후 영국은 침략 수단을 바꿔 군사 침입을 위주로 하지 않고 티벳 상층을 자신들의 협력자로 끌어들이면서 내부로부터의 '티벳 독립'을 계획하게 된다. 달라이라마(達賴)는 영국군이 티벳에 남아있는 청군세력을 격퇴하여 이후 티벳으로 하여금 평등한 나라의 신분으로 청정부와 직접 담판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는 티벳과 영국이 직접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티벳의 '독립 요구'의 시작이다.

민국시기, 군벌들의 혼전(混戰) 게다가 계속되는 일본의 중국 침략 등 사방 곳곳의 여러 요소들은 중국이 변계·변강 문제에서 정력과 역량을 투입할 겨를이 없게 하였고 역사적으로 미뤄둔 변계(邊界)·변강(邊疆) 문제 해결의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 후, 민국정부는 전승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역사가 남겨 둔 국경의 확정 문제 해결과 국가 영토주권을 지키는 방면에 다소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 후 미국이나 소련이란 두 거대 제국이 주재하는 상황과 '극동의 전후 안배'라는 제약이 있었고, 또 장개석(蔣介石)이 내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들의 국내 전략에서도 일정한 견제를 받았으며, 또 영국이 이러한 극동 식민지 이익을 옹호하려는 음모를 드러내면서 이를 회복하려는 계획이 난망하게 됨으로써 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근대 이래의 중국의 국경 지역 통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종의 약화-강화-약화의 순환 추세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나라 말기에 서북 변경의 위기는 심해졌고 변

경의 분열 세력이 활개할 때, 중앙정부는 신강과 동북에 성을 설치함으로써 변경 지역의 통치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근대 중앙정부 권위가 점차 약해지는 것에 따라 변경과 본토(内地)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져 버렸다. 중화민국은 설립 후 머지않은 시기, 이른바 남북대치와 군벌들의 혼전 국면을 빼고 중앙의 권위를 다시금 재구하는 것은 여전히 발을 내딛기가 어려웠다.

남경의 국민정부는 비록 형식적으로 전국을 통일하였다고 했지만 변경을 다스리는 역량에서는 부족했다. 특히 변경 지역 민족과 종교문제가 복잡한 것은 근대 변경(邊境) 내부의 사회와 정치 상황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청말 시기 변경에서는 이미 심각한 민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도 여기에 경주되고 있었다. 신강 지역은 그 특수하고 중요한 지역적 정치 환경과 복잡한 민족·종교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⁴⁾ 복잡한 민족·종교 상황과 낙후된 문화교육, 본토와 이질적인 정치형태, 서방 열강 세력의 삼투(滲透)와 같은 현상은, 근대 이후 중국 변경 지역 사회와 정치 환경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근대 이후 중앙 권위가 약화되면서 중앙정부와 변경 지역의 관계는 불안정 면모가 반복되는 복잡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 중국은 서방 민족국가의 침략을 당하는 동시에 서방 민족국가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 자신의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따라서 중국 전통적인 변경 사회·정치와 이에 대한 인식은 왕조국가의 범주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근대 중국의 변경 사회·정치 환경은 복잡하지만 변경지역은 중국민족국가의 구성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해야 할 바이다. 중국 강역(疆域)의 형성은 아주 긴 발전 과정을 겪었다. 변경은 중국 강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는 중국 강역의 변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근대 이래 국제 정치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 따라 중국이 세계 공업화 과정에 휘말려들면서 점차 근대 서방에서 정의하는 강역 관념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심각한 변방의 국경 문제가 야기되었다. 근대 중국 강역의 사회·정치 상황과 변방 인식의 발전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이렇게 중국 역사에서 강역의 형성 형성을 고찰하는 것들은 국민들의 주권관념을 증가시키고 국가 영역의 완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의를 담지하고 있다.⁵⁾

오늘 중국의 변경은 역사적으로 중국 변경의 계승이다. 근대의 변경 문제는 신(新) 중국 시기 변경의 안정과 발전에 있어 잠재적으로 심각한 후환으로 남겨져 버렸다. 다시

4) 단금생(段金生), 「근대국인관우신강적인식(近代国人关于新疆的认识)」, 『중국변강사지연구(中国边疆史地研究)』 제2기,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史地研究中心), 2009.

5) 앞의 논문.

말하면 반식민·반봉건의 옛날 중국은 근본적으로 변경지역에서의 분열주의를 제거하여 변경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을 지니지 못한 채 이를 물려줌으로써, 뒤이어 탄생한 신 중국이 이를 완수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이 역시 신 중국의 역사적 사명이다.

주변 국가와 더불어 국경을 나누는 문제에서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는 근대부터 중국의 청 정부·북양 정부·중화민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에 주변의 서구 열강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1945년 이후에 중국 주변의 전(前)식민지 국가들이 분분히 독립하면서 신 중국의 '새로운' 이웃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신 중국이 성립되자 곧 이렇게 새롭게 독립한 이웃 나라들과 함께 경계 조약을 맺어야 하는 역사적 중임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물론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계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협상 기술의 측면도 전연 부정 할 수 없다. 다만 중국에게 남겨둔 이런 거대하고 힘든 국가 간의 국경선 확정이라는 임무에서, 자연스럽게 신 중국과 이러한 대다수의 새로운 독립국들은 건국 이전의 식민시기를 거치면서 잔존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대한 역사 문제들을 은연 중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이웃 나라들 간의 육지 국경 문제는 이미 거대한 성취를 취득하였다. 중국은 육지 상에 14개 이웃 국가가 있고 지금까지 그 중 12개 국가들과 협정을 맺고 육지 경계를 확정하였다. 각각은 미얀마(1960년), 네팔(1961년), 몽골(1962년), 북조선(1962년), 아프가니스탄(1963년), 파키스탄(1963년), 라오스(1991년), 카자흐스탄(1998년), 베트남(1999년), 키르기스스탄(2002년), 타지키스탄(2002년), 러시아(2005년)이다. 이미 확정된 국경은 중국 육지 국경선 총 길이 22,000여 킬로미터의 90%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토 주권의 완결·통일·안전은 아직 확실히 실현되지 못했다. 첫째, 중국 국내법이 규정하고 주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영토가 완벽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중국의 국가 영토 주권은 아직 통일되지 못했다. 이것은 주로 60년 이후 해협과 양안의 두 정치적 실체가 분리되어 각각이 통치하는 현실 때문이다. 셋째, 중국 국가 영토 주권은 아직 중대한 현실적 안전 문제와 더불어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60년 이래의 중국 주변 외교 관계는 크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영토 주권 문제로 인하여 이웃 나라와 수차례의 분쟁을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 주변 이웃 나라와 영토 주권상의 분쟁이 있다면 중국 영토 주권의 현실적 안전의 위기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이다.

앞에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국 국가 영토의 완정(完整)·통일·안전의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실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짧은 시간 안에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 이라는 기미도 쉽게 찾기 어렵기에, 중국과 주변 당사국들은 거대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 다른 국제 사회에서 공인된 세계적인 대국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나라도 중국과 같이 중대한 국가 영토 주권의 완정·통일·안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시기까지 중국에서 국가의 영토 주권의 완정·통일·안전 문제는 여전히 국가 핵심 전략적 이익으로 남겨질 것이다.

近代以来中国国境变迁与领土认识

张 华

(中央民族大学历史文化学院)

边界是近代国家概念，是指相关国家通过签订条约、各方会勘确定的国家之间的分界线。历史疆域是古代国家概念，是指近代前历史上不同时期王朝国家自认的管控范围。“主权”(sovereignty)一词起源于拉丁文，意思是最高权力。在《简明大不列颠百科全书》中，把主权分为国内和国际两个方面。对内主权“是一种国家决策过程中的最终负责者或权威”，对外主权“就是一个国家不受外来控制的自由”，“意味着国家的自主或独立”。主权是国家具有的对内的最高权力和对外的独立地位。国家主权是民族国家最重要的特征和最根本的属性，所以民族国家也称为主权国家。传统国家主权理论萌芽于古希腊、罗马时期，历经中世纪的演变发展，最终在19世纪形成了一套完备的理论体系。民族国家主权原则最早见诸于国际关系史的是1648年的《威斯特伐利亚和约》。《威斯特伐利亚和约》从实践上肯定了国家主权、国家领土以及主权平等为国际关系的基本原则，进而产生了现代主权国家体系，主权国家成为政治统治的基本形式。美国独立战争和法国大革命，使主权本质和主权行使的同一性，在实践中得以确认。¹⁾

领土、人民、政府和主权是一个国家应具备的四项要素，而国家主权(state sovereignty)又是其最基本的属性(statehood)，因此民族国家(state nation)又称为主权国家。主权国家是最主要的国际政治行为体，也是国际体系的基本构成单位。主权，指国家在其有限领土内独立自主地处理自己的对内—对外事务的最高权力。对内最高权是指国家对其领土内的一切人和事务以及领土外的本国人和本国产业实行管辖的权力，即国际法意义上的属地优越权和属人优越权，意味着一个国家对本国领土范围内的一切事务拥有最高统治权。对外独立权是指国家在国际关系中的权力行使完全自主，排除任何外来干涉。主权标志了独立国家之间的平等关系。它意味着：在国际交往中，任一国家在其领土范围内是最高政治和法律权威，不承认其他更高合法权威的存在，凡属国内管辖的事件，必然排除其他国家或国际组织的干涉。国家主权的上述这两个基本属性，是国家主权本质的表现，也是国家主权在理论上的基本表述。主权是国家存在的基础，国家主权原则是国际关系的基本原则，也是国际法约束各

1) 马小军：“领土主权理论”的变化与中国领土安全再认识，2010年5月13日，共识网。

类行为者的源泉。

一、中国近代以来疆域的变迁

从逆向推理讲，是指中国历史疆域确立之后，在统一国度内的中华各民族历史上生息繁衍的区域范围之和，即由中华各民族历史上溯推论而定。历史演进说能更多地展示中国历史疆域发展变化的过程，逆向推理论则往往用于印证边疆地区的历史归属。至18世纪中期，历史演进中的中国历史疆域最终确立之际，同时也是逆向推理所依据的中国历史疆域确定之时，即国家处于大一统之中，中华各民族活动在国家统一治理的疆域之内，由此又为今天我国统一的多民族国家和多元一体的中华民族的格局奠定了基础。²⁾

(一) 沙皇俄国向东方的扩张

1581年，沙俄殖民军越过乌拉尔山进入亚洲。17世纪初，沙俄在向东方的殖民扩张中，与中国西北边疆的厄鲁特蒙古人发生了接触。此后，双方的关系不断发展。这种关系是多方面的，在政治上，侵略与反侵略、殖民与反殖民、控制与反控制的斗争同相对正常的政治交往并存；在经济上，掠夺与反掠夺同相对正常的经济交流并存。双方的活动主要集中在额尔齐斯河流域。

与此同时，沙俄沿西伯利亚又迅速地向东方实行殖民扩张，至17世纪30年代，其势力抵达亚洲的东端。在短短50年的时间里，沙皇俄国在亚洲殖民扩张的领土面积达1000万平方公里。

(二) 清朝东北边界的确立

1643年，沙俄以雅库茨克为据点，向中国黑龙江流域扩张，比较集中的有三次：1643年-1646年波亚科夫入侵、1649年-1653年哈巴罗夫入侵、1653年-1658年斯捷潘诺夫入侵。

在清朝东北边疆军民的反击下（1685年和1686年有两次雅克萨反击战），沙俄的殖民扩张受到遏制。

在清政府的要求下，中俄于1689年通过谈判签订了《中俄尼布楚条约》，这是中国历史上

2) 请参考：白寿彝《中国历史上的疆域问题》《历史知识》1981年第四期。

杨建新《沙俄最早侵占中国领土和历史上的中国疆域问题》《中俄关系关系史论文集》1979年。

谭其骧《对历史时期的中国边界和边疆的几点看法》《中国史研究》1979年第11期。

赵永春《关于中国历史上疆域问题的几点认识》《中国边疆史地研究》2002年第3期。

与外国订立的第一个条约。

中俄尼布楚条约是中国历史上第一个边界条约，由《阿巴哈依图界约》和《恰克图界约》组成。条约划定了自沙宾达巴哈至额尔古纳河上游清朝北部与俄国边界的走向。今天是蒙古人民共和国与俄罗斯的边界走向。

（三）清王朝继承和恢复中国历史上的大一统疆域

1683年，清出兵收复台湾，次年设台湾府，隶属福建省。1727年，清在西藏设立“驻扎西藏办事大臣”（简称“驻藏大臣”），对西藏事务实行直接管辖。

1755年至1757年，清军先后平定准噶尔，统一了西域天山以北地区；1759年又出兵平定大、小和卓之乱，统一了西域天山以南地区。

清王朝在入关后经过百余年的努力，至此最终继承和恢复了历史上中国的大一统疆域，其中东北和北方通过与俄国签订条约，正式划定了边界。经过分区测绘，1762年形成了《乾隆内府舆图》，是为清代疆域之依据。

1842年8月，清政府被迫与英国签订了近代中国历史上第一个不平等条约《南京条约》，次年10月，两国又签订了《五口通商附粘善后条款》（即《虎门条约》）和《五口通商章程：海关税则》，作为《南京条约》的补充。英国通过《南京条约》主要想获取的是通商权益：废除公行制度，迫使中国开放广州、福州、厦门、宁波、上海五口通商，并取得协定关税权、领事裁判权和片面最惠国待遇；同时强行割占香港岛，作为贸易集散地。英国在《南京条约》所获取的这些通商权益，早在1792年由马嘎尔尼率领的第一个英国使团来京时就提出来了，70年后却利用“炮舰政策”强迫清政府就范。

1. 沙俄割占东北边疆领土

与英国不同，沙俄利用第二次鸦片战争趁火打劫，于1858年迫使清政府签订了《璦琿条约》，1860年又迫使清政府签订了《北京条约》，他们的目的是要割占大片的中国领土，把沙俄的统治扩大到尚未建立“牢靠秩序”的全部邻国领土上去（1856年俄外交大臣哥尔查柯夫语）。

《尼布楚条约》签订后，中俄东段边界的确立使清东北边疆获得了百余年的相对安宁。然而，沙俄自彼得大帝时起，就坚定地实施“俄国必须占有涅瓦河口、顿河口和黑龙江口”的战略，认为这对“俄国未来的发展异常重要”（18世纪初彼得大帝语）。此时，一些沙俄扩张分子也叫嚣所谓要“收复《尼布楚条约》时割让的全部领土”，极力歪曲《尼布楚条约》的性质，胡说该约是俄国“被迫签定的”，“违反国际公法”；提出要重占黑龙江左岸，或者，“至少

也要获得顺黑龙江到堪察加和日本的航行权”。

1860年，沙俄迫使清政府签订了《北京条约》。该约又是一纸割地条款，是在确认《璦琿条约》的基础上进一步割占中国领土的条约。全文虽15款，主要内容仍是割地：规定将黑龙江以北和乌苏里江以东中国领土割予俄国。与《尼布楚条约》相比，《北京条约》关于中俄东段边界的划分使中国丧失了100万平方公里的领土（其中黑龙江以北60万平方公里，乌苏里江以东40万平方公里），由此已经《尼布楚条约》确定的中国东北边界走向发生了重大变化。

2.《勘分西北界约记》改变了中国西部疆域

1822年，沙俄颁布了《西西伯利亚吉尔吉斯人条例》，标志着对中亚哈萨克草原兼并的基本完成。随后，俄国势力逼近了中国西北边疆。鸦片战争后，沙俄利用清王朝的虚弱，不断蚕食新疆西部地区。1844年至1847年，俄国军队先后数次侵入新疆巴尔喀什湖以东阿拉套山一带，建立了科帕尔堡（今哈萨克斯坦卡帕尔），控制了由俄国谢米巴拉金斯克南下通往新疆喀什噶尔和中亚浩罕、塔什干的要冲。1854年，俄国军队又侵入新疆伊犁河中游以南地区，在古尔班阿里玛图建立了维尔内堡（今哈萨克斯坦阿拉木图）。在19世纪40至50年代末不到20年的时间，俄国通过武装入侵、构筑军事堡垒、强行移民等手段，不断入侵和蚕食新疆巴尔喀什湖以东、以南中国领土，并企图通过不平等条约，使其占有的中国领土合法化。

3.藩属国家丧失殃及边疆

近代周边与清王朝保持着宗藩关系的国家主要有朝鲜、越南、琉球及缅甸等。这种宗藩关系大多是历史的继承，主要形式也是历史上的册封、朝贡（朝鲜一年一贡，越南、琉球二年一贡，缅甸十年一贡），遇藩属国国君即位，清政府派专使持敕书、印信前往册封。这是源自古代属国制度在近代演变而成的一种特殊藩属国家关系。藩属国对宗主国有一定的从属和依附关系，作为宗主国，清王朝对藩属国又具有一定的支配权和保护义务，这些权利和义务得到了包括列强在内的国际上的承认。

琉球国：1872年10月，日本强行分封琉球国王尚泰为藩王，造成琉球中日两属，由此作为侵占琉球的第一步。两年后，日本又歪曲中日《北京专约》的内容（条约中误将琉球船民称为“日本属民”，日以此作为清承认琉球是日本属国的依据），吞并琉球，宣布废藩置县。

朝鲜国：1876年2月，日本以“炮舰政策”迫使朝鲜签订了《江华条约》，第一款是“朝鲜为自主之邦，保有与日本平等主权”，其用心也是首先使朝鲜脱离与清王朝的宗藩关系。1882年，日本又迫使朝鲜签订了《仁川条约》，取得了在朝鲜的驻兵权。此后日本对朝鲜的侵略步步深入，直至挑起“甲午战争”。

越南：1873年，法国军队进犯河内，迫使越南签订了《西贡条约》。按条约规定，承认法国为越南的保护国。1882年至1883年，法军多次入侵与中国毗邻的越南北部，进而挑起“中法战争”。

（四）列强侵犯引发边疆危机

沙俄侵占伊犁，西北边疆危机。1871年，沙俄利用新疆反清起义和浩罕军官阿古柏入侵新疆后的混乱局面，趁火打劫，出兵侵占伊犁，由此形成西北边疆危机。当时，沙俄对新疆形势的总体评估是，清政府已无力收复新疆，所以初期曾虚伪地向清政府声明，侵占伊犁是“代为收复，权宜派兵驻守，俟关内外肃清，乌鲁木齐、玛纳斯各城克复之后，即当交还”。1878年，左宗棠收复新疆，唯有伊犁一处为沙俄强占，清政府随即开始与俄展开长达4年的交收谈判。

马嘉礼事件与西南边疆危机。清与缅甸的宗藩关系相对较为松散，英国早有吞并缅甸之心。1874年，英国一支近200人的武装探路队进入缅甸，企图探测自缅甸进入云南的道路，打开通往中国的后门。英驻华翻译马嘉礼擅自带人自云南前往迎接，在中缅边界被杀。英国乘机要挟，一时气氛紧张。次年以签订中英《烟台条约》收场。1885年，英军入侵缅甸，次年缅甸沦为英殖民地。同期，中英签订《会议缅甸条款》，清被迫承认英占有缅甸。

日军进犯台湾，东南边疆告急。1874年，日本利用台湾高山族误杀漂流到台湾的琉球船民的事件出兵侵犯台湾，东南边疆告急。同年10月，中日签订《北京专约》，日军自台湾撤出。

英军进犯隆吐山，西藏告急。1888年3月，英军2000余人高举进犯西藏边境要塞隆吐山，发动第一次侵藏战争。1890年，中英签订《藏印条约》，英军退回。

俄英入侵帕米尔，西北边疆再次危机。1891年和1892年，沙俄两次出兵侵占帕米尔，英国指使阿富汗兵也在1892年侵入到帕米尔中心地带苏满塔什。俄英继而相互勾结，商议私分中国领土帕米尔。³⁾

日俄战争后，尤其是1907年第一次《日俄密约》后，沙俄加紧了在我蒙古地区的渗透和侵略活动。与此同时，清政府也利用开办“新政”的机遇，在边疆实施“新政”，力图改变边疆落后、守旧的社会经济文化，增强边疆防务。1909年底，清政府开始在外蒙地区实行“新政”，沙俄对此表示强烈反对，一方面，沙俄利用外交和军事压力迫使清政府停止已实施的新政措施，另一方面利用“新政”引发的一些利益与权利之争，在蒙古上层封建王公中散布挑动不

3) 厉声：《近代中国边界变迁与边疆问题》《百年潮》2007年第10期。

满，煽动独立。

辛亥革命爆发后，沙俄又开始计划有步骤地蚕食侵略我东北边疆领土。在中方的强烈反对下，1914年11月中俄签订《会订呼伦贝尔条件》，规定呼伦贝尔取消“独立”，定为“一特别区域，直接归中国中央政府节制”。十月革命后，少数分裂势力失去后台和靠山，宣布“自愿取消特别区域”，废除《会订呼伦贝尔条件》。至此，呼伦贝尔“独立”的闹剧收场。

1903年底，英军发动第二次侵藏战争，次年8月占领拉萨。西藏地方政府被迫与英签订了《拉萨条约》。该条约视西藏地方政府为英保护下的“独立”政府，引发中国举国上下的一致反对。在随后签订的《新订藏印条约》中，英又不得不重新承认中国对西藏的主权。以后，英国改变了侵略手段，由军事入侵为主改为以拉拢西藏上层，从内部策划西藏“独立”，进而使西藏沦为英保护国。

达赖声称希望英军击退清军在西藏的势力，使西藏以一个平等国家的身份与清政府直接谈判，甚至表示西藏愿与英订立条约，是为西藏要求“独立”之始。

民国时期，军阀混战、继而日寇侵华，方方面面的因素使中国无暇在边界、边疆问题上投入精力和力量，失去了一些解决历史上遗留的边界、边疆问题的机遇。第二次世界大战胜利后，民国政府利用战胜国的地位，在解决历史遗留的边界、边疆问题，维护国家领土主权方面做了一些努力，但这种努力又受到战后美苏大国主宰世界和远东战后安排的制约，受到蒋介石发动内战、消灭共产党国内战略的牵制，受到英国维护其在远东殖民利益阴谋的破坏，其成果是很有限的。

近代以来，中国对边疆地区的控制大致呈现出一种减弱、加强、弱化的循环趋势。具体而言，当晚清西北边疆危机严重，边疆分裂势力嚣张时，清中央政府通过逐步在新疆、东北设省，加强了对边疆地区的统治。但随着近代中央政府权威的逐步式微，边疆与内地关系更趋复杂。中华民国成立不久，即陷入南北对峙，军阀混战局面，中央权威重构仍然举步维艰。南京国民政府虽然形式上统一了全国，但对边疆的控制力度仍然有限。边疆地区民族与宗教问题复杂，是近代边疆社会与政治状况的重要特点。晚清时期，已经在边疆产生了较为严重的边疆与民族问题，国人对此十分关注。新疆地区就因其特殊而重要的地缘政治环境及复杂的民族与宗教问题，一直是近代国人关注最为集中的区域之一。⁴⁾可以说，复杂的民族与宗教状况，落后的文化教育，与内地差异的政治形态，西方列强势力的渗透，是近代以来中国边疆地区社会与政治环境的真实状态。此外近代以来中央权威的式微，中央政府与边疆地方关系，呈现出一种不稳定及屡有反复的复杂状态。

近代中国在受西方民族国家侵略的同时，也受西方民族国家的影响，开始构建自身民族国

4) 段金生：《近代国人关于新疆的认识》，《中国边疆史地研究》2009年第2期。

家的进程，随之中国传统的边疆社会政治及边疆认识亦由王朝国家的范畴向近代民族国家形态演进。近代中国的边疆社会政治环境复杂，而边疆地区对于中国民族国家的构建具有重要意义。中国疆域的形成经历了漫长的发展过程，边疆作为中国疆域的重要组成部分，是研究中国疆域演变的重要内容。近代以来，随着国际政治形势的巨变，中国卷入了世界工业化进程，逐步形成了近代西方意义的疆域观念，但也随之产生了严重的边疆问题。近代中国边疆的社会政治态势及边疆认识的演变十分复杂，它们对于考察中国历史疆域的形成，增强国人主权观念，维护国家疆域完整具有重要意义。⁵⁾

今天中国的边疆是历史上中国边疆的继承，近代边疆问题给新中国时期边疆的稳定与发展留下了潜在的严重后患。换句话说，半殖民地半封建的旧中国不具备从根本上在边疆地区清除分裂主义和解决边疆问题的条件，这个任务只能由后继的新中国来完成，这也是新中国的历史使命。

在与周边国家划界这个问题上，有两点需要注意：其一，事实上，近代以来中国的清政府、北洋政府、中华民国政府在周边长期面对的，曾是几大西方列强，而在1945年以后，中国周边的前殖民地国家纷纷独立，成为新中国的“新”邻居，新中国成立伊始，即面临着与这些同样是新独立国家的近邻共同缔结边界条约的历史重任。其二，无论在政治上、外交上还是在划界谈判的技术层面，在历史留给新中国的这个巨大而繁重的勘划国界任务中，都“天然地”隐含着新中国与这些新独立国家在建国之前的殖民时期遗留下来的许多及其复杂的，重大的历史遗留问题。

中国与邻国陆地边界问题已取得巨大的成就。中国有14各陆上邻国，迄今已先后与其中12个邻国签约划定了陆地边界，分别是中缅(1960年)、中尼(1961年)、中蒙(1962年)、中朝(1962年)、中阿(阿富汗)(1963年)、中巴(1963年)、中老(1991年)、中哈(1998年)、中越(1999年)、中吉(2002年)、中塔(2002年)、中俄(2005年)。已划定的边界约占中国陆地边界线总长度22000多公里90%。

中国领土主权的完整、统一和安全尚未完全实现。首先，为中国国内法规定和诉求的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领土并不完整。也就是说，中华人民共和国版图并不完整。其二，中国的国家领土主权尚未实现统一。这主要是指60年来海峡两岸两个政治实体的分离分治现实。其三，中国国家领土主权尚存在重大的现实安全问题及安全隐患。60年来的中国周边外交关系，总体是和平的、和睦的、但中国也曾经多次因为领土主权纠纷，与邻国发生战争，因此，只要仍存在着与周边邻国的领土主权争议，中国领土主权的现实安全隐患就将一直存在。

5) 段金生：《近代国人关于新疆的认识》，《中国边疆史地研究》2009年第2期。

综上所述，中国国家领土主权的完整，统一和安全迄今为止尚未完全实现。并且，这些问题在短时间内尚看不到最终解决的前景，尚须中国与周边当事各国付出巨大的政治和外交努力。环顾其他被国际社会公认的世界性大国，没有任何一个国家像中国这样存在如此重大的国家领土主权完整、统一和安全问题。就此而言，在今后相当一个历史时期里，国家领土主权的完整、统一和安全仍是中国国家核心战略利益。

「근대 이후 중국 국경의 변천과 영토 인식」에 대한 토론문

손 준 식

(중앙대 역사학과)

본 논문은 근대 이래 중국의 영토변천 역사를 개관한 연구로 매우 복잡하고 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와 多元一體的 중화민족 格局’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어 현 중국의 영토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구 시기와 대상 설정 및 장절과 내용 구성, 사실 관계와 용어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어 보인다.

첫째, 근대 중국의 영토문제를 설명하면서 16세기 말 17세기 초 러시아의 동방 확장에서 시작하여 네르친스크 조약과 대만의 영토편입, 준갈이 정벌 등 청초의 역사사실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고 있는 반면, 신중국 수립 이후의 국경분쟁과 교섭 등에 대한 서술이 매우 소략하다는 점이다. 청말 근대 서구에서 기원한 국제법과 영토 개념을 수용하기 이전 중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즉 조공책봉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국경과 영토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근대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의 산물인 국경문제를 고대국가의 역사영토문제와 함께 다루게 되면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예컨대 ‘러시아의 동방확장’과 청초의 ‘영토 계승과 회복’, ‘번속국가의 상실’ 등의 문제를 근대적 영토주권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이런 점에서 소위 ‘근대적 조약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남경조약 이후의 국경문제에 국한하여 논지를 전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장절과 내용 구성의 문제이다. 一、中國近代以來疆域的變遷이 있으면 二、○○○○가 있어야 마땅한데 보이지 않는다. 내용상으로도 국경과 영토 변천에 대한 서술

만 있고 영토인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다. 혹시 본래 2장에서 영토인식을 다루고자 했으나 시간 관계로 완성하지 못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 또 제1장 아래에 (一), (二)으로 세부 절을 구분하고 있으면서 (三) 아래에 다시 1, 2, 3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3절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몇 가지 사실 관계와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이다. (1) 네르친스크 조약을 ‘중국 역사상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하였는데,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다. (2) 남경조약(1842)으로 영국이 취득한 통상권익을 메카트니 사절단 방문(1792) ‘70년’ 후 함포정책으로 강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50년’ 후가 맞다. (3) 유구국이 ‘中日兩屬’관계가 된 것은 1872년이 아니라 일찍이 17세기 초 사쓰마번(薩摩藩)의 무력 침공 이후 이미 실질적인 양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유구를 병탄하여 廢藩置縣한 것은 1879년의 일이다. (4) 조선이 일본과 1876년 맺은 조약은 「강화도조약」이고, 1882년 맺은 조약은 「제물포조약」이 정확한 용어이다. (5) 월남이 프랑스와 제2차 사이공조약을 체결한 것은 1874년이다. (6) 1886년 7월 북경에서 체결된 중국과 영국 사이의 조약 공식명칭은 「中英緬甸條款」이다. 그 외 日寇라는 표현은 학술용어로 부적절해 보이고 民國政府라는 표현도 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인 것 같다.

넷째,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의 국가영토주권 유지가 遠東에서의 식민이익을 지키려는 영국의 음모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였는데, 만약 홍콩 문제를 두고 말한다면 당시 중영 양국의 이해절충의 결과로서 현상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갖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은 反帝라는 혁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국주의의 상징인 식민지 홍콩을 회수해야 할 당위성이 있었지만 해방전쟁에 따르는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과 미국 중심의 중국 포위 정책 하에서 서방국가와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홍콩의 역할을 감안하여 무력 사용을 중단하였고 영국은 이에 서방국가 중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는 것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일본 영토 문제의 기원

- 竹島/獨島문제를 중심으로 -

사카모토 유이치

(리츠메이칸대 사회시스템연구소)

-
1. 머리말 - 영토 문제를 대하는 역사학 연구자의 기본적 자세
 2. 前近代의 竹島/獨島 영유권
 3. 근대 전기(식민지 시대 이전)의 竹島/獨島 영유권
 4. 근대 후기(식민지기)의 竹島/獨島 영유권
 5. 현대(일본 敗戰과 조선 解放 이후)에서 竹島/獨島 영유권
 6. 맺음말 - 竹島/獨島 영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

1. 머리말 - 영토 문제를 대하는 역사학 연구자의 기본적 자세

분쟁 대상의 해당 영토가 관계 분쟁국 어디에 속하는가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연구자 본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竹島/獨島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정치성을 띤 논술이 양국 모두 과열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국가적 프로젝트임에 대해,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체에 지나지 않는 島根縣竹島問題研究所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연구자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물론 학술 연구를 국가나 자치체가 지원하는 것 자체는 연구비의 원조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竹島問題研究所의 경우를 보면, 史資料의 발굴에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會의 공식적인 주장인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틀에서 괴리된 논고는 會의 출판물에서는 전부 배제된다. 이것은 학문의 정치로의 종속에 다름 아니며, 진지한 연구 성과를 내서 널리 읽히게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고유의 영토’ 등이라 말한 자의적 전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한일 양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1차 사료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해석해 일정한 결론을 얻는다는 기본적 자세에 따라 이 과제에 접근하고 싶다. 또 이러한 기본적 자세는 역사 연구의 성과를 기초로 한 역사교육에도 요구된다.

2. 前近代의 竹島/獨島 영유권

발표자는 근현대사 연구자이므로 전근대사에 대한 1차 사료를 해독하는 연구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일 양국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성과를 본인의 이해에 근거하여 정리해 두고자 한다.

1) 서력 512년 신라의 ‘于山國’ 정복

이 史實은 『삼국사기(신라본기)』(512조)에 처음 나오나, 우산국에 鬱陵·于山の 두 섬이 있다는 기록은 한참 후인 『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 의한 것으로 ‘해당국에 두 섬이 존재했다는’ 정도의 정보 밖에 없다. 512년 이후 竹島/獨島가 일관되게 조선의 영토였다는 한국과 북조선에서 주류를 이룬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2) 17세기 일본 伯耆國商家의 ‘죽도(울릉도) 경영’

이것은 15세기 전반에 시작되었던 조선왕조의 ‘空島政策’[지도1]에 따라 鳥取藩 松江城下の 大谷·村上 양가에 한정해 비공식적으로 허가해 실행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 서술하는 조선인 어민과의 경합을 받아 1695~96년에는 江戸幕府가 鳥取藩에 조사를 독자적으로 행해, 96년에는 공식으로 ‘元祿竹島渡海禁令’을 同藩에 넘겨 따라 정지되었다. 게다가 1838년에는 石見國浜田藩의 會津屋의 밀수 사건을 계기로 ‘天保竹島渡海禁令’이

이번에는 전국 법령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일본 정부 외무성은 이 ‘죽도 경영’을 가지고 근대 영유권의 ‘미성숙한 權原’으로 하나, 이것은 국제법상 성립할 수 없는 잘못된 견해이다.

3) 安龍福의 渡日과 ‘영토교섭’[지도2]

1693년 空島 시대에 울릉도에서 몰래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안용복 등은 米子 상인과 조우해 安龍福과 朴於屯 두 사람이 鳥取까지 연행되었으나, 對馬를 거쳐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더욱이 1696년에는 울릉도와 竹島/獨島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에는 스스로의 의지로 일본에 건너갔지만, 그 직전에 에도막부가 ‘元祿竹島渡海禁令’을 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다만 제1차 渡日 때의 그의 주장이 막부로 하여금 ‘渡海禁令’을 내게 하여 朝日 교섭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당시 조선 정부를 대표할 입장이 아닌 密漁者이며, 그 행동에 따라 竹島/獨島가 조선 영토임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를 ‘조선 영토를 지킨 영웅’으로 미화하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을 요약하면, 전근대에 있어 竹島/獨島의 위치는 朝日 양국의 경계 영역에 있으며, 이러한 史實은 근현대의 영유권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2. 근대 전기(식민지 시대 이전)의 竹島/獨島 영유권

1) 1877년의 日本太政官指令

일본 메이지유신 정부는 1876년 10월 島根縣에 의한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向’을 받아들여 옛 막부 문서 등을 정밀히 조사한 다음, 다음해 77년 3월 ‘日本海内の竹島 외 一島는 本邦에 없으며’라는 太政官 지령을 결정했다.[지도3] 이것은 ‘죽도(울릉도)’ ‘松島(竹島/獨島)’ 와 함께 일본 영토 밖이라고 해석한 것이며, 앞의 에도막부에 의한 2차례 걸친 ‘도해금령’과 합쳐 일본의 중앙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그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개척과 일본인의 침입

앞의 메이지 정부의 결정이나 여러 번에 걸친 ‘죽도(울릉도) 開拓願’의 각하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 불법으로 침입해 벌목 등에 종사하는 隱岐島民을 비롯한 일본인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15세기 초 이래 450년 이상에 걸친 ‘공도정책’을 철회하고, 1882년 ‘울릉도개척령’을 내어 육지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음해 83년에는 조선 정부의 항의에 따라 일본인의 일제 귀환을 실시했으나, 그 후에도 침입하여 섬에 건너오는 일이 계속되었다. 또 1902년 4월에 이르러 이들 在留 일본인의 보호와 단속을 위해 부산영사관의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당시 이 섬에 이주했던 조선인은 전라도 거문도 등에서 계절적으로 오는 어부를 제외하고 다수가 섬 전체의 각지 내륙에 산재해 거주하였고, 농업 특히 초기에는 화전으로 개간한 농지에서 경작(大豆·大麥·馬鈴薯·玉蜀黍 등)하는 것을 주요 생업으로 삼았다. 또 어업은 若布·海苔 등의 채취에 한정되었으며 어업이나 상업은 전부 이주 일본인이 독점했다.

3) 竹島/獨島의 海驢獵과 ‘獨島’ 호칭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울릉도에 건너온 일본인이 증가하고 또 이 섬에 이주한 조선인도 늘어나 대한제국 정부는 禹用鼎을 섬에 파견해 시찰케 하는 등 실효 지배를 강화했다. 또 竹島/獨島에 대한 인식도 울릉도에 거주하는 한일 양 국민 사이에 높아졌다고 여겨진다. 당시에는 隱岐島와 이 섬을 왕복하는 일본인 쪽이 실제로 견문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海驢의 서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일본 해군도 1904년 2월의 露日 開戰을 계기로 일본해 일대에서 군사 요지의 조사를 실시해, 그 과정에서 같은 해 9월 25일 軍艦新高가 당시 ‘량코도’로 통칭되고 있던 竹島/獨島의 한국명이 ‘독도’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竹島/獨島의 ‘독도’라는 호칭은 이것으로 시초를 삼을 수 있으며, 이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史料上 어렵다.

4)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러한 정세 아래 竹島/獨島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갔던 한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에 ‘칙령 제41호’를 공포 시행하여[지도4], 울릉도를 강원도 ‘울릉군’으로 승격하고 그 관할 구역을 ‘鬱島全島·竹島·石島’로 규정했다. 한국에서는 여기서 말한 ‘竹島’는 울릉도에 근접한 현 ‘竹嶼’이며, ‘石島’가 현 ‘竹島/獨島’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를 포함해 압도적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이 칙령에는 경도 위도로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石島’의 명칭도 전라·경상 양도의 방언이 音暗轉訛에 의해 ‘독도’라고 설명하나 확정적인 실증은 되지 않았다. 게다가 결정적인 약점은 이 ‘석도’에 대한 행정권의 행사 등 실효적 지배는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칙령은 『관보』에 게재되었다는 공연성은 가지고 있으나 국제법적인 효력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竹島/獨島에 대한 근대적인 영유권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측은 1906년 3월에 이르러 島根縣竹島調査團이 울릉도에 來島함에 이르러 처음으로 다음의 일본에 의한 영토편입 정보를 접하고 낭패를 보았다.

5) 1905년 대일본제국의 竹島/獨島의 영유권 편입

1904년 9월 29일, 隱岐島 거주의 어업자인 中井養三郎이 전년도에 竹島/獨島에서 행하던 海驢獵을 독점하기 위해 일본의 외무·내무·농상부 각 省에 ‘량코도 영토편입 및 貸下願’을 제출했다. 이것은 다음해 05년 1월 28일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어 ‘죽도’로 명명되고, 다음해 2월 22일에는 島根縣告示 제40호로 ‘隱岐島司의 所管’이 되었다[지도5]. 그러나 이 시기는 러일전쟁의 가장 한가운데였으며, 일본 해군은 러시아의 발체크 함대와 주요 전쟁을 울릉도와 竹島/獨島 근해로 상정했다. 이미 1904년 9월 2일에는 울릉도에 망루와 전신선을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竹島/獨島에도 같은 시설의 설치 예비조사를 행했다.

그 직후의 ‘영토편입’의 願書와 각료회의 결정은 海驢獵의 보호를 표면상의 간관으로 했으나 실제 노리는 바는 군사 시설의 건설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해군 수로부장(肝附兼行)이나 외무성 정책국장(山座圓次郎)의 발언 취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주요 목적은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인 것이었으나 당시의 竹島/獨島는 사람이 살지 않는 ‘無主地’이며, 그 영토편입을 지방적 고시일지라도 공시했던 것은 당시의 국제법상 이른바 ‘無主地先占’에 해당하며 유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竹島/獨島에서 가설 망루와 전신 시설의 개설은 일본해 해전 종료 후인 1905년 8월 19일이며, 실전에서 역할을 행한 것은 없고 다음해에는 ‘竹島漁獵合資會社’에 불하

하였다. 또 편입 조치는 경도 위도가 명기된 고시뿐만이 아니고 현지 조사도 실시된 위에 토지 대장의 기재나 어업 감찰의 발급도 실행되었다.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저항은 1905년 11월 이른바 ‘보호조약’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영토 편입으로 ‘독도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최초 희생지’라는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

4. 근대 후기(植民地期)의 竹島/獨島영유권

1) 일본 제국주의는 러일전쟁의 승리에 따라 한국 지배에 대한 여러 열강의 승인을 얻었다. 나아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군사력의 위협으로 ‘보호조약’에 의한 통감부의 개설 등 일련의 식민지화를 강행하여 결국 1910년 8월 22일 ‘한국병합조약’의 조인을 강요했다. 이에 의해 강원도 울릉군도 조선총독부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지도6] 在住 일본인의 인구도 병합 다음해 11년도 말에는 1,200명 가까이 급증해 이것은 이 섬의 총인구의 약 15%를 점하였다.

이들 이주민의 출신지는 島根·鳥取의 두 현에서 약 8할을 차지하고 島根縣에서는 그 과반수가 隱岐諸島 출신이었다. 이들 일본인의 거주지는 군청 소재지인 南面道洞에 집중되었고, 생업은 특히 어업이 가장 많고 공무 및 상업이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이 시기의 조선인은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朝日 울릉도 주민 사이는 생업 면에서 일종의 공존 상황이 생겨 어떤 의미에서는 ‘공존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실을 보면 資力이나 교육 수준의 면에서는 일본인 식민자의 우위는 흔들리지 않았고, 행정면에서도 역대 島司는 전부 일본인이며 소수의 하급 조선인 관리가 존재했을 뿐이다.

2) 그런데 원래 일본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던 울릉도 어업을 보면, 오징어잡이 다음으로 청어 등의 근해 어업이 주였으며, 그 豐漁와 아닌 경우가 정주 인구의 증감에 꽤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조선인은 농업을 생업의 중심으로 하고 부업으로 연안에서 김·미역 등의 채취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는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1930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섰다.

또 앞에서 말한 竹島/獨島の 어업에 관해서는 이미 1902년경에 울릉도에 머무는 일본인(隱岐·天草·志麻 지방에서 돈 벌러 온 자들을 포함)들이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해 03년부터 본격화한 海驢獵은 이미 서술한 中井養三郎 등 4명이 隱岐島를 기지로 한 ‘竹島漁獵合資會社’의 독점이 되지 못하고 밀렵자가 더해져 亂獲 상태가 계속되었고, 한편 울릉도 거주 일본 어민이 조선인 어부를 고용하여 나간 사례도 보인다. 1905년 中井 측이 기록한 사료에 의하면, 이 해에 竹島/獨島에 도달한 밀렵자 총 8組 중 3組는 조선인 어부를 동반하고 있으며,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竹島海驢實況覺書』) 게다가 1906년 5월 초순에는 天草 어민 약 30인이 漁獵 회사 측과 충돌했다는 기록도 있다.(『竹島漁業의 變遷』)

다음으로 회유성 어족인 오징어나 청어 등은 근해 어업으로 어선을 비롯한 일정의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금력이 우수한 일본인 어부가 독점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후에는 일본인 어부에게 고용되었던 조선인 어부들도 어업 기술의 전수를 받고, 또 자금 축적에 성공한 소수의 어부는 스스로 어선을 소유해 독립하여 어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출현하였다. 특히 통계 사료에서 얻을 수 있는 1928년과 33년의 산업별 戶數 및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선인 어업자의 호수·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	일본인어업호수(인구)	조선인어업호수(인구)	출전
1928	58(195)	257(1366)	『昭和8年島行政一斑』
1933	33(125)	314(1576)	『昭和13年島勢一斑』

이와 같이 일본의 강권적인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도 육지에서 떨어진 외딴섬이던 울릉도에서는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비교적 공생해 생활하는 일종의 ‘공생상태’ 아래에 종래 농업만으로 생업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도 일본인 도민의 감소에 따라 어업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또 竹島/獨島에서 海驢의 어업권은 中井養三郎에서 아들인 養一의 명의로 계승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隱岐島 거주 樂封家인 八幡長四郎에게 전매되었다. 또 울릉도 거주 奧村平太郎은 1921년경부터 “매년 조선인 다수를 데리고 죽도에 나가 주로 전복, 소라 등 密漁를 행했다”라는 조사 기록이 존재한다.(奧村亮口 저술 『竹島漁業의 變遷』) 아마도 이것을 계기로 1925년에는 根付 어업의 권리는 八幡에서 奧村平太郎에게 매각(이른바 ‘浜賣’)되었다. 나아가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전반에 걸쳐 매년 4월 하순부터 7월 하순에 걸쳐 울릉도를 기지로 삼은 동력선이 예방하는 잠수기어업이 朝日 협동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5톤 발동기선 1척(총 5명, 이 중 조선인 4명)이 잠수기선 2척(총 14명 승선, 이 중 조선인 12명)을 예방해 하루에 약 600관의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奧村亮口 述書· 앞의 책) 동시에 奧村은 울릉도에서 대규모의 통조림 공장을 경영

하였다.

이처럼 동력선의 발달에 따라 竹島/獨島 방면의 고기잡이도 현격하게 쉬워졌다. 예를 들면 1935년 5~7월에는 일본인 3명의 어업 감찰에 해의 日朝 쌍방의 어부 13명과 제주도 해녀로 알려진 4명의 이 섬에서 海驢와 고래의 조업 상황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또한 1938년 이후, “죽도 어로는 90톤, 20톤의 두 척의 모선과 운반선을 파견해 잠수기 2척, 작은 배 5척으로 고기잡이하고 승조원은 총 약40명으로 그 중 감독자 2~3명이 일본인이며 나머지는 조선인이었다” 1941년에는 “제주도의 해녀 16명을 데리고 멩게 잡이로 渡島했다...”고도 기록되었다. 또 1937년경에는 매년 여름철에 울릉도에서 竹島/獨島를 향해 ‘수산시험선이 순회’하고 있다는 보도 기사도 있다(『大阪毎日朝鮮版』1937.2.11.).

3) 이러한 竹島/獨島에서의 어업 면허는 명의상 島根縣이 발급했으나, 그 후는 海驢의 매년 포획 마리 수가 1916~17년에 200~300마리에서 1938~39년에는 100마리 전후까지 급격히 감소한 것도 겹쳐서 隱岐島를 기지로 한 어업권은 사실상 울릉도민에게 이 전되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당사자에 의해서도 “울릉도 어민(주로 조선인)의 횡행에 맡겼다”고 여겼고, 또 “울릉도 어민(특히 조선인)에게 죽도에서 독점적 어업을 하고 싶은 대로 시켜 금일의 한국 측의 어업 실적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울릉도에서의 竹島/獨島로의 通漁는 본래라면 식민지에서 ‘内地’로의 도항에 해당해 조선인에 대해서는 ‘도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하나 그러한 사실은 사료상에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1905년 영토 편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병합이라는 정치적 조치에 의해 隱岐島와 竹島/獨島 사이에 당기고 있던 ‘국경선’이 소멸해, 竹島/獨島는 隱岐島의 ‘屬島’에서 울릉도의 ‘屬島’로 바뀌고 있었다.

그 후 일본 제국주의는 1941년 12월에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나 그 전해 40년 8월 17일에 죽도는 島根縣 隱地郡 5개의 마을에서 해군 舞鶴鎮守府의 관할로 이관되었다. 이 조치도 또 군사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나 舞鶴鎮守府·舞鶴防備隊의 각 ‘전시일지’에 의해서도 일본 해군이 죽도를 군사적으로 활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41년 11월 28일의 八幡長四郎의 출원에 대해 어업을 포함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八幡의 권리를 양도받은 울릉도의 奧村亮(앞에서 말한 平太郎의 자식)은 전쟁 중에도 竹島/獨島에서 어업을 행해 敦賀나 下關에 팔고 있었다.

이러한 史實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竹島/獨島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점점 조선인의 독도가 된다는 알곳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1905년에 일본 정부가 편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0년의 한국병합을 맞이했다고 해도 일의 추이는

거의 같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 정부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이른바 작은 영토 편입 조치보다도 식민지 지배라는 이른바 거대한 통치 행위가 조선인에 의한 領有 의식을 강하게 했다. 이에 따라 해방 후 조선인의 실효 지배로 연결되는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奧村亮의 사용인이었던 울릉도민 尹相述·金茂行은 奧村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 그 사업을 계승했다고 한다.

5. 현대(일본 敗戰과 조선 解放 이후)에서 竹島/獨島 영유권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실, 특히 聯合國軍GHQ-SCAP에 의한 점령정책,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일조약에 대해 검토하겠다.

1) 1946년 1월 29일의 'SCAPIN 677호' 「약간의 외곽지대의 일본으로부터 정치상·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에서 竹島/獨島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일본의 施政權이 박탈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포츠담선언에 규정된 「諸島嶼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유보가 덧붙여졌다. 계속해서 같은 해 6월 22일에는 'SCAPIN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맥아더라인)」에서는 竹島/獨島도 그 조업지역에서 제외되어 선박이나 국민의 접촉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가통치권·국경선·어업권에 대한 연합국의 최종정책은 아니다」라는 뜻의 유보가 있었다. 다만 미국에서는 1946년 6월 24일에 'SWINCC(국무육해군3성조정위원회)59/1' 문서 「舊일본지배하의 위임통치령 및 주변 諸島嶼에 대한 신탁통치 등의 처리방법」을 작성해 “제주도·거문도·다주레(울릉도)·도·리앙쿠르암(竹島)...은 모두 조선의 일부라고 생각할 만하며, 역사적으로도 행정상으로도 조선의 일부이며, 주로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2) 1945년 11월 일본에서는 吉田茂 外相이 '平和條約問題研究幹事會'를 발족시켜 다음해인 1946년 1월부터 외무성 과장급 직원 10수명에 의해 연구작업이 개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이후 1950년 12월에 이르는 사이에 총 36책의 英文調書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7책이 영토문제에 관계된 것이다. 제4책 'Minor Islands in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ese Sea'(1947년 6월)에서, 竹島/獨島는 울릉도와 함께 일본에 귀속되어야 할 지리·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調書는 1947년 1월에 GHQ

의 G.Acheson 政治顧問에게 비밀리에 건네졌고, 그 후임인 W.J.Siebert에게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순차적으로 건네졌다. 이 調書는 미국의 강화조약 초안책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3) 미국정부는 이미 1946년 10월부터 ‘對日講和委員會’에서 평화조약의 초안 기초를 개시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일본에 대해 제재적 내지 징벌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획득한 영토는 울릉도는 물론 竹島/獨島도 經度·緯度를 명시해서 방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미·소 대립, 즉 ‘冷戰’이 격화되고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9년 10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했다. 이에 입각해 미국은 영국의 협력을 얻으면서 소련·중국 등의 공산권 국가들을 배제한 채 종래의 ‘제재적 내지 징벌적’ 강화를 재검토하기에 이른다. 그 중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1947년 1월에 취임한 G.C.Marshall 국무장관에 의해 신설된 PPS(정책기획실)로, 그 초대실장에는 G.F. Kennan이 발탁되었다.

4) 아시아 ‘냉전’ 해제를 의식한 미 국무성의 강화조약초안으로서는 1949년 11월 작성된 것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도 竹島/獨島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것은 東京의 GHQ로 송부되어 Sebald 정치고문에게 건네졌는데, 그는 그 내용에서 ‘강한 위화감’을 느꼈는데 특히 竹島/獨島(리앙쿠르암)에 대해 조선령이 아니라 일본령에 소속시키고자 具申했다. 그 이유로서는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옛날부터 또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는 이들 섬에 기상대 및 레이더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군사적 역할에 주목했다. 이 의견이 미 국무성에서 재검토되어 1949년 12월의 평화조약초안에서는 ‘竹島(리앙쿠르암)’가 일본영토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미국 초안의 전환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작성해서 제공한 前記 「領土問題調書」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또 다음해인 1950년 7월의 미 국무성 「解說」(NARA Lot File 56D527)에서는 “竹島...1905년에 일본에 의해 정식 주장이 이루어졌는데 본 바대로 조선에 의한 항의도 없고 島根縣 隱岐支廳의 관할 아래 놓여졌다. ... 竹島는 조선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조선에 의해 주장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기록했으며, 게다가 점령 중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사용되었던 점(사실 1948년 6월 8일에는 美軍機의 誤爆에 의해 조선인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 및 전술한 “기상대 및 레이더국 用地로서의 가치가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반복해서 서술되고 있다.

5) 1950년 1월 D.Acheson이 미 국무장관에 취임하자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하는 ‘全面講和’는 아니어도 미국·영국 등 소위 자유주의 국가들에 의한 ‘다수 내지 단독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노선을 수행하기 위해 Acheson은 4월에 변호사인 J.F.Dulles를 顧問에 임명했다. 그는 종래 條約草案 約15안을 훑어본 후 같은 해 6월에는 한국 및 일본(21~28일)을 시찰했는데, 특히 일본에서는 GHQ 간부 뿐 아니라 兩院議長·諸省廳長官·與野黨·勞組代表 등과도 회담했다. 일본에 있었던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병참기지로서의 일본을 보다 한층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자유진영에 들 필요성을 통감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의 諸초안은 ‘竹島(리앙쿠르岩)’를 일본영토에 귀속시킨다고 명기한 1949년 12월 초안에서 변화해 영토귀속을 일본으로부터 제외할 것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게 되어 간다. 그 후 Dulles는 소련 등을 포함한 관계각국과 정력적인 협의를 행한 후 최종적으로는 1951년 3월 23일 최종의 미국 초안을 확정했다. 이것은 거슬러 5초안과 마찬가지로 竹島/獨島의 일본귀속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한 것이었다. 그 요인으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반영해 장래 북한 측이 승리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굳이 애매한 표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原喜美惠[2005]).

6) 1951년 6월 24일에 개정된 美英공동초안은 1951년 7월 7일에 일본정부에 內示되었고, 또 13일에는 梁裕燦 주미한국대사에게도 內達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같은 달 19일자로 “獨島와 波浪島를 조선에 귀속시키고자 조약에 명기한다”는 취지의 公文을 Acheson 미 국무장관에게 건넸다. 그때 Dulles는 梁裕燦에게 ‘獨島 및 波浪島’의 위치와 일찍이 조선령인지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梁裕燦은 두 섬 모두 울릉도 부근에 있으며 또 조선령이라고 회답했다. 그러나 ‘波浪島’는 제주도의 한참 남쪽에 있는 거의 가공의 섬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 측이 수정요구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결핍된 것이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정부가 처해있던 시대상황, 요컨대 1950년 8월에는 부산으로 피난해서 ‘임시수도’를 두고 있던 점, 또 梁裕燦 대사는 1923년부터 하와이에서 개업한 의사로 영어 밖에 하지 못해 조국의 사정에 어두웠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1951년 8월 10일자 D.Rusk 국무차관보에 의한 미국 측 회답은 매정한 것으로, “獨島...평소에는 무인도인 이 暗礁郡은 우리들의 정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島根縣 隱岐支廳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한국 측 수정요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Rusk 書簡」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준 것이 국무성 지리담당관이었던 S.W.Boggs의 7월 31일자 보고서이다. 그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문헌적 증거인 일본 외무성 팜플렛(1947년 6월)의 진술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정병준[2010]). 이 「Rusk 書簡」은 미

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있던 한국에 대한 무자비라고도 할 만한 조치로도 평가된다. 또 이 서간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竹島=獨島가 일본령이라고 인식된 증거이다”(池內敏[2012]) 라는 견해에 대해, 동 서간이 “당사국을 구속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竹內猛[2013])고 의문을 드러내는 견해도 있다. 게다가 ‘竹島紛爭’이 격화되고 있던 1953년 11월 30일에는 주일미국대사관의 W.T.Turner 참사관이 국무성에 보낸 각서에서, 미국정부로서는 「Rusk 書簡」의 취지를 견지하고 한국 측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중재에 위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塚本孝[2007追補], Wikipedia ‘William Taylor Turner’ 2014년 5월 19일 갱신).

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조인되었다. 의장은 Acheson 미 국무장관이 맡고 일본 측의 主席全權은 吉田 수상이었다. 공산권 국가들에서도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의 각국이 참석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조인을 보고만 있었다. 또 중국·대만과 남북한은 초청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약의 체결당사국은 일본을 포함해 합계 49개국이었다. 그 영토조항의 全文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방기한다”고 되어 있고, 문제의 竹島/獨島 영토귀속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 국제법학자의 다수는 “일본이 방기한 지역에서 竹島는 제외되어 있다”고 하는 통설적 조문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해서 조선 안에 竹島/獨島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판단이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약체결 과정에서 시행착오의 경과를 밟으면서 거의 全能의 권위를 발휘한 미국주도의, 따라서 제국주의적인 책략에서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함을 굳이 남겨 분쟁의 씨앗을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게다가 1948년 8월에 한반도 남부의 단독선거로 성립된 한국은 “竹島=獨島의 통치권을 미군정청에서 승인해서 행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竹內猛[2013]). 굳이 그 법적인 근거를 따지자면 사실관계는 확실히 그대로이며, 당시 竹島/獨島는 사실상 ‘無主地’가 되어 울릉도 어민들이 대거 竹島=獨島에 건너가 조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美軍機의 오폭사건도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서로 「Dulles 電文」이 있다. 이것은 1953년 12월 19일자 東京의 주미대사관에서 서울의 주미대사관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이다. 그 내용은 근년 국제사법재판소(IJC)의 동향을 감안해서 미국은 일본 측에 법률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정병준[2010]). 「Rusk 書簡」을 발간한 것에 관계없이 미국의 제국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나타나 보이는 증거로서 무시할 수 없다.

확실히 많은 論者 특히 국제법학자가 말하듯이, 조문의 字面만을 가지고 보면 “竹島를

일본이 조선에 대해 방기하는 섬 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決着을 보기에는 큰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전략적 의도, 특히 한국전쟁 중의 군사적 의도가 이 섬의 귀속을 형식적으로는 일본령으로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독도의용수비대’의 파견과 해양경찰경비부대의 상주 등 실제로는 한국의 실효 지배를 용인했다. 즉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현재 동맹국인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즉시 ‘李라인’이라고 하는 실력행사를 해서 경찰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의 군사점령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한국 측의 사실상의 통치행위에 대해 취한 미국정부의 대응으로 1952년 10월 3일자로 東京의 주일 대사관에서 국무성으로 송신된 비밀서간(內藤正中·朴炳涉[2007]에 수록)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당시 竹島/獨島를 사격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美極東空軍이 같은 해 9월 15일에 獨島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원과 해녀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하고(사상자 없음), 이어서 같은 달 22일에는 울릉도에서 獨島로 향하고 있던 제2차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단이 獨島 부근 해상에서 폭격을 만났다고(사상자 없음) 하는 사건을 계기로 在釜山美海軍司令部에 대해 주의환기를 촉구했던 것이다. 내용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① 이 사격장이 日美安全保障條約에 의해 일본정부의 승인을 얻었다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부는 정기적으로 어업을 목적으로 리앙쿠르곶으로 가서’ 조업하고 있었다는 점, ③ 국무성은 竹島/獨島를 ‘어느 시기 조선왕조의 일부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로서는 오폭사고 등에 의해 이 영토문제에 부주의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8) ‘韓日會談’은 평화조약 조인에서 발길을 접하듯 이미 1951년 10월 20일부터 예비 회담이 시작되었다. 그 준비를 담당하는 것은 GHQ의 Sebald 외교국장으로, 말하자면 극동에서 美日韓 ‘反共軍事同盟’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952년 1월 18일에 선포된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 소위 ‘李라인’ 문제로 평화조약에서 보류된 竹島/獨島의 영유문제가 재연되는 계기가 되어,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 李라인 선언에 대해서는 원래 “맥아더라인이라고 하는 한국어업에서의 ‘기득권익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發案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한일회담의 교섭재료”라고 하는 점도 강하게 의식한 복합적인 목적·성격을 가진 선언으로 변화·발전해 갔다”고 하는 견해(竹內猛[2013])가 타당할 것이다. 竹島/獨島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응수를 보면, 일본 측은 이것을 ‘국제법상의 문제’로 파악해 회담의 의제로 삼고자 하는 의향이 강하며, 한국 측은 ‘역사문제’로 파악해 의제에서 제외하려고 해서 논의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1961년 5월 쿠데타로 성립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그 ‘개발독재’의 자금획득을 주된 목표로 한 교섭이 추진

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1962년 12월의 ‘大平正芳·金鐘泌會談’에서 ‘배상금’ 명목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有償 2억 달러, 無償 3억 달러의 자금공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대략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竹島/獨島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양국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섬의 ‘共有’나 ‘爆破論’ 등 양국 교섭담당자 개인에 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수면 아래에서 부상하기도 했는데, 결국 “해결해야 할 것을 가지고 해결했다고 간주한다”고 하는 극히 애매모호한 密約이 체결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1965년 6월 22일에 韓日基本條約과 함께 조인된 「분쟁처리를 위한 교섭공문」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일본 측은 여기에 竹島問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반대로 한국 측은 獨島問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양해에 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애매한 마무리였다. 이 과정을 집요하게 追及한 것은 Roh Daniel[2008]인데, 密約文書는 사료로서는 제시할 수 없고 관계자에 대한 오럴 히스토리(oral history)라고 하는 수법으로 겨우 진상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맺음말 - 竹島/獨島 영토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이상과 같이 竹島/獨島 영유권에 대해 그 역사적 기원을 追究하면 ①일본의 식민지 지배, ②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라고 하는 다국간협정, ③그 후의 韓日諸條約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③의 한일조약에서는 그 해결을 보류해 ‘密約’으로 눈앞의 현실을 호도하고자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1990년대에 이르러 소위 ‘문민정권’(1993년 2월에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이 탄생하기에 이르러 이러한 ‘密約’은 사실상 폐기되고 접안시설의 건설(1995년 12월~1997년 11월), 일반관광객의 入島 허가(2005년 3월 신고제, 2009년 6월 무제한) 등 실효지배가 강화되었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최근 단서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애매하게 해서 청구권을 ‘경제협력’이라는 美名으로 얼버무린 한일제조약에 있다. 한국 측의 강경자세는 이러한 애매한 청산에 대한 이의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돌연 독도에 상륙한 것도 정권의 레임덕 상황 타개에 영토주권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항간에 일본 측은 ‘영토문제’로 해석하고 한국 측은 ‘역사문제’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질은 ‘역사적으로 推移되어 온 영토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결의 대전제는 식민지 지배의 전면적 청산에 관계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므로, 1965년의 한일제조약이 간과해온 ‘위안부’, ‘군인군속’, ‘강제노동’ 등 소위 전후보상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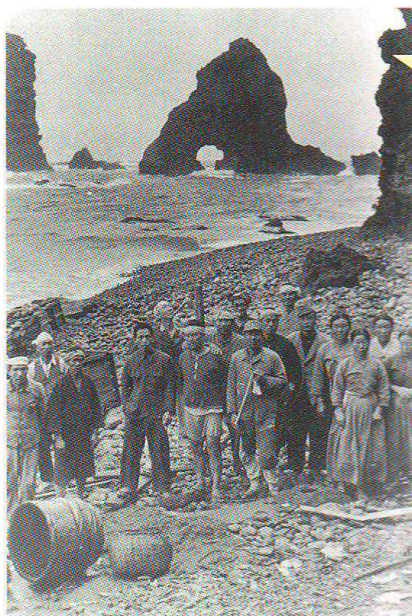
를 일괄해서 해결(이 점은 최근 한국에서 복수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양국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할 필요가 있다. 이 테이블은 「분쟁처리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해 설정가능하고, 이것이 기능하게 된다면 국제사법재판소(IJC)에 의한 조정 등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竹島/獨島문제의 ‘공동연구’에 관해서는 일찍이 2차례에 걸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보고서는 2005년 10월 공개)와 같이 밑실에서의 인선이 아닌 有識者로부터 상응하는 위원을 공모하고 또 議題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일찍이 취한 “독도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는 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누누이 서술해온 바와 같이 오늘날 한일 양국에서 사료발굴과 그 검토 수준을 가지고 성과를 대조하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 私見을 제시하자면 100% 어느 쪽의 것으로 귀속된다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국 측 관리하의 자연보호구역’(芹田健太郎 [1999])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실상의 현상이 되고 있고(1982년 11월 6일 지정), 게다가 근년 “한국에 의한 竹島의 ‘現狀維持’와 자연보호구역으로의 설정, 일본어민의 어업권 확보와 어업자원의 보전조치 등을 조건으로 일본이 이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豊下櫛彦[2012])고 하는 해결책이 가장 마찰이 적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본인도 자유롭게 入島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어업의 제한도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고, 또 환경파괴에 관계된 諸시설을 이 이상 증설하는 것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관광유람선의 운항도 상륙이 아니라 섬 주위를 순항하는 등의 자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진 1]



隠岐の人たちによる竹島でのアシカ
りょう 猟の様子です。(1935年)

[사진 2]



漁業を行った隠岐の人たちです。雇われた
朝鮮人の海女も写っています。(一九三五年)
【下の収支決算書参照】

20	
竹島海鹽実況覚書	
一密漁者ノ渡航月日、人数、捕獲数	
久見村組(橋岡友次郎外十名)	
三月三十日渡航 人夫数六人 猟艇老艘	
式百二十八頭捕獲	
岩崎組(山口県人、岩崎某)	
四月七日 十人 朝人七 邦人三 式艘	
凡二百余頭	
飯美村組(飯美村某外二名)	
四月十一日 七名 二隻 三百五十頭	
井口組(井口龍太、永海寛市組合)	
四月十二日 十二名 二隻 三百頭	
脇田組(宇賀、脇田庄太郎)	
四月十四日 九名 朝人六 邦人三 二艘 二百余頭	
浦郷組(浦郷村門某外二名)	
四月十四日 十名 朝三 邦七 二艘 二百余頭	
下西組(下西村某、西町、石井某組合)	
四月十八日 八名 二艘 二百余頭	
赤崎組(鳥取県赤崎 錢本某等)	
六月四日 八名 二隻 五十頭	
都合八組、人夫七十名、猟艇拾七隻、捕獲数千八百頭	
二年生ノモノ及牝ノミナルヲ以テ、之レヲ八尺以上ノ牝ニ比スレハ、百八十頭ニ匹敵スルニ足ラ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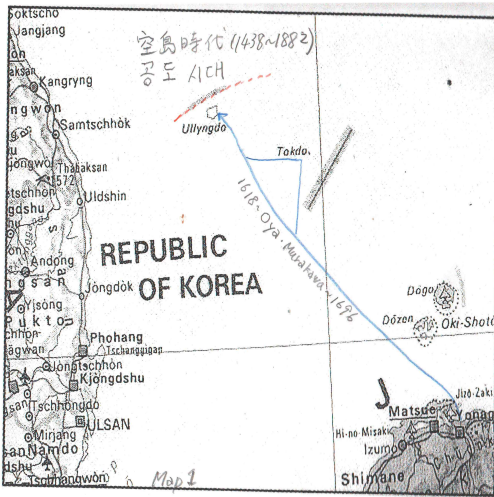
【史料 2】

1935(昭和10)年 春(5月20日~7月10日)
 収支決算書 [契約30頭、境港渡し1頭140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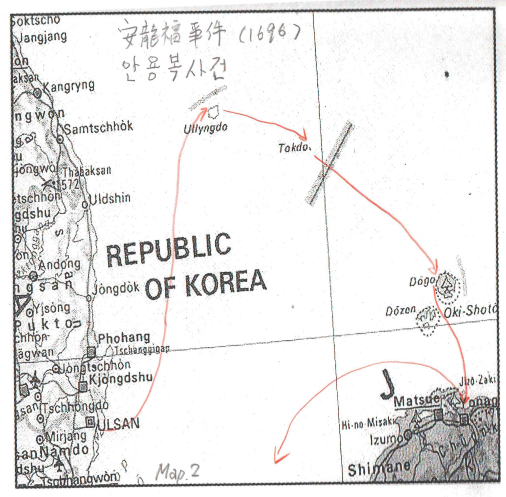
収入の部		現在価値換算	
アシカ捕獲	29 頭	4,060 円	2,030 万円
干シアワビ		800 円	400 万円
計		4,860 円	2,430 万円
支出の部			
発動機諸経費		800 円	400 万円
人件費(漁夫)	13 人	1,300 円	650 万円
海女費	4 人	600 円	300 万円
雑費		500 円	250 万円
米代		180 円	90 万円
小型船	3 隻	250 円	125 万円
利益金		1,230 円	615 万円
計		4,860 円	2,430 万円

県から許可をもらった橋岡・池田・八幡さんの漁業の決算書です。当時の一円を現在の五千円として計算しました。(小学校教員の初任給の比較換算による)

[지도 1]



[지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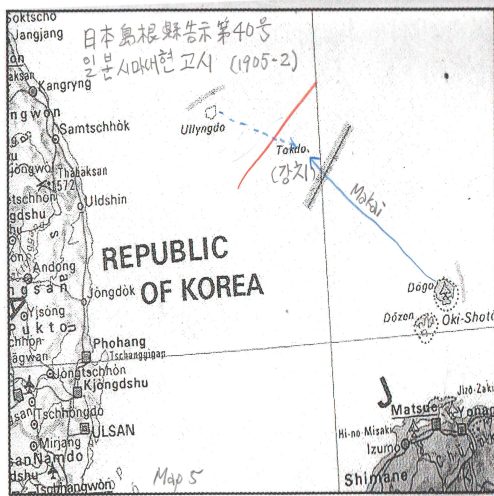
[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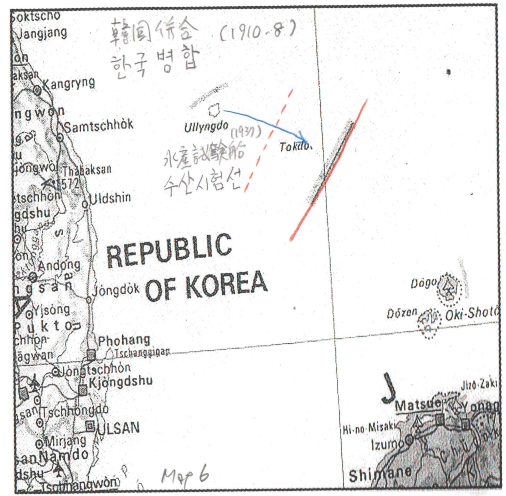
[지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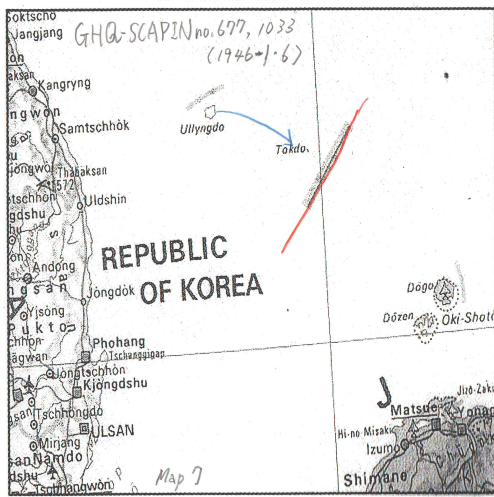
[지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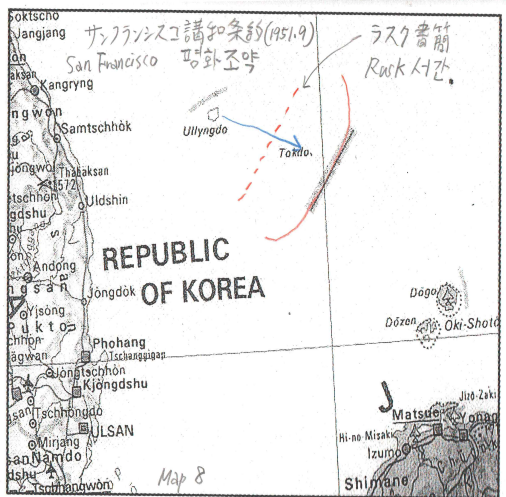
[지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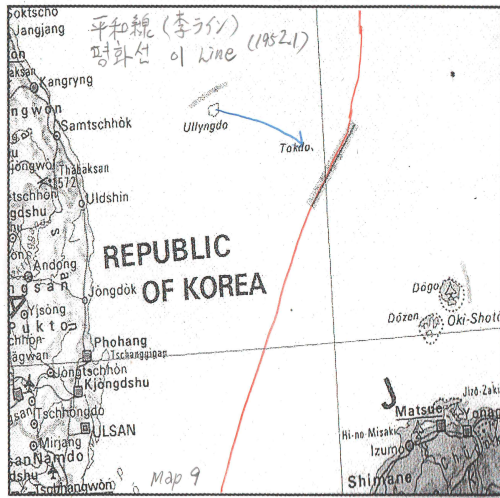
[지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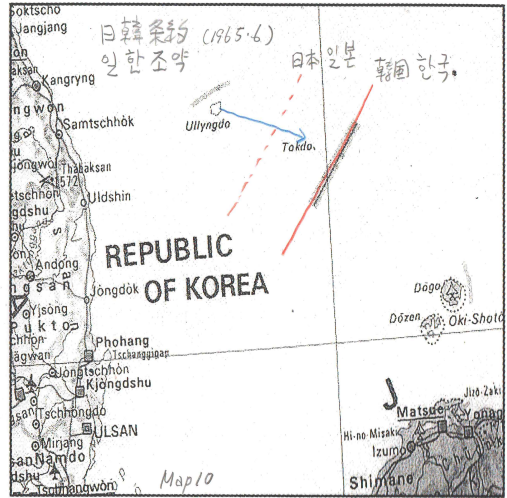
[지도 8]



[지도 9]



[지도 10]



日本の領土問題の起源

－ 竹島/独島問題を中心に －

坂本悠一

(立命館大学 社会システム研究所)

はじめに － 領土問題に向き合う歴史学研究者の基本的姿勢

紛争対象当該領土が係争国のいずれに属するかを声高に主張するのは、研究者の本来の仕事ではない。とりわけ近年になって激化している竹島/独島領有権問題をめぐる論争では、そうした政治性を帯びた論述が、両国ともに過剰化している。韓国では東北亜歴史財団独島研究所が国家的プロジェクトであるのにたいし、日本では一地方自治体にすぎない島根県竹島問題研究所がそうした国家的課題を研究者に提供する機関となっている。もちろん学術研究を国家や自治体が支援すること自体は、研究費の援助といった面から効果が期待される。しかし竹島問題研究所の場合を採ってみれば、史資料の発掘には一定の成果をあげてはいるものの、会の公式主張である「日本固有の領土」という枠組みから乖離した論考は、会の出版物からはすべて排除されている。これは学問の政治への従属に等しいものであるし、真摯な研究成果をナショナリズムに利用するという意味で、「学問研究の自由」を脅かしかねない危惧がある。したがって、報告者は「固有の領土」などといった恣意的前提を出来る限り排除して、日韓両国だけでなく、米国を含めた関係各国の一次史料をでるかぎり客観的に解釈して一定の結論を得るといった基本的姿勢によって、この課題にアプローチしていきたい。また、こうした基本的姿勢は、歴史研究の成果を基礎とした歴史教育にも求められている。

1. 前近代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報告者は近現代史研究者であるので、前近代史については一次史料を解読した研究は不可能である。したがって本題に入る前に、これまでに日韓両国で通説となっていると判断される成果を自身の理解に拠って整理しておきたい。

① 西暦512年の新羅による「于山国」征服

この史実は『三国史記(新羅本紀)』(513年条)に初出するが、于山国に鬱陵・于山の2島があるとの記録は、遙か後年の『世宗実録(地理誌)』(1432年)によるもので「当該国に2島が存在したという」程度の情報しかなく、512年以降竹島/独島が一貫して朝鮮領であったという、韓国や北朝鮮で主流となっている領有権主張の根拠には到底なりえない。

② 17世紀日本の伯耆国商家による「竹島(鬱陵島)経営」

これは15世紀前半に始まった李氏朝鮮王国の「空島政策」に乗じて、鳥取藩松江城下の大谷・村上両家に限定して非公式に許可され実行されたものであった。しかし後述する朝鮮人漁民との競合を受けて、1695～96年には江戸幕府が鳥取藩への調査を独自に行ない、96年には公式に「元禄竹島渡海禁令」を同藩に発出することによって停止された。さらに1838年には、石見国浜田藩の会津屋による密輸事件を契機に「天保竹島渡海禁令」が、今度は全国法令として通達された。現在の日本政府外務省は、この「竹島経営」をもって、近代の領有権の「未成熟な権原」としているが、これは国際法上成立しえない誤った見解である。

③ 安龍福の渡日と「領土交渉」

1693年に空島時代の鬱陵島で密かに漁労に従事していた安龍福らは、米子商人と遭遇し、安と朴於屯の二人が鳥取まで連行されたが、対馬を経て朝鮮に送還された。さらに1696年には、鬱陵島と竹島/独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ため今度は自らの意志で渡日したが、その直前に江戸幕府が「元禄竹島渡海禁令」を発出していたため、実質的にはその効果はなかった。ただし、第1次渡日の際の彼の主張が、幕府をして「渡海禁令」を出すに至らしめた日朝交渉の契機となったことは否定できない。しかし、彼は当時の朝鮮政府を代表する立場にはない密漁者であり、その行動によって竹島/独島が朝鮮領であることが認定されたことにはならない。したがって、彼を「朝鮮の領土を守った英雄」として美化する教育は望ましいものではない。

以上を要約すると、前近代における竹島/独島の位置は日朝両国の境界領域にあり、こうした史実は近現代の領有権問題に直接的に繋がるものではない。

2. 近代前期(植民地期以前)における竹島/独島領有権

① 1877年の日本太政官指令

日本の明治維新政府は、1876年10月に島根県による「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角」を受けて、旧幕府文書などを精査したうえで、翌77年3月「日本海内竹島外一島は本邦これ無き義」との太政官指令を決定した。これは「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ともに日本領土外と解釈したことであり、先の江戸幕府による2回に渉る「渡海禁令」と併せて、日本の中央政府が3度に渉りその領有権を否定したことを意味する。

② 朝鮮政府による鬱陵島開拓と日本の侵入

先の明治政府の決定や、度々に渉る「竹島(鬱陵島)開拓願」の却下にも拘わらず、同島に不法に侵入し伐木などに従事する隠岐島民をはじめとした日本人は跡を絶たなかった。これにたいし。朝鮮政府は15世紀初頭以来450年以上に渉った「空島政策」を撤回し、1882年「鬱陵島開拓令」を出して陸地住民の移住を奨励するに至った。また翌83年には朝鮮政府の抗議による日本人の一斉引揚げも実施されたが、その後も侵入渡島は継続された。また1902年4月に至って、これら在留日本人の保護と取締のため、釜山領事館の警察官駐在所が設置されることとなった。地方当時同島に移住した朝鮮人は、全羅道巨文島(コムンド)などからの季節的通漁者を除いて、移数が全島各地の内陸部に散在して居住し、農業とりわけ初期には火田で開墾した農地での耕作(大豆・大麦・馬鈴薯・玉蜀黍など)を主な生業としていた。また漁業については若布・海苔などの採取に限られており、漁業や商業は専ら移住日本人が独占していた。

③ 竹島/独島における海驢猟と「獨島」呼称

前述のように、鬱陵島に渡島する日本人が増大し、また同島に移住した朝鮮人も累増するさかで、大韓帝国政府は禹用鼎を同島に派遣して視察にあたらせるなど、実効支配を強化していった。また竹島/独島にたいする認知も、鬱陵島在住の日韓両国民の間に高まったと考えられるが、この当時においては隠岐島と同島を往復する日本人の方が実際に見聞する可能性が高く、それは海驢の生息を発見する契機となった。また日本海軍も1904年2月の日露戦を契機に、日本海一帯で軍事要地の調査を実施し、その過程で同年9月25日軍艦新高が、当時「りゃんこ島」と通称されていた竹島/独島の韓国名が「獨島」であるとの記録を残している。したがって、竹島/独島の「獨島」なる呼称はこれをもって嚆矢とし、これ以前に遡及することは史料上困難である。

④ 1900年10月大韓帝国勅令第41号

こうした情勢のもとで、竹島/独島にたいする認知を強めつつあった韓国政府は、1900年10月25日に「勅令第41号」を公布施行し、鬱陵島を江原道「鬱陵郡」に昇格し、その管轄区域を「鬱島全

島・竹島・石島」と規定した。韓国においては、ここに言う「竹島」は鬱陵島に近接する現「竹嶼」であり、「石島」が現「竹島/独島」に該当するという解釈が、政府だけでなく研究者を含めた圧倒的多数の見解となっている。しかし、この勅令には経度緯度で地域が特定されず、「石島」の名称も全羅・慶尚両道の方言の音韻転訛による「独島」と説明されるが確定的な実証はされていない。さらに決定的な弱点は、この「石島」にたいする行政権の行使など実効の支配はまったく実施されていない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勅令は『官報』に掲載されたという公然性は有するものの、国際法的な効力において致命的な欠陥があり、これをもって韓国政府の竹島/独島にたいする近代的な領有権が確立したとは到底言い難い。したがって、韓国側は1906年3月に至って、島根県竹島調査団が鬱陵島に来島するに及んで、初めて次の日本による領土編入の情報に接することとなり、狼狽するのである。

⑤ 1905年大日本帝国による竹島/独島の領土編入

1904年9月29日、隠岐島在住の漁業者である中井養三郎が、前年に竹島/独島で行なった海驢猟を独占するため、日本の外務・内務・農商務各省に「りゃんこ島領土編入並に貸下願」を提出した。これは、翌05年1月28日に閣議で承認されて「竹島」と命名され、翌2月22日には島根県告示第40号で、「隠岐島司の所管」とされた。しかし、この時期は日露戦争の最中であり、日本海軍はロシアのバルチック艦隊との主戦場を鬱陵島と竹島/独島近海と想定しており、すでに1904年9月2日には鬱陵島に望楼と電信線を設置し、同年11月は竹島/独島にも、同様の施設の設置予備調査を行っていた。その直後の「領土編入」願書と閣議決定は、海驢猟の保護を表向きの看板としていたが、真の狙いは軍事施設の建設にあったことは、当時の海軍水路部長(肝附兼行)や外務省政務局長(山座円次郎)の発言趣旨から明らかである。したがって、その主目的は帝国主義戦争を遂行するための軍事的なものであったが、当時の竹島/独島は人の住まない「無主地」であり、その領土編入を地方的告示であれ公示したことは、堂時の国際法上いわゆる「無主地先占」に該当し有効と見なざるを得ない。ただ、竹島/独島における仮設望楼と電信施設の開設は日本海海戦終了後の1905年8月19日のことであり、実戦のうでで役割を果たすことはなく、翌年には「竹島漁猟合資会社」に払い下げられた。また編入措置は軽度緯度の明記された告示だけでなく、現地調査も実施したうえで、土地台帳への記載や漁業鑑札の発給の実行されている。これにたいする韓国側の抗議は、1905年11月のいわゆる「保護条約」により外交権が剥奪されていたことから、不可能であった。したがって、この領土編入をもって、「独島は日帝による植民地支配の最初の犠牲地」といった評価は当たらない。

4. 近代後期（植民地期）における竹島 / 独島領有権

① 日本帝国主義は日露戦争の勝利によって、韓国支配にたいする諸列強の容認を取り付け、さらに韓国政府にたいしては軍事力の威嚇をもって「保護条約」による統監府の開設など一連の植民地化を強行し、ついに1910年8月22日「韓国併合条約」の調印を強要した。これによって、江原道鬱島郡も朝鮮総督府の統治下に入り、在住日本人の人口も併合の翌11年末には1200名近くに急増し、これは同島総人口の約15%を占めるものであった。これら移住民の出身地は、島根・鳥取の両県で約8割を占め、島根県ではその過半数が隠岐諸島の出身であった。これら日本人の居住地は郡庁所在地である南面道洞に集中し、生業としてはとくに漁業が最多で、公務および商業がこれに次いで多かった。他方この時期の朝鮮人は専ら農業に従事していたから、植民地期の日朝鬱陵島住民間では、生業面での一種の棲み分け状況が生じ、その限りではある意味で「共棲状態」が続いていたと言える。しかし、その内実を見ると、資力や教育水準の面において日本人植民者の優位は揺るがず、行政面についても歴代島司はすべて日本人で、少数の下級朝鮮人吏員が存在したのに留まる。

② ところで、当初は日本人がほぼ独占していた鬱陵島の漁業について見ると、島賊漁次いで鯖漁などの沖合漁業が主であり、その豊漁と不漁が定住人口の増感にかなりの影響を及ぼしていた。これにたいし、朝鮮人は農業を生業の中心とし、副業として沿岸での若布・海苔などの採取を行っていたため、人口は安定的に増加し1930年には、1万人の大台に達した。また、前述した竹島 / 独島における漁業にかんしては、すでに1902年頃に鬱陵島在留の日本人(隠岐・天草・志摩地方からの出稼者を含む)たちが、鮑を採取するために出漁したという記録がある。翌03年から本格化した海驢猟については、既に述べた中井養三郎ら4名の隠岐島を基地とする「竹島漁猟合資会社」の独占とはならず、密猟者が加わった乱獲状態が続き、他方鬱陵島在住の日本漁民が朝鮮人漁夫を雇って出漁する事例が見られる。1905年に中井側が記録した史料によれば、この年に竹島 / 独島に赴いた密猟者計8組のうち3組は朝鮮人漁夫を伴っており、鬱陵島を基地として出漁したことが確実である(「竹島海驢実況覚書」)。さらに1906年5月初旬には、天草漁民約30人が来島し、漁猟会社側と衝突したとの記録もある(『竹島漁業の変遷』)。

次に回遊性魚族である島賊や鯖などは沖合漁業であることから、漁船をはじめ一定の装備を必要としたから、当初は資金力に優る日本人漁師の独占という状況が続いた。しかし、その後はこうした日本人漁師に雇用されていた朝鮮人漁夫たちも漁業技術の伝習を受け、また資金を蓄えることに成功した少数の漁夫は自前の漁船を所有し独立して漁業を営む者も出現することになった。とくに統計史料の得られる1928年と33年の産業別戸数および人口を一瞥しておく、以下のように朝鮮人漁業者の戸数・人口が累増している。

年次	日本人漁業戸数(人口)	朝鮮人漁業戸数(人口)	出典
1928	58(195)	257(1366)	昭和八年島行政一斑
1933	33(125)	314(1576)	昭和十三年島勢一斑

このように日本の強権的な植民地支配下にあっても、陸地から隔絶された孤島であった鬱陵島においては、日朝両民族が比較的共生して生活するある種の「共棲状態」のもとで、従来農業にしか生業を得られなかった朝鮮人にも、日本人島民の減少に伴って漁業への進出が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竹島／独島における海驢の漁業権は、中井養三郎から子息の養一の名義に継承されたが、実質的には隠岐島在住の素封家である八幡長四郎に転売された。また鬱陵島在住の奥村平太郎は、1921年頃より「毎年、朝鮮人多数をひきつれて、竹島に出漁し、主として、アワビ、サザエ、などの密漁を行なった」との調査記録が存在する(奥村亮口述書『竹島漁業の変遷』)。おそらくこれを契機として、1925年には根付漁業の権利は八幡から奥村平太郎に売却(いわゆる「浜売」)された。さらに1920年代後半から30年代前半にかけて、連年4月下旬から7月下旬にかけて鬱陵島を基地とした動力船が曳航する潜水器漁業が日朝協同で実施されていた。例えば、5トンの発動機船1艘(計5名・うち朝鮮人4名)が潜水器船2艘(計14名乗組・うち朝鮮人12名)を曳航し、1日で鮑約600貫の収穫を得たとされる(奥村亮口述書・同上)。同時に奥村は鬱陵島において大規模な缶詰工場を経営していた。このようにして動力船の発達により、竹島／独島方面への出漁も格段に容易になり、例えば1935年5-7月には日本人3名の漁業鑑札により日朝双方の漁夫13名と済州島の海女と覚しき4名の同島における海驢と鮑の操業状況が写真として残されている(「橋岡・池田・八幡家決算書」)。さらに、1938年以降「竹島漁業は、九十トン、二十トンの二隻の母船と運搬船とを派遣し、潜水器二艘、小舟五隻で漁撈し、乗組員は総勢約四十名で、その内監督者二～三名が日本人で、他は朝鮮人であった。」1941年には「サイシュウ島の海女十六名をひきつれ、ウニ獲に渡島した…」とも記録されている(奥村亮口述書・同上)。さらに1937年頃には毎年夏季に、鬱陵島から竹島／独島に向けて「水産試験が巡回」していたという報道記事もある(『大阪毎日朝鮮版』1937.2.11)。

③ こうした竹島／独島での漁業免許は名義上島根県の発給したものであったが、その後は海驢の年間捕獲頭数が、1916-17年当事の200-300頭から1938-39には100頭前後にまで激減したことも重なって、隠岐島を基地とした漁業権は事実上鬱陵島民に移転していったのである。こその結果は当事者によっても、「ウツリョウ島漁民(主として朝鮮人)の跳梁にまかせた」(橋岡重忠報告書『竹島漁業の変遷』)とされ、また「ウツリョウ島漁民(特に朝鮮人)に竹島における独占的漁業をほしいままにさせ以て今日における韓国側の漁業実績をつくりあげるに至った」(中井養一口述書・向上)と評価されている。こうした鬱陵島からの竹島／独島への通漁は、本来であれば植民地から「内地」への渡航に該当し、朝鮮人にたいしては「渡航証明書」の発給が必要なはずであるが、そうした事実は史料上

では一切確認できない。言い換えれば、1905年の領土編入後間もなく、韓国併合という政治的措置によって隠岐島と竹島／独島間に引かれていた「国境線」が消滅し、竹島／独島は隠岐島の「属島」から鬱陵島の「属島」へと転化していたのが実態であった。

その後日本帝国主権は、1941年12月にアジア太平洋戦争に突入するが、その前年の40年8月17日には、竹島は島根県隠地郡五箇村から、海軍舞鶴鎮守府の所轄に移管された。この措置もまた軍事的要請によるものと推察されるが、舞鶴鎮守府・舞鶴防備隊の各「戦時日誌」(JACAR閲覧)によっても、日本海軍が竹島を軍事的に活用した形跡は見あたらない。むしろ41年11月28日の八幡長四郎の出願にたいして漁業を含む土地使用権を付与しており、八幡の権利を譲渡された鬱陵島の奥村亮(前記平太郎の子息)は、大戦中にも竹島／独島において鮑漁を行ない、敦賀や下関に売却している(奥村亮口述書『竹島漁業の変遷』)。

これらの史実を総合的に観察すれば、竹島/独島は日本の植民地支配下において、ますます朝鮮人の独島となるという皮肉な結果を招来したとも言えよう。したがって、あえて1905年に日本政府が編入しないで、10年の韓国併合を迎えたとしても、ことの成り行きはほぼ同様であったのではと推察される。結論的に言えば、日本政府の軍事的目的によるいわばマイクロな領土編入措置よりも、植民地支配といういわばマクロな統治行為が、朝鮮人による領有意識を強めたのである。それによって解放後の朝鮮人の実効支配に繋がる基礎が形成されてい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事実奥村亮の使用人であった鬱陵島民の尹相述・金茂行が、奥村の日本への引揚後、その事業を継承したという(奥村亮口述書・同上)。

5. 現代(日本の敗戦・朝鮮の解放以後)における竹島 / 独島領有権

つぎに第二次大戦後の史実、とくに連合軍GHQ-SCAPによる占領政策、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日韓条約について検討する。

① 1946年1月29日の‘SCAPIN677’「若干の外郭地帯の日本からの政治上および行政上の分離にかんする覚書」で、竹島／独島もこの地域に含まれ、日本の施政権が剥奪された。しかし、この措置はポツダム宣言に規定された「諸島嶼の最終的決定にかんする連合国の政策」ではないとの留保が付された。つづいて、同年6月22日には‘SCAPIN1033’「日本の漁業および捕鯨業の許可区域にかんする覚書(MacAthur-Line)」では竹島／独島もその操業地域から除外され、船舶や国民の接触も禁止された。しかし、これについても「国家統治権・国境線・漁業権についての連合国の最終

政策ではない」旨の留保があった。ただし、米本国では、1946年6月24日に‘SWINCC(国務陸海軍3省調整委員会)59/1’文書「旧日本支配下の委任統治領および周辺の諸島嶼にたいする信託統治などの処理方法」を作成し、「済州島・巨文島・ダジュレー(鬱陵)島・リアンクール岩(竹島)…はすべて朝鮮の一部と考えられるべきであり、歴史的にも行政上も朝鮮の一部であって、主として朝鮮人が居住している」と明記されていた。

② 1945年11月日本では、吉田茂外相が「平和条約問題研究幹事会」を発足させ、翌46年1月より外務省課長級の職員10数名により研究作業が開始された。そして同年11月以降50年12月至る間に合計36冊の英文調書が作成され、うち7冊が領土問題関係で、第4冊の‘Minor Islands in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ese Sea’(47年6月)において、竹島／独島は鬱陵島とともに日本に帰属すべき地理・歴史的根拠があると説明している。これらの調書は、47年1月にGHQのG.アチソン(Acheson)政治顧問に秘密裏に手渡され、その後任W.J.シーボルト(Siebold)にも非公式なルートで順次手渡されていった。この調書は米国の講和条約草案策定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ことになる。

③ 米国政府は、すでに1946年10月から「対日講和委員会」において平和条約の草案起草を開始していたが、その内容は総じて日本にたいして制裁的ないし懲罰的なものであった。例えば領土問題については、日清戦争以降に日本が獲得した領土は、鬱陵島はもちろん竹島/独島も、経度・緯度を明示して放棄す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た。しかしこの過程の最中、米ソ対立いわゆる「冷戦」が激化し、1948年9月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49年10月には中華人民共和国が成立した。これを踏まえて米国は英国の協力を得ながら、ソ連・中国などの共産圏諸国を排除しつつ、従来の「制裁的ないし懲罰的」講和を見直すに至る。その中心業務を担ったのが、47年1月に就任したG.C.マーシャル(Marshall)国務長官によって新設されPPS(政策企画室)で、その初代室長にはG.F.ケナン(Kennan)が抜擢された。

④ アジア「冷戦」体制を意識した米国務省の講和条約草案としては、1949年11月作成のものが知られるが、そこでもなお竹島/独島は日本の領域から除外されていた。これは東京のGHQに送付され、シーボルト(Sebold)政治顧問に手交されたが、彼はその内容に「強い違和感」を覚え、とくに竹島/独島(リアンクール岩)について朝鮮領ではなく日本領に所屬させるよう具申した。その理由としては、「これらの島に対する日本の主張は古くまた妥当と思われ、…安全保障の見地からは、これらの島の上に測候所およびレーダー一局を設置できる」として、その軍事的役割に着目している。この意見が米国務省において再検討され、49年12月の平和条約草案で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が日本領土に変更されている。こうした米国草案の転換については、日本側が作成し提供した前記「領土問題調書」が大きな影響を与えたものと推測される。また翌50年7月の米国務省「解脱」(NARA Lot File 56D527)では、「竹島…1905年に日本による正式な主張がなされ、見たところ

朝鮮による抗議もなく、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置かれた。…竹島は朝鮮名を持っておらず、今までに朝鮮によって主張がなされたことがない」と記され、さらに占領中米空軍の爆撃演習場として使用されたこと(事実48年6月8日には、米軍機の誤爆により朝鮮人漁民14名が死亡し6名が負傷した)、および前述の「測候所およびレーダー局用地としての価値があ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ことも繰り返し述べられている。

⑤ 1950年1月D.アチソン(Acheson)が米國務長官に就任すると、ソ連・中国など共産圏諸国が参加する「全面講和」でなくても、米英などいわゆる自由主義諸国家による「多数ないし単独講和」を推進すべきと判断した。この路線を遂行するためアチソンは、4月に弁護士J.F.ダレス(Dulles)を顧問に任命した。彼は従来の条約草案約15案に目を通したうえ、同年6月には韓国および日本(21-28日)を視察し、とくに日本ではGHQ幹部のみならず、両院議長・諸省庁官僚・与野党・労組代表などとも会談した。その滞日中の25日に勃発した朝鮮戦争は、兵站基地としての日本をよりいっそう米国の同盟国として、自由陣営に留めておく必要性を痛感させたものと思われる。しかし、その後の諸草案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を日本領土に帰属させると明記した49年12月草案より変化し、領土帰属を日本から除外するか、まったく触れないものとなっていく。その後ダレスはソ連などを含む関係各国と精力的な協議をおこなったうえ、最終的には51年3月23日、最終の米国草案を確定した。これは遡る5草案同様、竹島/独島の日本帰属を「意図的に曖昧」にしたものであった。その要因として、流動的な朝鮮半島情勢を反映して、将来北朝鮮側が勝利する可能性を考慮して、おえて曖昧な表現が使われた可能性が高い(原喜美恵[2005])。

⑥ 1951年6月14日に改訂された米英共同草案は、1951年7月7日日本政府に内示され、また13日には梁祐燦駐米韓国大使にも示達された。これにたいし韓国政府は同月19日付で、「独島とパラン(波浪)島を朝鮮に帰属させるよう条約に明記する」旨の公文をアチソン米國務長官に手交した。その際ダレスは梁にたいし、「独島及びパラン島」の位置とかつて朝鮮領であ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質問した。これにたいし梁は、両島とも鬱陵島の近辺であり、また朝鮮領であると回答した。しかし、「パラン島」は濟州島のさらに南方にあるほとんど架空の島であった。このように韓国側の修正要求なるものは、確たる根拠に乏しいものであったが、その原因については、当時韓国政府が置かれていた時代状況、つまり50年8月には釜山に避難して「臨時首都」を置いていたこと、また梁大使は1923年からハワイで開業していた医師で、英語しかできず祖国の事情に疎かったことが指摘できる。したがって、51年8月10日付のD.ラスク(Rusk)國務次官補による米国側回答は膠もないもので、「独島…平素は無人島であるこの岩礁群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これまで韓国の一部として取り扱われたことが決してなく、1905年頃から日本の島根県隠岐支庁の管轄下にあり」と、韓国側修正要求を全面的に拒否した。ちなみに「ラスク書簡」の認識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のが、國務省地理担当官であったボグス(S.W.Boggs)の7月31日付報告書である。彼は米国内で「唯一存在する文献的証拠である日本外

務省パンフレット(1947年6月)の陳述に頼るようになった」とされる(鄭秉俊[2010])。この「ラスク書簡」は、米国の同盟国として朝鮮戦争を共に戦っていた韓国にたいする無慈悲ともいべき措置とでも評価されよう。またこの書簡を巡って、日本では「竹島=独島が日本領と確認された証拠である」(池内敏[2012])との見解にたいして、同書簡が「当事国を拘束する証拠と言えるか否かは、議論の余地がある」(竹内猛[2013])と疑問を呈する見解もある。さらに「竹島紛争」が激化していた53年11月30日には、駐日米大使館のターナー(W.T.Turner)参事官が国務省に宛てた覚書において、米国政府としては「ラスク書簡」の趣旨を堅持し、韓国側が納得しない場合は国際仲裁に委ねるよう勧告している(塚本孝[2007追補] Wikipedia 'William Tailor Turner' 2014年5月19日更新)。

⑦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1951年9月8日に調印された。議長はアチソン米国務長官が務め、日本側の主席全権は吉田首相であった。共産圏諸国からもソ連・ポーランド・チェコスロバキアの各国が参席したが、結局最終的には調印を見送った。また中国・台湾と南北朝鮮は招請されなかった。したがって、本条約の締結当事国は日本を含めて合計49カ国となった。その領土条項の全文は「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洲島・巨文島・鬱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請求権を放棄する」となっており、問題の竹島/独島の領土帰属については一切言及がない。したがって、その解釈を巡っては日本の国際法学者の多数は「日本が放棄した地域から竹島は除外されている」との通説的条文解釈を述べている。しかし、この条文自体を根拠にして朝鮮の中に竹島/独島が含まれているかどうかは、判断が困難と言わざるを得ない。条約締結過程における試行錯誤の経過を踏まえつつ、ほぼ全能の権威を發揮した米国主導の、したがって帝国主義的な魂胆から、どちらにでも解釈できる曖昧さをあえて残し、紛争の種を撒いたのでないかと思われる。さらに1948年8月に朝鮮半島南部の単独選挙より成立した韓国は、「竹島=独島の統治権を米国軍政庁から継承し行使していた」とする見解もある(竹内猛[2013])。あえてその法的根拠を問わなければ、事実関係は確かにその通りであり、当時の竹島/独島は事実上「無主地」となり鬱陵島の漁民らが大学して竹島=独島に渡り操業していたからこそ、米軍機の誤爆事件も起きたものと思われる。関連して重要な文書として「ダレス電文」がある。これは、1953年12月19日付の東京の駐米大使館からソウルの駐米大使館あてに発電された秘密文書である。その内容は近年の国際司法裁判所(IJC)の動向を勘案して米国は日本側に法律的に加担しないよとの趣旨を述べている(鄭秉俊[2010])。「ラスク書簡」を発簡したにも拘わらず、米国の帝国主義的で無責任な態度が透けて見える証拠として無視できない。

確かに多くの論者とくに国際法学者が言うように、条文の学面だけをとってみれば「竹島を日本がに對して放棄する島の中に含まれていない」のはその通りである。しかし、こうした決着をみるには、大変な紆余曲折があった。結論的に言えば、アメリカの戦略的意図、とくに朝鮮戦争最中の軍事的思惑がこの島の帰属を形式的には日本領とすると決定を下したが、「独島守備義勇隊」の派遣や海洋警察警備隊の常駐など、実態は韓国の実効支配を容認した。すなわち日本と同様に米国の目下の同盟

国であった韓国の李承晩大統領はただちに「李ラインという実力を行使して、警察官憲によるものといはいえ、事実上の軍事占領を今日に至るまで継続している。ちなみに、こうした韓国側の事実上の統治行為にたいして取った米国政府の対応として、1952年10月3日付で東京の駐日大使館から国務省に送信した秘密書簡(内藤正中・朴炳涉[2007]に収録)は極めて興味深い。これは当時竹島/独島を射爆場として利用していた米極東空軍が、同年9月15日に独島で操業していた船員と海女の存在を確認せずに爆弾を投下し(死傷者無し)、ついで同月22日には鬱陵島から独島に向かって第2次鬱陵島・独島学術調査団が独島付近の海上で爆撃に遭遇した(死傷者無し)という事件を契機に在釜山米海軍司令部にたいし注意喚起を促したものである。内容的に注目されるのは、①この射爆場が日米安全保障条約により日本政府の承認を得ていたこと。②にもかかわらず、「韓国漁夫は定期的に漁業目的でアングル岩へ行き」操業していたこと。③国務省は竹島/独島を「ある時期朝鮮王朝の一部であった」と認識していたことなどであり、にもかかわらず米国政府としては、誤爆事故などにより、この領土問題に不用意に巻き込まれないよう慎重な姿勢を堅持している。

⑧ 「日韓会談」は、平和条約調印から踵を接するかのように、早くも1951年10月20日から予備会談が開始されている。そのお膳立てをしたのは、GHQのシーボルト外交局長であり、言わば極東における米日韓「反共軍事同盟」を目指したものであった。52年1月18日に宣布された李承晩大統領の「海洋主権宣言」、いわゆる「李ライン」問題で、平和条約で棚上げされていた竹島/独島の領有問題が再燃する契機となり、出だしから躓く結果を招いた。李ライン宣言については、元来「マッカーサーラインという韓国漁夫にとっての<既得権益の確保>を主目的として発案された」ものに過ぎなかったが、「<日韓会談の交渉材料>ということも強く意識した複合的な目的・性格を持った宣言に変化・発展していった」ものという見解(竹内猛[2013])が妥当であろう。竹島/独島の領有権をめぐる日韓の応酬を一瞥すると、日本側はこれを「国際法上の問題」と捉えて会談の議題としたいと意向が強く、韓国側は「歴史問題」と捉えて議題から除こうとして、議論が噛み合っていない。1961年5月クーデタで成立した朴正熙軍事政権により、その「開発独裁」の資金獲得を主眼とした交渉が推進されることとなった。そして62年12月の「大平正芳・金鐘泌会談」において、「賠償金」名目ではなく「経済協力」として、有償2億ドル・無償3億ドルの資金供与という内容で大筋の妥結がなされた。しかし肝心の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については、土壇場に至るまで両国の合意は成立しなかった。そして島の「共有」や「爆破」論など、両国の交渉担当者個人による様々なアイデアが水面下で浮上したりするが、結局のところ「解決せざるをもって、解決したとみなす」という極めて曖昧模糊とした密約が締結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それは公式的には、65年6月22日に日韓基本条約とともに調印された「紛争処理のため交換公文」という形式を取るが、日本側はこれに竹島問題が含まれると解釈し、逆に韓国側は独島問題を対象外と解釈することで、暗黙の了解に達するという言わば玉虫色の決着であった。この過程を執拗に追及したのは、ロー・ダニエル[2008]であるが、密約文書は史料としては提示できず、関係者にたいするオーラル・ヒストリーという手法によって、辛うじて真相に迫り得たところである。

むすび - 竹島/独島領土問題の平和的な解決のために

以上のように、竹島/独島の領有権について、その歴史的起源を追究すれば、①日本の植民地支配、②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いう多国間協定、③その後の日韓諸条約ということになる。とくに③の日韓条約ではその解決を棚上げし、「密約」で当面を糊塗しようとした。ところが韓国では民主化が進み、1990年代に至っていわゆる「文民政権」(1993年2月に金泳三が大統領に就任)が誕生するに及んで、こうした「密約」は事実上廃棄され、接岸施設の建設(1995年12月～97年11月)、一般観光客の入島許可(2005年3月申告制、09年6月無制限)など実効支配が強化された。したがって問題解決の直近の手掛かりとしては、日本の植民地支配の精算を曖昧にし、請求権を「経済協力」の美名でごまかした日韓諸条約にこそある。韓国側の強硬姿勢はこうした曖昧な精算にたいする異議申し立てでもあると言える。2012年8月10日の李明博大統領の突然の独島上陸も、政権のレームダック状況の打開に領土主権のカードを切ったものと解釈できる。巷間日本側は「領土問題」と解し、方や韓国側は「歴史問題」と解しているとされる場合が多いが、本質は「歴史的に推移してきた領土問題」と言える。したがって、解決の大前提は植民地支配の全面的精算に繋がって来ざるをえないのであるから、1965年の日韓諸条約が看過してきた「慰安婦」「軍人軍属」「強制労働」など、いわゆる戦後補償問題を一括して解決(この点最近の韓国では、複数の憲法裁判所の判決において両国政府の責任を設定している)する必要がある。このテーブルは「紛争処理に関する交換公文」によって設定可能であり、これが機能すれば、国際司法裁判所(IJC)による調停などは無用の長物であろう。そして竹島/独島問題の「共同研究」については、かつて2回に渉る「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報告書は2005・10年公開)のように、密室での人選ではなく有識者から相応しい委員を公募し、かつ議題についても韓国側がかつてとった「独島問題は議題としない」という態度は取るべきではない。これまで縷々述べ来たように、今日の日韓両国における史料発掘やその検討の水準をもって成果を突き合わせれば、解決策は自ずから拓けてくる。私見を提示すれば、100%どちらかのものに帰属するという結論はあり得ないと思われる。例えば、「韓国側管理下の自然保護区」(芹田健太郎[1999])というのが既に事実上の現状となっており(1982年11月6日指定)、さらに近年の「韓国による竹島の『現状維持』と自然保護区への設定、日本漁民の漁業権の確保と漁業資源の保全措置などを条件に、日本が今後主権を主張しない」(豊下楯彦[2012])という解決策が最も摩擦が少なく現実的ではないだろうか。そうならば日本人も自由に入島できるようにして欲しいし、漁業の制限も現在のように一方的でなく公平にし、また環境破壊に繋がる諸施設のこれ以上の増設も取りやめて貰いたいものである。さらに観光遊覧船の運航も上陸ではなく、島の周囲を巡航するなどの自然への配慮が望ましい。

参考文献一覽

(近現代を対象とした戦後の刊行物・国際法と日記・回想・史料口を除く)

I。日本語 (50音順)

-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植田捷雄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日韓紛争」 『一橋論業』,第54 卷 1 号
- 海野福寿 (2000) 『韓国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 大江志乃夫 (2000) 『日露戦争の軍事史的研究』 岩波書店
- 太田修 (2003)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 大西俊輝 (2003) 『日本海と竹島—日韓領土問題』 東洋出版
- 岡本信男 (1965) 『近代漁業発達史』 水産社
- 小田滋 (1969) 『海の国際法(増訂版.. 上・下)』 有斐閣
- 梶村秀樹 (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人」 『朝鮮研究』 第182号(『梶村秀樹著作集』 第1巻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1992所収)
- 海上保安庁 (1971) 『日本水路史』 日本水路協会
- 外務省 (1966) 『小村外交史(明治百年史叢書)』 原書房
- 外務省 (1978-79) 『初期対日占領政策(上・下)』 毎日新聞社
- 鹿島守之助 (1970) 『近隣諸国及び領土問題(日本外交史3)』 鹿島研究所出版社
- 川上健三 (1966・96復刻)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川上健三 (1971)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 姜誠 (2013) 『竹島とナショナリズム』 コモンズ
- 木村幹 (2014) 「(書評)池内敏『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第72巻第4号
- 金学俊(Hosaka Yuji訳) (2007) 『独島/竹島・韓国の論理(増訂版)』 論創社
- 金炳烈(韓誠訳) (2006) 『明治38年竹島編入小史』 インター出版
- 国際法学会 (1952) 『平和条約の総合研究(上・下)』 有斐閣
- 小林高寿 (1965) 「竹島の帰属をめぐる(1-3)」 『歴史研究』 第13巻第10-13号
- 坂本悠一 (2014) 「書評 : 池内敏『竹島問題とは何か—近現代史領域』」 『朝鮮史研究会会報』 第197号
- 坂本悠一 (2014) 「竹島／独島領有権論争の研究史的検討と課題—戦後日本における近現代史分野を中心に」 『(立命館大学)社会システム研究』 第29号→叫号
- 下条正男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 文芸春秋
- 進藤栄一 (2002) 『分割された領土—もうひとつの戦後史』 岩波書店

- 慎鏞廈（韓誠訳）（1997）『史的究明独島(竹島)』インター出版
- 杉原隆（2010）『山陰地方の歴史が語る「竹島問題」』著者刊行
- 芹田健太郎（1999）『島の領域と経済水域の確定』有信堂高文社
- 芹田健太郎（2010）『日本の領土(中公新書)』中央公論社
- 宋炳基（朴炳涉訳）（2011）『鬱陵島・独島(竹島)歴史研究』新幹社
- 第3期竹島問題会（2014）『竹島問題100問100答』（『Will』3月増刊号）ワック
- 太寿堂鼎（1955）「国際法上の先占について」『（東都大学）法学論叢』第60巻第5号(1998所収)
- 太寿堂鼎（1966）「竹島紛争」『国際法外交雑誌』第64巻 第4・5号(1998所収)
- 太寿堂鼎（1998）『領土帰属の国際法』東信堂
- 高崎宗司（1996）『検証日韓会談(岩波新書)』岩波書店
- 高野雄一（1962）『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 竹内猛（2010）『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編)-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まで』著者(송휘영·김수희역(2013)“独島=竹島문제 ‘고유영토론’ 이역사적 검토” 선인)
- 竹内猛（2013）『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後編)-第二次世界大戦後の展開』著者
- ダニエル、ロー(Roh Daniel)（2008）『竹島密約』草思社
- 高崎 宗司（1996）『検証 日韓会談(岩波新書)』岩波書店
- 高野雄一（1962）『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 第3期竹島問題会（2014）『竹島問題100問100答』（『Will.3月増刊号』）ワック
- 崔基植（2011）「韓国会談における独島領有権問題—韓国と日本における実証的分析」李鍾元・木宮正史・浅野豊美編「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法政大学出版局
- 塚本孝（1983）「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と竹島」『(国立国会図書館調査立法考査局)レファレンス』第357号
- 塚本孝（1994）「平和条約と竹島(再論)」『(国立国会図書館調査立法考査局)レファレンス』第518号
- 塚本孝（2007）「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における竹島の取り扱い」『「竹島問題査研究会」最終報告書』
- 塚本孝（2011）「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3版)」『(国立国会図書館)調査と情報』第701号
- 塚本孝（2011）「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第14号
- 豊下楯彦（2012）『「尖閣問題」とは何か(岩波現代文庫)』岩波書店
- 内藤正中（2000）『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関係史』多賀出版
-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歴史資料から考える』新幹社

- 内藤正中・金炳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 中谷和弘他 (2011) 『国際法(第2版)(有斐閣アルマ)』 有斐閣
- 名嘉憲夫 (2013) 『領土問題から「国境画定問題」へ紛争解決論の視点から考える尖閣・竹島・北方四島』 明石書店
- 中野徹也 (2011) 「竹島の帰属に関する一考察」 『関西大学法学論集』 第60巻第5号
- 中野徹也 (2011)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第61巻第5号(『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2012所収)
- 河鍊洙 (1999) 「竹島紛争再考」 『竜谷法学』 第32巻第2号
- 朴裕河 (佐藤久訳) 『和解のために—教科書・慰安婦・靖国・独島』 平凡社
- 朴炳涉 (2010)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2)」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所)北東アジア文化総合研究』 第31,32号
- 朴炳涉 (2011)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1-)」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3-4号
- 朴炳涉 (2013) 「日露海戦と竹島=独島の軍事的価値」 『(鳥取短期大学)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36・37号
- 長谷川俊 (1967) 『山座円次郎』 時事通信社
-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ヨーロッパの国際政治から」 『世界』 第839号
- 原喜美恵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アジア太平洋地域の冷戦と「戦後未解決の諸問題」』 溪水社
- 玄大松 (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独島/竹島問題」の政治学』 ミネルヴァ書房
- 福原裕二 (2007) 「竹島の誤解を解く」 『(島根県立大学)レポート21』
- 福原裕二 (2007) 「『竹島』関連言説の検討—問題を問題として捉える側の省察という方法論の示唆」 『(島根県立大学)総合政策論叢』 第17号
- 福原裕二 (2009) 「『竹島』に見る韓国・韓国人イメージ-韓国を見る他者(日本)の視線の省察」 『アジア社会文化研究』 第10号
- 福原裕二 (2011) 「20世紀前半の鬱陵島各種統計(第1版)」 『(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 第21号
- 福原裕二 (2011) 「20世紀初期の鬱陵島社会」 『(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 第21号
- 福原裕二 (2012) 「竹島/独島研究における新視角'からみる北東アジアの一断面」 『(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 第22号
- 福原裕二 (2012) 「漁業問題と領土問題の交錯」 『(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研究』 第23号
- 福原裕二 (2013) 『たけしまに暮らした日本人たち—韓国鬱陵島の近代史(ブックレット)』 風響社

- 福原裕二 (2013) 「植民地朝鮮期の鬱陵島日本人社会」 『(島根県立大学)総合政策論叢』 第25号
- 藤井賢二 (2002) 「李承晩ライン宣布への過程に関する研究」 『朝鮮学報』 第185号
- 藤井賢二 (2004)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第1～第3会談における日韓の対立を中心に」 『朝鮮学報』 第193号
- 藤井賢二 (2004) 「公開された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を読む—李承晩ライン宣言を中心に」 『東洋史訪』 第12号
- 藤井賢二 (2006) 「日韓漁業紛争から見た竹島問題」 『코리아コロキウム講演記録』 東京大学韓国朝鮮文化研究室
- 藤井賢二 (2008) 「日本統治期の朝鮮漁業の評価をめぐって」 『東洋史訪』 第14号
- 藤井賢二 (2010) 「李承晩ラインと日韓会談—日韓漁業交渉の妥結」 『(九州大学)年報朝鮮学』 第13号
- 藤井賢二 (2011) 「韓国の海洋認識—李承晩ライン問題を中心に」 『(九州大学)韓国研究センター年報』 第11号
- 許淑娟 (2012) 『領域権原論—領域支配の実効性と正当性』 東京大学出版会
- 堀和生 (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集
- 毎日新聞社 (1952) 『対日平和条約』 同社
- 松隈清 (1962) 「国際法より見た李ライン問題と竹島の帰属」 『八幡大学論集』 第12巻第2号
- 松竹伸幸 (2011) 『これならわかる日本の領土紛争—国際法と現実政治から学ぶ』 大月書店
- 皆川洸 (1963) 「竹島紛争と国際判例」 『国際法学の諸問題—前原光雄教授還暦記念』 慶応通信
- 皆川洸 (1965) 「竹島紛争とその解決手続き—日韓条約の批判的検討」 『法律時報』 第37巻第10号
- 森田芳夫 (1961)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 第2巻第5号
-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省察」 『코리아評論』 第7巻第2号
- 横川新 (1990) 「竹島」 国際法事例研究会 『日本の国際法事例研究3』 慶応通信
- 吉岡吉典 (1962) 「『竹島問題』とは何か」 『朝鮮研究月報』 第11号(旗田巍編 [1965] 『日本と朝鮮(アジア・アフリカ講座Ⅲ)』 勁草書房 所収)
- 吉岡吉典 (1963) 「再び『竹島問題』とは何か」 『朝鮮研究月報』 第16号(同上)
- 吉沢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対立から対話へ(平凡社新書)』 平凡社
- 付記:網羅的な文献目録については「半月城通信」HPを参照
- II 한국어 (ㄱㄴㅇㄹ順・共著者・訳者と副題は省略)
- 동북아역사재단편 (2010) “독도/울릉도연구” 편사
- 나이토우 세이추 (内藤正中) (2011) “독도논리” 인문사
- 노 다니엘 (2011) “독도밀약” 한울

- 배진수 (2012) “독도이슈60년 간 한국의 영토주권” 동북아역사재단
- 배진수 편 (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박병섭 (2009) “한말 울릉도 독도 어업 독도 영유권의 관점에서(韓末期の鬱陵島·独島漁業 - 独島領有權の観点から) (韓日語)” 한국해양수산개발원(韓國海洋水産開発院)
- 이진명 (2005)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개정판)” 삼인
- 이성환 (2013) ‘독도에 대한 일본의 ‘무주지선점’론은 성립하는가-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동북아역사재단 독도선구소) 영토해양연구” Vol.6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 오오니시 토시테루(大西俊輝) (2010) “독도개관” 인문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 (2009)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경인문화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 (2010)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Ⅱ” 경인문화사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편 (201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Ⅲ” 경인문화사
- 정영미 (2012) “근대이행기의 한일경제와 인식에 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윤선 판 (2012) “독도의 진실” 어문학사
- 정병준(鄭秉俊) (2010) “독도1947” 돌베개
- 조희승/황명철 (2007) “독도이야기” 사회과학출판사(평양)
- 최장근 (2011) “일본의 독도영토 영유권 조작의 계보” 제이앤씨
- 홍성건 판 (2010) “독도! 울릉도에서는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 한일관계사연구회편 (2005) “독도와 대마도(증판)” 지성의샘
- 梁泰鎮 (1998) “独島研究文献輯” 京仁文化社

III English

- LI jin-mieung (2010) “Dokdo A Korean Island Rediscovered” Northeast Asian Foundation (서울)

史料(사료)

- 鬱陵島 『昭和八年島行政一斑』 1933年
- 鬱陵島 『昭和十三年島勢一斑』 1938年
- 「鬱陵島」 『大阪毎日新聞朝鮮版』 1937年1月5日~17日
- 速水保孝 『竹島漁業の変遷』 外務省アジア局第2課, 1953年8月
- 島根県・島根県教育委員会他 『竹島 - 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2012年2月
- 島根県総務部総務課 『島根県所蔵行政文書(1)』 2011年2月

「일본 영토 문제의 기원 - 竹島/獨島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한 철 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현재 동아시아에는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한·중·일 삼국 간의 영토 분쟁과 역사 전쟁, 중국과 대만의 갈등, 북한의 3대 권력 세습과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 고조와 통일 문제, 소수민족의 독립운동, 일본의 우익화와 재무장 등 불안정한 국제질서를 반영하는 현안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동아시아 각국은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데 고심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가장 첨예한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과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 영토분쟁의 역사적 기원, 특히 한일 양국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의 기원과 그 해법을 제시한 본 발표문은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논리와 내용은 토론자와 견해가 다른 것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본 발표문에 대한 몇 가지 견해 차이 혹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써 토론자의 역할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독도 등의 현안에 관해 일본측은 ‘영토’문제로 해석하는 반면 한국측은 ‘역사’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필자는 “역사적으로 추이되어 왔던 영토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양자의 이중성을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필자는 고유영토론에 입각한 전자보다는 무주지선점론에 근거한 후자쪽에 비중을 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우월한 군사력과 유리한 국제 정세를 이용하여 중국의 釣魚島(‘尖閣諸島’)와 한국의 독도를 편입하였다. 일본은 이들 섬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뒷받침해줄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주지선점이라는

국제법 논리를 내세워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고유의 영토’ 등이라는 “자의적 전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과연 ‘독도’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의 공도정책 시대에 1618~1696년간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 대한제국 칙령41호의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것 등의 전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심홍택보고서는 석도=독도라는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석도=독도임을 입증해줄 명확한 역사적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면 심홍택보고서는 중요한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본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1696년 「元祿竹島渡海禁令」, 1838년 「天保竹島渡海禁令」, 1877년 「太政官指令」 등 3차례에 걸쳐 그 영유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유영토론’을 애써 부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셋째, 1905년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혹은 조선통감에게 항의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단정 역시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 해석은 아닌가? 스티븐스가 한국의 외교고문으로 부임할 당시 일본의 외교고문직을 겸직한다는 이중계약을 맺은 사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독도 편입의 “주목적인 제국주의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적인 것이었지만, 당시 竹島/獨島는 사람이 살지 않은 ‘무주지’이며, 그 영토 편입을 지방적 고시로 공시했던 것은 당시 국제법상 이른바 ‘무주지선점’에 해당하고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논리—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논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자칫 인정하는 뜻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당시의 국제법은 약육강식이 판치는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들 간의 경쟁을 조절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자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승냥이의 법’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는 현재 일본정부가 釣魚島와 독도를 조약에 의거한 할양이나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단지 무주지선점에 입각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일본의 영토로 삼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넷째, 본 발표문은 明治維新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무주지선점’ 정책과 그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明治시대에 일본이 무주지선점에 얼마나 전력하고 있는가는 1898년 南鳥島를 일본령으로 편입한 뒤, 1902년 7월 이시이(石井菊次郎) 외무서기관의 「南鳥島出張復命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그는 심지어 열강이 이미 영유하거나 역사적 권원을 주장했던 섬들에 관해서도 문서상의 ‘空文’으로 간주한 채 무력을 통해 일본 영토로 편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험적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제국주의적 침략논리에 입각해서 일본은 국제법을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활용하여 독도를 편입했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일본은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東京에서 약 1,860km나 떨어져 있는 南鳥島를 선점했음에도 일본 本洲에서 약 2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독도를 1905년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로 인식·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일제강점기인 1940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시마네현에서 해군 舞鶴진수부의 소할로 이관한 조치 등을 근거로 “일본정부의 군사적 목적에 의한 이른바 미크로한 영토편입조치보다도, 식민지 지배라는 이른바 마크로한 통치행위가 조선인에 의한 영유인식을 강화시켰던 것”이라는 논리는 타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논리가 현재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견해에 어떠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다.

여섯째, 문헌상 객관성을 내세워 독도가 “100% 한일 양국의 어느 쪽에도 귀속한다는 결론은 있을 수 없다”는 필자의 생각은 자칫 ‘역사’를 배제한 채 일본제국주의의 합법을 가장한 ‘침략’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전제로 삼아 한국에 의한 독도의 현상유지 등과 일본어민의 어업권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일본이 앞으로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해결책이 과연 가장 마찰이 적고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가?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은 한국·중국·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입장과 논리는 각각 다르다. 이는 단순한 영토문제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의도나 원인—예컨대, 한국전쟁을 전후해 독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등—에 기인하는 것인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

몽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Ts. 체렝도르지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
1. 머리말
 2. 몽골 유목민의 영토와 국경에 대한 인식
 3. 몽골국 영토 형성의 역사적 배경
 4. 청 지배 하의 몽골 경계선 형성
 5. 현재 몽골국 영토 형성
 6. 몽골 역사교과서의 국경 및 영토에 대한 교육
 7. 맺음말
-

1. 머리말

영토란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 및 전쟁은 사실 영토를 넓히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들어 세계 여러 국가, 특히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가 제기되어 영토분쟁이 발생하면서 영토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란 세계 최대 강국들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현재로서는 이웃

나라들과 아무런 영토문제가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몽골 교과서에는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으며 다른 국가들 간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되도록 언급하는 것을 피해 온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토문제라기보다는 몽골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 영토교육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자 한다.

어느 국가나 힘이 있거나 운이 좋을 때는 영토를 넓히고 어떤 때는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현재 몽골국 영토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목숨과 피를 바쳐 왔다. 이런 귀한 영토를 앞으로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 후세대를 교육시켜야 한다. 따라서 영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영토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가 대대로 변해 왔기 때문에 역사 교육에도 각 시기 영토인식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영토교육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몽골국 영토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 교육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몽골 유목민의 영토와 국경에 대한 인식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은 광대한 땅에서 사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농경 정주민들이 볼 때 영토와 국경에 대한 인식이 약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은 예부터 영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웃나라들과 국경을 확정하고 지켜왔다. 국경 및 영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앙아시아 최초의 유목국가인 흉노의 목탁 선우의 ‘토지는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유목민들은 끈질기게 노력을 해왔다.

몽골 유목민은 정착민처럼 정해진 곳에서 주저앉지 않고 광대한 땅에서 이동을 하며 살기 때문에 영유지에 대한 인식도 정착민과 약간 다르다. 즉 유목민의 생활 활동범위가 정착민에 비하면 다소 넓고 그 영역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다. 걸음으로 볼 때 영유지에 대한 자세한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활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개념도 그에 따라 넓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지의 경계를 너무 개괄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유목민에게 국경이나 경계라는 개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경과 경계선은 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유목민들은 비록 국경이나 경계를 잘 인식하여 보호하지만, 산업 및 기본 생산수단으로 인하여 가축의 먹이를 따라 이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착민처럼 일정한 곳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몽골 유목민에게 국경이나 경계가 없어서 그들은 자신의 영토 경계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며, 비록 알더라도 그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이방 정주민들에게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¹⁾

전근대 시기에는 몽골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에 자연 국경이 존재해 왔다. 즉 초원지대라는 지형적인 환경자체가 유목민의 생활공간을 정해 주었다. 그 범위는 대략 만리장성부터 바이칼호까지, 대홍안령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의 이른바 몽골 고원이었다. 이 지역은 기후가 혹독하고 토양도 농사짓기에 부적절하다. 반대로 유목하며 사는 데 어디에도 없는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이다. 여기에는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농경민이 농사 지으며 살 수 있는 곳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유목민도 정착민이 사는 농경지대에 들어가서 유목할 수가 없고 적응하기도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자연 국경이 존재했으며 유목민과 정착민은 그것을 경계로 삼아 각자 자기 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가끔은 유목민들이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경계를 인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 이른바 만리장성이다. 어마어마한 이 장벽의 형성시기에 대한 다소의 논쟁은 있지만 흉노와 중원에 있는 왕조간의 국경을 최초로 정해주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기원전 198년 흉노와 한나라 간에 국경조약이 체결되었고 만리장성을 양국의 국경으로 삼았다. 그 이후 시기 유목국가들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경문제를 이렇게 정해 왔던 유목민들은 국내 영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충분하지 않다. 유목국가는 인구가 비교적 적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적어도 16세기까지는 영유지(목초지)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목초지를 갖고 서로 분쟁을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은 문헌사료에서 확인된 경우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16세기 이전에는 몽골 각 왕족들의 영지가 비교적 컸고 그러한 넓은 영지내의 목초지 문제를 해당 귀족이 알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문헌사료에 기록될 만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16세기부터 몽골은 여러 작은 영지에 나뉘게 되면서 목초지 및 영토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다. 영지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거나 지도를 만들어 그것을 표시하는 등 작업이 이뤄졌다. 이들 영지간의 경계는 훗날 몽골 국경을 형성한 기초가 되었다.

1) J.Gerelbadrakh, 몽골의 영토와 국경 역사, Ulaanbaatar, 2006, p.8

3. 몽골국 영토 형성의 역사적 배경

몽골 영토의 개괄적인 모습은 흉노시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앙아시아 유목민과 그 주변의 농경민 사이에 자연경계선이 있었고 그것을 보장해 준 인위적인 경계인 만리장성도 있었다. 현재 몽골국 영토 형성은 몽골제국 붕괴 이후 몽골 땅에서 벌어졌던 정치적인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1368년 몽골(元)의 카안(황제) 토곤테무르가 명나라 군대에게 밀려 몽골의 본토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몽골(元)이 수도인 대도(大都)를 잃은 1368년을 元의 멸망 연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해에 한족왕조인 명(明)이 건국되고 몽골(元)이 북쪽으로 밀려났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몽골국(元朝)이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368년 이후 약 20년간 ‘북쪽의 대몽골국과 남쪽의 명조 정권과는 화북(華北)을 사이에 둔 대치상태가 되었고 일종의 남북조(南北朝) 형태를 유지하였다.’²⁾ 이른바 북원(北元) 시대이다. 그러나 중원에 대한 잃어버린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20여 년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면서 몽골인들은 제국 이전시기와 같이 몽골고원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외부적으로는 한족이 주축이 된 명나라는 몽골인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이방(異邦)에서 통치자로 있었던 권력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영유지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본토에 살아온 전통적인 귀족층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중앙권력과 대칸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였다. 그러한 세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오이라드였다. 오이라드가 몽골 정통 대칸과 권력을 다툴 정도로 부상하면서 사실상 몽골은 크게 서몽골(즉 오이라드)과 동몽골로³⁾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오이라드는 원래 칭기스칸 시대 오이라드(Oyirad) 부족을 비롯한 oin irgen(森林民)에 기원을 두는데, 몽골 권력자들이 중원에 수도를 두고 있을 때 몽골본토에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고 14세기말부터 몽골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더욱 더 강력해졌다. 반면에 동몽골은 명나라의 반복된 침입과 내란으로 인하여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오이라드의 首長들은 이러한 우위를 이용하여 전몽골을 통치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의 정책은 어떤 때 성공을 거두어 모든 몽골인들을 일시적으로 통치하기도 하였다. 그 사례로 1440~50년대 권위를 떨쳐 명나라 영종 황제까지 포로로 잡았던 에센(Esen, 也先)을 들 수 있다.

2) 스키야마 마사아키 저,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역,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1999, 362쪽.

3) 明 때 중국 사료에서는 오이라드를 “瓦剌”(wala), (동)몽골을 “韃靼”(dadan)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자신들을 달단(타타르)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 분열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여, 만두하이(Mandukhai) 카툰과 바투몽케 다얀(Batumönkhe Dayan) 카안(1464-1517)에 의한 몽골의 통일이 이뤄졌다. 바투몽케 다얀 카안은 몽골의 통일을 부흥시켜 한동안 국력을 강화시켰지만, 자식들에게 영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사실상 또 다시 분열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얀 카안이 죽은 후 그의 장자인 투르볼드(Törbold)의 후손들은 몽골 대칸의 정통을 이어갔으나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장자보다 못지 않는 속민과 영유지를 나눠 줌으로써 그들은 점점 자기가 가졌던 세력을 키워서 중앙권력과 대칸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세력 중 하나가 할하(Qalq-a) 만호를 상속받은 바투몽케 다얀 카안의 딸자 게레센제(Geresenje)와 그 후손이었다.

16세기 말부터 할하가 강력해져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동몽골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어 결국 몽골 땅에는 세 개의 독립국이 존속하게 되었다. 즉 몽골은 크게 北몽골(이른바 할하몽골) 및 南몽골(내몽골), 그리고 西몽골(오이라드 부족연합)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오이라드 동쪽에 위치한 할하몽골이 강력해지면서 오이라드의 서쪽 진출을 더 가속화시켰다. 오이라드는 서·북·남으로 진출하였으며 1608년부터 그 한 구성원인 토르구드部는 서진하여 1620년대 말 불가강변에 정착하였다. 또한 호쇼트部는 남진하여 쿠케 노르(靑海)를 점령하고 티베트까지 지배하였다. 한편 고지(故地)에 남아 있던 오이라드 부족 중 초로스(Tsoros)부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17세기 말 18세기 중엽까지 오늘날 중국의 신강위구르자치구 전역을 지배하였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준가르 제국을 세웠다.

이처럼 몽골은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지만, 중국 명조의 침략을 잘 방어하여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한 보장을 지켜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진출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오면서 몽골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은 북쪽의 러시아와 동쪽의 만주 청나라였다. 몽골 북쪽에 인접한 러시아는 점차 강력해져서,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여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17세기 초 러시아인들은 서부 시베리아를 대부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알타이, 바이칼, 아무르, 동부 시베리아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진출로 몽골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몽골 동쪽에 거주했던 여진 계통의 만주인들은 16세기말부터 강력해지자 곧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에 남몽골인들은 고비의 남쪽에, 할하 몽골인들은 알타이와 향가이 산맥을 중심으로 고비의 북쪽에, 오이라드 몽골인들은 알타이 산맥 너머에 살면서 고비사막과 높은 산맥을 경계로 삼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교적 독립적으

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남몽골 4만호 및 호르친部는 대칸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중앙 정치에서 분리하려는 양상’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립덴(Ligden, 林丹) 카안은 통치력을 강화하고 전 몽골인을 통합하여 통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 단지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차하르(Chakhar) 만호만을 다스릴 수 있었을 뿐이다. 할하 몽골은 겉으로는 대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대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할하의 귀족들 내부에서도 립덴 카안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둘로 나뉘어 있었다.

이러한 몽골의 분열과 내부 상황을 이용하여 만주 후금국(1636년부터 청으로 개칭함)은 몇 차례에 걸쳐 몽골을 정복하였다. 1636년 남몽골(內몽골), 1691년 북몽골(지금의 몽골국), 1758년 서몽골(오이라드)가 각각 청나라에 복속하게 되면서 이른바 청 지배기가 시작되었다. 만주인들이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불과 20여 년 밖에 걸리지 않은 반면, 모든 몽골을 정복하는 데 무려 130여 년이란 긴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사실에서 당시 몽골의 강성함과 항쟁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청 지배하의 몽골 경계선 형성

만주 청조는 몽골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지배하려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다. 그 일환으로, 할하 몽골을 중심으로 오늘날 몽골국 영토에는 4개의 출간(chuulgan, 盟) 즉 아이막(ayimag)을 설치하였다. 후일 오이라드 준가르칸국을 멸망시킨 후에 1750년대 말 오이라드 유민들을 할하의 서부에 이주시켜 두르베드(Dörbed)의 2개의 출간 및 홉드(Hovd) 지방을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그 이전에 할하 및 오이라드의 왕공들에게 통치받았던 우리양하이族을 재편하여 탕누 우리양하이(Tangnu uriyankhai) 지방도 만들었다.

1) 북-서북쪽 국경선의 기원

할하몽골이 청나라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할하의 북쪽 국경선은 저절로 청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되어 버렸다. 이 국경선은 1727년 8월 20일 체결된 보오린(Buuryn) 조약에 의해 상세히 확정되었다. 보오린 조약으로 서쪽 샤비나이(Shabinai) 령에서 동쪽 아브가

이트(Avgait) 선까지 3천여 킬로미터의 국경선을 확정하여 87개의 초탐(哨探) 오보(ovoo=警戒標識)를 설치하였다.⁴⁾ 그리고 가호(家戶) 초병으로 하여금 국경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몽골의 서남쪽 국경선은 준가르 칸국이 청나라에 복속될 때까지는 청과 준가르 칸국 간의 국경선이었으나 1758년부터는 청나라 속의 행정구역 간의 경계선이 되었다. 다만 오이라트 유민들을 위주로 홉드(Hovd) 지방이란 행정구역을 세움으로써 이 지방 서-서북쪽 경계는 러시아와 국경선이 되었다. 아울러 이 국경선은 1864년 9월 25일 타르바가타이(오늘날 중국 신강의 추구차크, 한자식 명칭 塔城)에서 체결된 추구차크 조약에 의해 다시 확정되었는데, 이 조약으로 사비나이 령에서 서쪽 이르티쉬(Erчис)강 마니트가탈간(Maanit gatalgan)까지 몽골의 서쪽 및 서북쪽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한편 국경선을 현지에 확인하여 초탐(哨探) 오보를 설치하는 작업은 1869년부터 시작하여 두 단계를 거쳐 이뤄졌으며 총 27개의 초탐(哨探) 오보를 설치하였다. 1889년 국경선과 초탐(哨探) 오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경선을 다시 변경하여 몽골은 실헴(Siilhem) 산맥 부근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었다.⁵⁾ 이쪽 국경수비는 군사적인 조직인 슴 초병(sumun qarayul)으로 하여금 맡게 하였다.

2) 남-동남쪽 국경선의 기원

1691년 할하몽골이 청에 정복되면서 할하몽골과 남몽골 간의 국경은 더 이상 국경이 아니라 청나라 속의 두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되었다. 한편 서로 접경하는 할하몽골과 남몽골의 일부 호쇼(hoshuu, 旗)들은 목초지를 다투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그 중 제일 심한 문제는 동쪽 경계 즉 할하의 세첸한 아이막(部)과 바르가(Barga) 간의 영토문제였다. 바르가는 원래 세첸한 아이막에 소속되었다가 1733년부터 헤이룽장(黑龍江) 장군에게 귀속하게 되면서 해당 아이막과 바르가의 경계선을 정하여 16개의 초탐(哨探) 오보 및 같은 숫자의 초병(哨兵)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국경선까지의 일부 경계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820년대 초부터 바르가 측이 영토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 조정에서 대신(大臣)을 시켜 현지에 가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1848년에 할하와 바르가와와 경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바르가 측이 일으킨 문제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⁶⁾ 이것은 후일 1939년 할хин골 전

4) B.Tseden-Ish, 몽골국 국경 형성의 역사, Ulaanbaatar, 2011, p.118

5) Ibid. p.128

6) Ibid. p.20

투(일본 측은 노몬한 사건이라 함)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5. 현재 몽골국 영토 형성

19세기 중엽부터 만주 청나라는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멸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청나라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할하몽골은 중국 내지에서 중화민국이 선포되기도 전인 1911년 12월 29일 독립을 선포하여 집준담바 후투투(Jibzundamba khutugtu)를 국가원수로 하는 국가를 세웠다. 그러자 할하뿐 아니라, 청나라 지배 하에 있었던 남(내)몽골 49호쇼 중 35호쇼, 홀룬부이르 바르가, 신강과 청해성 몽골의 여러 호쇼, 탕누 우리양하이, 다리강가 등 거의 모든 몽골족이 독립을 부흥시킨 몽골국에 귀속되어 통일몽골국(Narmai Mongol Uls)을 건국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모든 몽골민족을 통합하여 통일몽골국을 세우려는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한 채 1915년 카흐타(Khiagta) 몽골-러시아-중국 삼국회담에 의하여 이른바 할하(외)몽골만 중국의 종주권하의 자치국이 되고 나머지는 중국에 귀속하게 되었다. 이 회담으로 인하여 그때까지 할하몽골이 점유했던 일부 영토를 상실하였다. 예를 들면, 1907년 홉드 지방에서 분리된 알타이 변경 지방(Altain hyazgaar)을 상실했고, 탕누우리양하이 즉 투바는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었다.

1921년 몽골에서 인민혁명이 승리하면서 몽골이 독립을 얻었으나 한동안 소련을 제외한 세계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몽골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독립을 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기대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청나라 통치기 때 할하 몽골에 귀속되었던 영토를 온전하게 지키려는 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1) 러시아와의 국경선 형성 과정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맺었던 1727년 국경조약과 1864년 국경조약을 토대로 몽골의 북쪽 국경선이 형성되었다. 국경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북쪽 국경이었다.

할하몽골에 귀속되었던 탕누 우리양하이 지방 즉 오늘날 러시아 연방 투바자치공화국

은 1921년 독립을 선언하여 독립국가로 존재하다가 1944년 소련에 합병되었다. 투바인들은 청 지배기 때 할하와 함께 청 지배를 받았고 폭설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일부 투바인들은 몽골 땅에 들어와서 몽골인들과 큰 문제없이 사이좋게 살았다. 그러나 투바가 독립이 되면서 국경선 및 백성 관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1930년부터 4차례에 걸친 국경 협정을 시도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여 지체되고 있었다.

결국 1957년 12월부터 국경 회담이 시작되어 1958년 3월 국경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결과 논쟁 중이었던 5,800여 평방 km의 영토문제를 해결하였다. 청 지배기 때의 양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1,247평방 km의 영토를 투바에게 넘겨주고 몽골은 불과 84평방 km의 영토를 할양받았다. 또한 원래 투바인들이 거주하다가 몽골에게 넘겨왔지만 1775년, 1824년 투바인들이 다시 와서 거주했던 4,560평방 km의 영토를 투바 측에 할양하였다.⁷⁾ 그러나 이 조약은 몽골과 소련간의 국경선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고 다만 제일 문제가 되었던 부분만 합의하여 해결한 것이다.

따라서 1976년 몽골과 소련 간에 국경 조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77년부터 1979년까지 현지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작업(demarc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45곳의 695.65평방 km의 영토를 몽골 측이 할양받고, 총 109곳의 120.6평방 km의 영토를 소련에게 넘겨줌으로써⁸⁾ 몽골과 소련간의 국경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2) 중국과의 국경선 형성 과정

중국과의 국경선은 1962년 조약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 이전에 1939년 몽골 동쪽 국경선 분쟁이 일어나 몽골과 만주국 간 이른바 ‘할힌 골 전투’가 벌어졌으며 이 전투가 끝난 후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 국경선을 확인하여 1940년에 협약을 맺은 바 있었다.⁹⁾

1945년 미국과 영국이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국경은 현재의 상태로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같은 해 중화민국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나아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면서 양국 사이에 국교를 맺었고 1962년 베이징에서 국경 조약을 맺었다. 그 결과 1950년부터 서로 논쟁 중이었던 총 30곳의 12,314평방 km의 영토는 그대로 몽골 측에 남았고, 5,007평방 km의 영토를 중국에게 넘겨줌으로써¹⁰⁾ 몽골과 중국 간의 국경선 문제가 해결되었다.

7) Ibid. p.132

8) Ibid. p.163

9) Ibid. p.73

이리하여 몽골은 이웃 국가들과 국경선을 완전히 확정하였으며 현재 몽골은 그들과 영토 문제 없이 선린우호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6. 몽골 역사교과서의 국경 및 영토에 대한 교육

이제 몽골국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가지 역사교과서만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3가지(계열) 몽골사 교과서를 사용하였으며 학교와 교사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 체제는 교과서를 찍기 위한 출판사간의 경쟁과 불충분한 조직력 등으로 인하여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였다. 한 가지 교과서만 사용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역사교육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 언급한 新-舊교과서 총 4가지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몽골은 이웃나라들과 국경 및 영토문제가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몽골은 다른 국가끼리 발생하는 영토문제 서술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교과서 및 역사 교육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서술을 안 하더라도 역사와 관련하여 역대 몽골국 역사적 영토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교육시키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되었던 3계열의 교과서는 강툴가(Ts. Gantulga), 알탄체첵(T. Altantsetseg) 등이 집필한 교과서(A계열¹¹⁾ 교과서로 약칭하겠다)와 발지냘(B. Baljinnyam) 등이 집필한 교과서¹²⁾(B계열 교과서로 약칭함), 바상자브(Z. Baasanjav) 등이 집필한 교과서¹³⁾(C계열 교과서로 약칭함) 등이다. 이 세 가지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모든 교과서에 영토에 대한 단원이 있다.

먼저 A계열 교과서를 보면 고대국가들은 ‘인구와 영토’라는 단원이 있으며 역대 국가

10) B.Tseden-Ish, 몽골국 국경 형성의 역사, Ulaanbaatar, 2011, p.90

11) 각 계열 교과서는 몇 권으로 나뉘는 동시에 집필자들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8학년 교과서(Ts.Gantulga, T.Altantsetseg, T.Jambaldorj, J.Zaanhuu, S.Sodnom, S.Tsolmon 지음, 몽골의 역사, Admon 출판사, 2005)는 A(1), 9학년 교과서(Ts.Gantulga, T.Altantsetseg, Ch.Boldbaatar, T.Jambaldorj, J.Zaanhuu, S.Enhjin 지음, 몽골의 역사, Admon 출판사, 2006)는 A(2)로 각각 부르기로 하였다.

12) 8학년 교과서(B.Baljinnyam S.Damba, Sh,Battsengel 지음, 몽골의 역사, Ungut hevlei 출판사, 2005)는 B(1), 9학년 교과서(B.Baljinnyam Ts.Delgersaihan, Sh,Battsengel 지음, 몽골의 역사, Uralh erdem 출판사, 2006)는 B(2)로 각각 부르기로 하였다.

13) Z.Baasanjav, J.Boldbaatar, Z.Lonjid, R.Tsegmed 지음, 몽골의 역사, Soyombo printing, 2006.

영토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동시에 지도를 넣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흉노[의 영토]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 요하 상류에서 일리(ili)·타르바가타이(Tarvagatai)까지 땅. /A(1), p.42/

선비[의 영토]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 한반도 부근에서 일리·타르바가타이까지의 땅. /A(1), p.42/

유연[의 영토]

고비 사막에서 바이칼 호, 한반도 부근에서 하르 사이르(Khar sair)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 /A(1), p.42/

돌궐[의 영토]

동(東)투르크 제국은 만리장성부터 바이칼 호까지, 흥안령 산맥에서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 영토. /A(1), p.47/

위구르[의 영토]

영토는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까지, 흥안령 산맥에서 텡게르 울[天山山脈]까지 달하였다. /A(1), p.47/

키르기즈[의 영토]

오논, 헤를렌 분지, 옹기 강 하류에서 일리·타르바가타이, 바이탁 복드(Baitag bogd)까지 달하였다. /A(1), p.47/

거란[의 영토]

태평양 연안에서 알타이 산맥, 만리장성에서 헤를렌 강 북부 분지까지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였다. /A(1), p.47/

또한 흥미를 끄는 것은 흉노를 비롯한 몽골 고대국가들은 영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건국 초부터 한나라 등 정주민과의 국경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특히 영토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흉노 목탁 선우의 “땅은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원칙과 기원전 198년 흉노와 한(漢) 왕조 사이에 체결된 조약(한 왕조는 흉노를 대등한 강국으로 인정하고 양국의 국경을 만리장성으로 삼았음)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 및 근-현대사 서술에는 ‘인구와 영토’라는 단원은 없어졌고, 다만 관련 글 군데군데 영토에 대한 언급만 보인다. 그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 영토는 몽골 민족이 발생하고 성립된 요람이다. /A(1) p.66/

1206년 (중략) 북으로 바이칼 호에서 남으로 만리장성까지, 동으로 흥안령 산맥에서 서로는 알타이 산맥 너머까지의 광대한 영토를 가진 대몽골국이 성립되었다 /A(1) p.86/

13세기에 몽골인들은 유라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태평양 연안에서 동유럽까지, 시베리아에서 페르시아 만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여 통치하였다. / A (1) p. 107/

다만 몽골제국 이후의 영토 범위를 고대와 중세국가의 그것처럼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았다. 다만 근-현대사 부분에는 1915년 삼국 회담 때의 몽골 영토 확정 과정/A(2) p.33/, 1930년대 말 국경분쟁(이른바 할링골 전투 등) /A(2) pp.103~105/, 1940년대 말에 벌어진 서쪽 국경 분쟁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A(2) p.110/

B 계열의 교과서는 각 장 초에 ‘역사적 영토’라 하여 해당 시기 영토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고대국가 영토는 하나로 묶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만리장성에서 바이칼 호, 카라운 지둔 즉 흥안령에서 일리(III)-타르바가타이 (Tarvagatai)까지의 땅은 대부분의 [몽골] 고대국가의 역사적 영토이다.
- 중국 만리장성은 몽골과 중국의 경계이다. (기원전 198년 이후부터)
- 쿠케 노르(靑海), 차이담 분지, 오이라드몽골의 영토는 오늘날 몽골땅에서 도망자들이 이동하여 피난한 곳이다. /B(1), p.47/

그리고 대몽골국 및 몽골제국 영토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북으로는 바이칼 호, 시베리아, 동으로는 흥안령, 남으로는 인도 차이나반도, 자바, 수마트라, 필리핀 열도, 서로는 동유럽, 지중해, 아랍반도까지, 총 20,000,000 평방 킬로미터이다. /B(1), p.99/

이 교과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몽골국 영토 뿐만 아니라 내몽골, 부리아드 등 몽골민족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영토 서술을 한 점이다. 예를 들면 1915년 몽골-러시아-중국 삼국 회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몽골과 중국 (한족) 두 민족은 만주 청나라 지배를 함께 받았던 것이지, 몽골은 결코 중국 통치를 받은 적은 없다. 1915년 비참한 회담 이후 일부 몽골인들은 중국에게 속하게 되었다. /B(2), p.3/

더 나아가서 ‘몽골민족 영토(2005)’라는 지도를 넣으면서 ‘[큰] 뱀을 셋으로 자르면 (그 남는 것은) 도마뱀 같지만, 몽골은 셋으로 나뉘도 (남는 것은) 제국 같다(Могойг г урав хуваавч гүрвэлийн дайтай, Монголыг гурав хуваавч гүрний дайтай)’는 속어도 달아 주었다. 아울러 ‘몽골인들은 전 영토의 64.3%를 중국과 러시아에게 상실했다 (빼앗겼다)’ /B (2), p. 42/는 서술까지 하였다.

C 계열의 교과서는 영토 부분에 있어서는 각 장 끝에 해당 시기 영토에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다만 근현대사 부분에는 1962년 몽골-중국 국경 조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조약의 의의에 대하여 논하라’고 한 것이 특징이다 /C (2) p. 119/. 이것은 몽골에게 있어서는 영토의 완전한 보장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집필자 대부분은 A 계열의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는 예전의 교과서에 있었던 ‘인구와 영토’라는 단원이 없어져 해당 시기 역사적 영토에 대한 내용은 다소 소홀해진 것 같다. 이 점만 제외하면 서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맺음말

최근 세계 여러 국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토문제가 제기되어 영토분쟁도 발생하면서 국경 및 영토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몽골국도 동아시아의 구성원 중의 하나로서 영토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까지 이뤄져 온 영토교육 상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몽골은 1990년부터 사회체제 전환기를 맞이함으로써 교육체제도 바뀌었고 이에 따라 교과서도 여러 번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 역사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많은 예시문과 삽화, 그리고 지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영토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10년간 사용되어 온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경 및 영토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몽골국 현재 영토는 유목국가의 영토였다는 특징을 강조하고 복잡한 역사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점을 특히 외국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목민들의 영토 인식과 몽골제국 이후 영토 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룰 수 밖에 없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사용되었던 3가지(계열) 몽골사 舊교과서와 이제 사용되고 있는 통일된 新교과서 사이에 국경 및 영토 관련 내용과 분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 3가지 舊교과서들 모두가 국경 및 영토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교과서의 공통점은 역사상 몽골의 영토 확장과 수복, 국경분쟁 등과 같은 내용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다룸으로써, 자국 영토에 대한 자각과 국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노력하는 점이다. 특히 전근대시기 국경 및 영토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술의 분량과 상세함, 그리고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서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B계열의 교과서는 비교적 직설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 이유는 교과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집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학교와 교사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감안해야 할 점은 집필자의 전공 수준으로 다른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대학교 교수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인가 하면 이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개인연구자나 중학교 교사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술방식이나 언급은 지난 역사를 가지고 이웃국가들과 영토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와 국토의 소중함만 일깨워 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통일된 新교과서는 이전과 비교하면 국경 및 영토 서술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 교과서의 집필자 대부분은 이전의 A계열 교과서의 집필자이며 그동안 역사 수업의 시수가 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인구와 영토’라는 단원이 없어진 것이 주목을 끈다.

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세계적인 경향에 따라 앞으로는 교과서의 국경 및 영토 내용이 좀 더 확대되고 상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몽골 유목민의 전통적인 국토관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르게 자세한 정보와 지식을 후세대에게 심어주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몽골어

- J.Gerelbadrakh, 『몽골의 영토와 국경 역사』, Ulaanbaatar, 2006.
B.Tseden-Ish, 『몽골국 국경 형성의 역사』, Ulaanbaatar, 2011.
몽골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편, 『몽골국의 역사』 권 1-5, Ulaanbaatar, 2003.

한국어

- 고봉준, 이명찬, 하도형, 김인성, 남상구 등저,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3,
스기야마 마사아키 저,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역,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1999.
와다 하루키 지음, 임경택 옮김,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립에서 대화로』, 사계절, 2013.

교과서

- Ts.Gantulga, T.Altantsetseg, T.Jambaldorj, J.Zaanhuu, S.Sodnom, S.Tsolmon 지음, 몽골의 역사, Admon 출판사, 2005
Ts.Gantulga, T.Altantsetseg, Ch.Boldbaatar, T.Jambaldorj, J.Zaanhuu, S.Enhjin 지음, 몽골의 역사, Admon 출판사, 2006 (한국어 번역본: 강틀가 외 지음, 김장구, 이평래 옮김,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B.Baljinnyam S.Damba, Sh,Battsengel 지음, 몽골의 역사, Ungut hevlel 출판사, 2005
B.Baljinnyam Ts.Delgersaihan, Sh,Battsengel 지음, 몽골의 역사, Urlah erdem 출판사, 2006
Z.Baasanjav, J.Boldbaatar, Z.Lonjid, R.Tsegmed 지음, 몽골의 역사, Soyombo printing, 2006

논문

- 김민정, 이자원,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應用地理』 제30호, 2013.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제14권 1호, 2013.
김정인,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독도 교육을 어

- 똥게 할 것인가』, 2010년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국내학술대회 발표문집, 2010.7.
- 허은실, 남상준, 「일본 초등 사회과의 영토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분석을 기초로」, 『영토해양연구』 Vol.5, 2013.
-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8호, 2010.6.
- 윤옥경, 「영토교육관련 학교교육의 내용 및 영토교육 사례분석」, 대한지리학회 2007년 전국지리학회 발표자료집, 2007.
- 이석우,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진단」, 『기독교사상』 통권646호, 2012.10.

「몽골 역사교과서의 영토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장 구

(동국대 문화학술원 유라시아 실크로드 연구소)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몽골학자의 귀중한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겨주신 주최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표자는 개인적으로 1995년 이후 20년 동안 교류해 온 훌륭한 동료이자 역사학자입니다. 또한 이 국제학술회의의 내용, 즉 ‘동아시아의 영토(국경)문제와 역사교육’은 근대 주권국가 형성과 유지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자께서 현재 몽골은 ‘동아시아에서 영토문제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웃나라들과의 갈등이나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근대 몽골 유목민들의 영토(목초지)에 대한 인식, 흥노 이후 고대 유목국가의 역사 계승 문제 등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우문(愚問)에 현답(賢答)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동부 중앙유라시아에서 최초의 유목제국을 건립한 ‘흥노’에 대해 몽골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요? 즉, 직접 조상인지, 아니면 이후 몽골계의 일부를 이루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근대 사법적 의미에서 성립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만약 흥노가 현대 몽골인의 조상 중 중요한 구성원이라면 기원전 198년 흥노와 한(漢) 왕조 사이에 맺은 ‘국경조약’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둘째, 우리들은 역사교과서에서 1368년 몽골(元)이 멸망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그 이후로도 20여 년간 더 존속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료나 문물 등의 증거자료가 있는지요?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몽골제국 시기 고려’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기존에 우리는 ‘만주(淸)=중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 7쪽 아래에 인용문에 있듯이, 몽골인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날 몽골인들은 몽골국 이외에 중국(네이멍구, 신장위구르, 칭하이 성 등)과 러시아(부리야트, 칼무크 등)에도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몽골국 몽골인들의 인식과 관계는 어떤 상황인지요?

다섯째, 앞서 언급했듯이 몽골국은 이웃나라들과 ‘공식적인’ 국경문제나 대립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는 ‘비공식적’인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불법적인 국경무역, 불법 월경, 심지어 이웃 국가 유목민들의 불법 유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상은 어떠한지요?

마지막으로, 발표 전에 적절한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토문제와 역사교육

Territorial Disputes and History

■ 한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Territorial Issues in Korean History Education”

강승호 (한성대)

Kang, Seung-Ho (Hansung Univ.)

□ 토론 : 황인규 (동국대)

Discussion Hwang, In-Gyu (Dongguk Univ.)

■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Territorial Issues in Chinese History Education”

임상선 (동북아역사재단)

Lim, Sang-Se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토론 :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Discussion Park, Jang-Bae (NAHF)

■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Territorial Issues in Japanese History Education”

조성운 (경기대)

Cho, Seong-Woon (Kyonggi Univ.)

□ 토론 : 김인호 (동의대)

Discussion Kim, In-Ho (Dong-Eui Univ.)

■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

“The Oder-Neisse line issue and German history textbooks”

박재영 (중앙대)

Park, Jae-Young (Chung-Ang Univ.)

□ 토론 : 최선아 (서원대)

Discussion Choi, Sun-Ah (Seowon Univ.)

한국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

강 승 호
(한성대)

-
1. 서론
 2. 교육과정에 규정된 영토 관련 내용
 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
 4. 결론
-

1. 서론

영토교육은 영토에 대한 지식이나 영토와 관련된 사고·태도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국가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물론 유럽연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국경이 없어지고 국가의 개념도 무너져 영토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가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한 영토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의 하나로 중시될 수밖에 없고,¹⁾ 영토교육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영토교육은 역사를 비롯해 일반사회·지리 등 사회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역사에서는 영토의 변천과정을 주로 다루고 일반사회에서는 국내외의 법적 정당성을, 지리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인간 및 국가라는 존재의 존립방식에 대

1) 박선미,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8-1, 2010, 24쪽.

해 가르친다.²⁾ 그러나 기존의 영토교육은 지리 과목을 중심으로 국토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학습하는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³⁾ 하지만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와 일본해의 지명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영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토 관련 주제들이 사회과 교육과정에 폭넓게 반영되면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영토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지리교육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를 다룬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독도와 관련된 연구에 치우쳐 있다.⁴⁾ 영토의 변천과정이 역사교육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영토의 변천과정을 다루는 것이 역사교육이 담당해야 할 영토교육의 본질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한국사 전반에 걸친 영토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교육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교육과정에서 영토 관련 내용을 살펴, 한국 역사교육에서 영토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내용을 분석해 역사교육에서 영토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역사교육에서 영토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교육과정에 규정된 영토 관련 내용

한국사 교육은 해방 직후 미 군정기부터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2) 서태열,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7-3, 2009, 201쪽.

3) 서태열, 앞의 글, 198쪽.

4) 역사교육에서의 영토교육 문제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 성과가 있다.

신주백,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2, 2006. ; 김주택,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5, 2007. ;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 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8, 2010. ; 김정인,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독도연구』 8, 2010. ; 심정보,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교육」, 『독도 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김영수,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2012. ; 한철호, 「한국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2012. ;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 2013. ; 송호열, 「한국 영토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영토교육 비교와 우리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2014.

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이 임시로 발행한 교재나 민간에서 발행된 역사서가 교과서로 활용되었다.⁵⁾ 1948년에는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집”이 발간되고 여러 교과서들이 발행되었는데,⁶⁾ 역시 준비 부족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주제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쳤다.⁷⁾ 결국 해방 직후부터 교수요목기까지 한국사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고, 영토교육은 물론 체계적인 한국사 교육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교육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문교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1954년에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었다.⁸⁾ 제1차 교육과정은 교과 목표, 간략한 대단원 소개, 그리고 중단원명 정도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영토 관련 내용을 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교육과정 서술방식은 1988년에 제정된 제5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 시기에 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영토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일부 교육과정 해설서에 매우 단편적이지만 영토 관련 제안이 담겨 있을 뿐이다.

역성혁명에 의하여 성립된 이씨 조선 왕조는 어떻게 하여 정치,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는가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국토의 완성, 정치 기구 및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을 알게 한다. ...⁹⁾

... 이 단원에서는 이상과 같은 학습 주제를 다루어, 학생들로 하여금 고대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와 만주 대륙,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광활한 무대를 배경으로 전개되었고, 영토 확장 및 해외 무역, 문화 전파의 각 분야에서 진취적인 기상을 펼쳤음을 인식하여, 넓은 시야에서 우리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¹⁰⁾

... 다음으로 조선초기의 사대교린 외교의 자주성과 북방 개척을 조선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시켜 이해한다. ...¹¹⁾

5)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27쪽.

6) 교수요목기에는 중학교 3학년에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2학년에 “우리나라 문화사”라는 과목이 배정되었고,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었다(박진동, 앞의 글, 28~29쪽).

7) 고등학교 “우리나라 문화사”의 단원명은 1. 고대의 문화, 2. 삼국의 문화, 3. 신라 및 발해의 문화, 4. 고려조의 문화, 5. 근세조선의 문화, 6. 최근세의 문화, 7. 민족성, 8. 조선 문화와 세계문화이다(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과연구』 12권 2호, 2005, 222~223쪽).

8) 1954년에는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되었고, 이후 후속 작업을 거쳐 1955년에는 문교부령 제46호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공포되었다.

9)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문교부령 제121호), 1963.

10)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제시한 내용은 제2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영토 관련 내용이다. 제2차 교육과정의 해설서에서는 조선 세종 때 4군 6진 개척으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이 확정된 것을 염두에 두고 ‘국토의 완성’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교과서 집필시 4군 6진의 개척 사실을 국토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다. 이 내용은 제5차 교육과정 해설서에 ‘북방개척’이란 표현으로 재등장한다. 아울러 제5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영토 문제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 고대사의 무대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주와 일본열도까지 확대해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토 관련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근세의 정치영역에서 ‘북방개척’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¹²⁾ 이 ‘북방개척’은 이미 제5차 교육과정 해설서에 등장했던 표현으로, 제6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교육과정의 서술구조가 이전 교육과정과 달라진 결과로 보인다. 제6차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는데,¹³⁾ 이러한 형식 변화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언급되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과정에 직접 진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6차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에 담겨 있는 영토 관련 내용도 매우 부분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내용도 매우 소략하다. 이는 교수요목기 이후 제정된 역대 교육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교수요목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영토 문제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겠다.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에 영토 관련 내용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영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체계적인 영토교육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육과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영토 관련 내용이 부분적으로 담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영토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사 교육을 전근대사 중심의 “국사”와 근·현대사 중심의 “한국 근·현대사” 과목으로 이원화하였는데,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교육과정 중 영토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⁴⁾

11) 위와 같음.

1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 1』(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13)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국가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항목이 증가하고 서술구조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최상훈, 앞의 글, 217쪽).

14)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근대 사회로의 이행기, 즉 조선 후기 이전까지로 다루는 시대범위가 축소되었고, 고종 이후의 시기는 그 내용이 대폭 보강되어 “한국 근·현대사”에서 다루도록 하였다(강승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사’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역사와 교육』 12, 역사

<국사>

-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중심지는 초기에는 요령 지방이었으나 후기에는 대동강 유역이었음을 이해한다.
- 삼국이 왕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부족장 세력이 중앙의 귀족, 관료로 흡수되어 갔음을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초기에는 능동적인 외교 정책을 펴서 거란, 여진 등 북방 민족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영토의 확장을 꾀하였음을 이해한다.
-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과정을 알고, 그 비문 내용 중에서 후대에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탐구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과 간도 협약의 내용을 파악하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기들 영토에 편입시켰음을 설명할 수 있다.¹⁵⁾

제7차 교육과정은 그 내용이 제6차 교육과정보다 더욱 상세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담긴 영토 관련 내용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는 근대 사회 이행기의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영역에서 ‘백두산정계비와 조선통신사’를 다루도록 규정하였고, 영역별 내용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 문제, 삼국과 고려의 영토 확장 부분을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조선과 근대 시기에는 현재까지 영토 문제의 주된 관심 대상인 간도와 독도 문제를 다룰 것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간도와 독도 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 교과서의 기술 방향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¹⁶⁾

제7차 교육과정에서 영토 관련 내용이 대폭 증가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과 강역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각종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고구려 귀속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¹⁷⁾ 1996년에는 일

와교육학회, 2011, 9쪽).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영토 관련 내용은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1)』(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6) 이에 대해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에서 간도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면서 독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은 독도교육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심정보,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 교육」, 165쪽). 하지만 이런 비판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교육과정을 분리해 파악한 결과이다. 이것은 2005년 “국사”의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어 내용체계 안에 ‘근현대 사회의 발전’ 부분이 포함되면서 교육과정에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과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의 불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5.

본에서 1989년에 개정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1994년부터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중학교 지리부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정부에 알려졌다.¹⁸⁾ 이러한 주변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논리로 1997년에 개정·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 간도와 독도 등 영토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 것이다. 즉 제7차 교육과정부터 영토 문제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은 2002년부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동북공정사업을 본격화하였고,¹⁹⁾ 일본은 2003년부터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필수과목인 “국사”에 근현대사 부분이 제외되었다는 점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²¹⁾ 2005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 개정은 “국사”에 한정되었는데, 전근대사로 이루어진 “국사” 과목의 내용체계 안에 ‘근현대 사회의 발전’ 부분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간도 귀속 문제의 쟁점과 일본에 의한 독도 편입의 불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영토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에 추가되었다.²²⁾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영토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후 개정된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중 하나로 ‘우리 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적·사회적 요구가 지적되었고,²³⁾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더욱 보강되었다.

17) 서길수,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고구려연구』 29, 2007.

18)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8, 2010, 61쪽.

19) 서길수, 앞의 글.

20) 일본 역사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처음 명기한 교과서는 明星社の 『最新日本史』 이다(신주백, 앞의 글, 61쪽).

21)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2002, 9~10쪽.

22)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5.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5쪽.

[표1] 2009 교육과정 해설서의 영토 관련 내용²⁴⁾

단원명	내 용
(5)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p>⑤ 국권 피탈 과정과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 수호 운동의 흐름을 파악한다. 특히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및 간도 협약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인식한다.</p> <p>… 러·일 전쟁 중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편입 기도는 제국주의 침략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설과 고유 영토설을 비판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영토임을 명백히 이해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과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내용을 파악하고 간도 협약의 문제점을 인식한다.</p>
(9)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제 정세의 변화	<p>⑤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한다.</p> <p>국경 개념이 비교적 분명한 현대 국가에서도 영토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중국의 고구려사 등 고대사 침탈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이며,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에 대해서는 영유권 문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역사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부당하게 제기하는 주장의 문제점을 반박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의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들 문제에 대한 역사적 탐구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진다.</p>

2009 교육과정의 특징은 고등학교에서 공통 필수 과목을 없애 모든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계열성 확보를 위해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가 2개 단원, 근현대사가 7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전근대 시기의 영토 관련 내용은 자취를 감추었고, 그 대신 근현대 시기에서 2개 단원에 걸쳐 독도와 간도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하였다.

2009 교육과정의 영토 관련 내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독도 문제와 간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간도

24) 2007 교육과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교과서 개발 중에 2009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을 2010년 5월에 부분 개정하여 “중학교 역사(하)”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해당하는 영역을 다시 수정 고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제2010-24호, 2010.5.12.). 이 표는 2010년 부분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문제가 독도 문제보다 먼저 언급되었고, 그 내용도 훨씬 많았다. 그런데 2009 교육과정에서는 그 위치가 바뀌어 독도를 간도보다 먼저 다루고 관련 내용도 독도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간도 문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²⁵⁾

한편, 2009 교육과정은 2011년에 교육과정 각론의 전면적인 개정이 단행되었다.²⁶⁾ 2011 교육과정의 특징은 고등학교 “한국사”를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던 2009 교육과정과 달리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통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2011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 부분에서도 영토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2009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영토 문제, 특히 독도 문제가 하나의 독립된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교육과정 해설서를 대신해 발행된 집필 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더욱 늘어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고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실려 있는 영토 관련 내용을 단원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의 영토 관련 내용²⁷⁾

단원명	성취 기준 및 내용(요약)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p>① 선사 문화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을 파악한다.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을 현재의 강역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지양하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적 환경을 소개하며, 관련 유물과 유적을 제시하여 우리 역사가 시작된 공간 배경을 이해하도록 한다.</p> <p>② 고조선과 초기 철기 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의 사회 모습과 풍속을 파악한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평양 중심설, 요동 중심설, 이동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특정 학설을 지지하기보다는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고조선의 대체적인 세력 범위와 문화권을 이해하도록 한다.</p>

25) 2009 교육과정의 사회(역사)과 해설서 집필에 참여했던 김정인은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영토 문제 서술에 대한 논문에서 영토 문제로 간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김정인,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독도연구』 8, 2010, 86~87쪽).

26)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총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2009 교육과정은 총론이 유지되면서 2011년에 각론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과정을 둘러싼 혼란이 많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역사과 교육과정 각론을 기준으로 2009 교육과정과 2011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27) 이 집필 기준에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즉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집필 기준이 담겨 있다.

(2)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	<p>① 고려의 건국과 발전 과정을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한다.</p> <p>고려가 진취적 대외 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 외교를 펼쳤으며, 거란 등의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영토 확장을 꾀한 사실을 서술한다.</p>
(3)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p>③ 조선 전기 사대교린 정책을 바탕으로 한 대외 관계를 살펴본 후, 왜란과 호란의 전개 과정과 양난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p> <p>조선 전기에는 명과 문화적, 경제적 실리를 주고받았고, 여진과 일본에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통교 관계를 유지했음을 서술한다. …… 17·8세기에 조선과 청·일 사이에 영토 문제가 있었음을 거론하고 백두산정계비 건립과 안용복의 독도 수호 활동 등이 있었음을 유의한다.</p>
(4)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p>⑦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과 내력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과 간도 협약의 부당성에 대하여 파악한다.</p> <p>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청과 간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내용을 파악하고 간도 협약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p> <p>대한 제국이 관보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이 러·일 전쟁 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한 사실 등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독도 문제를 기술하도록 권장한다.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며, 간도 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체결하였음을 유의한다.</p>
(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p>⑥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탐구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을 확립한다.</p> <p>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입증하는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여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서술한다.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그 배경과 문제점 등을 제시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와 내용 및 영향, 그리고 대응방안 등을 기술한다.</p> <p>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과 고대사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에 바람직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인접 국가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유의한다. 주변 국가의 역사 왜곡 및 영토 문제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이해하고, 역사 갈등의 해결 방법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정립에 있음을 유의한다.</p>

이 집필 기준에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운동을 다룬 5단원을 제외하면 각 단원마다 영토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단원에서 3단원까지의 전근대

시기를 다룰 때 초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로부터 현재의 영토가 확정되는 과정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백두산정계비와 안용복의 독도 수호 활동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와 간도 등 현재의 영토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2011 교육과정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근현대 시기 독도와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09 교육과정을 계승하고 있는데, 독도와 간도 문제에 대한 서술 방향이 더욱 상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역사교육에서 중시되기 시작한 영토 문제는 2011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구조와 상세한 내용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다만 영토교육이 간도와 독도 문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

교육과정에서 영토 문제가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떠오른 것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이지만, 교과서의 영토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의 규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교과서의 집필 과정에 반영되지만, 교육과정에 규정된 내용이 없더라도 교과서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토 문제는 교과서 본문에 서술하지 않더라도 관련 지도를 제시해 영토 관련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이 집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체계적인 영토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²⁸⁾

현재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영토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하므로 여기서는 2011 교육과정에서 따라 2014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서 필요에 따라 이전 교육과정에서 발행된 “한국사(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⁹⁾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

28) 예컨대 제1차 교육과정에서 발행된 홍이섭의 “고등 국사”에서는 고려 시대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개척은 서술하고 있지만, 강동 6주 확보나 공민왕의 영토 수복 내용은 서술하지 않아 영토 문제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홍이섭, 『고등 국사 <우리나라 문화사>』, 정음사, 1957).

29) 2009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의 서술로 한국사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로 삼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 검토대상 한국사 교과서 목록³⁰⁾

교육과정	교과서명	저자/편자	출판사	발행연도
2011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한철호 외	미래엔컬처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도면희 외	비상교육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2014

2011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를 모두 6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전근대와 근현대가 각각 3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 강점기를 다룬 5단원을 제외하고 각 단원마다 영토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를 살펴보면 각 단원에서 교육과정이나 집필 기준에 제시된 것보다 더 많은 영토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1) 전근대 시기의 영토 관련 서술

1단원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은 선사 시대부터 고려 성립 이전까지를 다루도록 하였다. 한국사의 시작 부분으로 고조선을 비롯한 초기 여러 나라,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현재의 영토와는 거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는 당시 등장했던 여러 나라의 중심지나 영역·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영토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표4] “한국사” 교과서 1단원의 영토 관련 서술 비교

출판사 서술 주제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고조선의	랴오닝 지방에서 성장, 한반도 북	랴오닝 지방과 대동강 유역	·랴오닝 성 일대를 중심

30) 2011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었는데, 총 8종이 검정을 통과하여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8종의 교과서 중에서 일선 학교의 채택률이 가장 높은 3개의 교과서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중심지	부까지 확대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요동 중심설, 평양 중심설, 중심지 이동설 등 여러 학설이 있음
부여의 중심지	송화 강 유역	송화 강 유역	송화 강 상류
고구려 중심지	졸본 → 국내성	졸본 → 국내성	졸본 지역 → 국내성
옥저와 동예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 동해안	함경도 및 강원도 동해안	함경도의 동해안, 강원도 북부 동해안 일대
삼한의 위치	마한은 경기·충청·전라도, 진한은 대구·경주 중심, 변한은 김해·창원 중심	마한은 경기·충청·전라도 지방에서 발전	마한은 주로 충청, 전라 지역, 진한은 대구와 경주 등 중심, 변한은 김해와 마산을 중심
고구려의 영토 확장	•태조왕-옥저 정복 •미천왕-낙랑 공격, 대동강 유역 확보 •광개토대왕-요동과 만주 장악 •장수왕-한강 이남	•태조왕-옥저를 정복하여 청천강 유역까지 확장 •미천왕-낙랑 공격, 대동강 유역 확보 •광개토대왕-요동 지방, 만주 남부 지방, 두만강 하류 지역 차지	•태조왕-옥저 정복하고, 현도군을 공격해 영토 확장 •미천왕-낙랑군 완전 축출, 대동강 유역 확보 •광개토대왕-요동 지역 확보, 부여 병합 •장수왕-한강 이남(아산만-영일만)
백제의 영토 확장	•고이왕-한강 유역 장악 •근초고왕-마한 통합, 평양 공격 •요서 진출	•고이왕-한강 유역 장악 •근초고왕-마한 통합, 평양을 공격해 황해도 차지 •요서 진출	•근초고왕-평양성을 공격해 황해도 일대 진출, 마한을 통합해 전라도 지역을 차지 •요서 지방까지 진출
신라의 영토 확장	•내물왕-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 장악 •지증왕-우산국 복속 •법흥왕-금관가야 흡수 •진흥왕-한강 차지, 대가야 정복, 함경도까지 영토 확장	•내물왕-진한 정복, 낙동강 동쪽까지 확장 •지증왕-우산국을 비롯해 경상도 북부까지 확장 •법흥왕-금관가야 병합 •진흥왕-한강 장악, 대가야 병합, 함흥평야까지 진출	•내물왕-낙동강 동쪽 진한 지역을 대부분 차지 •지증왕-우산국 정벌 •법흥왕-금관가야 병합 •진흥왕-한강 유역 차지, 대가야 정복, 동해안을 따라 함흥평야까지 진출
삼국통일	대동강 이남 확보에 그침	대동강 이북 상실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 상실
발해의 영토 확장	선왕-요동과 연해주 진출, 신라와 국경을 맞댐	선왕-옛 고구려 땅의 대부분 차지	선왕-북으로는 헤이룽 강, 동으로는 연해주, 서로는 요동에 이르는 영역

[표4]를 보면,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은 표현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체로 발행되어 오면서 교과서 서술 방식의 틀이 어느 정도 고정화되었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이전에 발행된 “국사” 교과서가 참고

된 결과로 생각된다.³¹⁾ 특히 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 및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1단원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고조선 관련 문화권 범위, 초기 여러 나라의 위치, 삼국의 전성기, 가야 연맹의 중심지 변화, 통일신라와 발해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 등이 그것인데, 이들 지도들은 3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도들의 대부분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에서 사용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³²⁾

2단원 ‘고려 귀족 사회의 형성과 변천’은 고려의 성립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2단원에서는 고려 시대에 이루어진 영토 확장 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5] “한국사” 교과서 2단원의 영토 관련 서술 비교

출판사 서술 주제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태조의 복진 정책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면서 복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복진 정책의 걸림돌이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었다.	태조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배척하였고, 건국 초부터 서경을 중시하여 남쪽에 인구를 이주시키고 이곳에 관부와 관리를 두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복진 정책과 발해 유민의 합류로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태조는 …… 건국 초부터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복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고, 청천강에서 영흥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다. 또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강동 6주 확보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였다. 고려는 서희의 담판으로 송과 관계를 끊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서희는 소손녕과 회담하여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알리고, 북방 지역의 교통로를 확보하면 거란과 교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거란은 압록강 일대에 6개의 성(강동 6주)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고려는 송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동북 9성 개척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뒤 동북 지방에 9개의 성	예종은 별무반을 파견하여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쪽 국경 밖에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을 추진하여 동북 9성을 설치

31) 예컨대 신라 지증왕의 우산국 복속에 대한 내용은 국정제로 교과서가 발행되던 제3차와 제4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지만, 제5차와 제6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에는 서술하지 않았고, 제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

32) 2005년에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는 가야 연맹의 중심지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1997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국사” 교과서에는 전기 가야 연맹의 영역을 보여주는 지도도 제시되어 있다.

	을 쌓았다. 그러나 수비가 어렵고 여진이 조공을 약속하며 9성의 반환을 요청하자 1년 만에 돌려주었다.	9개의 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삼았다. 그러나 고려는 여진이 9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9성 간의 거리가 멀어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9성을 돌려주었다	하였다(1107). 그러나 여진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방어가 어렵게 되자, 조공을 약속받고 돌려주었다.
영토 상실과 회복	고려의 영토를 빼앗아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녕부,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그 주변을 지배하였다. [보조단] 고려의 영토 회복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때 되찾았으나, 쌍성총관부는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을 때까지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녕부, 제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였다. [지도 설명]공민왕의 영토 수복 고려는 충렬왕 때 동녕부와 탐라총관부를 되찾았고,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으로 탈환하였다.	원은 고려의 영토 중 철령 이북 지역에는 쌍성총관부, 서경에는 동녕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두어 직접 통치하였다
공민왕의 영토 수복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고려 영토를 되찾았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2단원에서 영토 관련 주제는 태조의 북진 정책부터 고려 말 공민왕의 영토 수복 활동까지 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3종 교과서에 모두 서술되고, 그 내용도 비슷하다. 이 역시 제3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의 서술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며, 서술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와 매우 비슷하다.

또한 3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 시대에도 영토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지도를 제시하였다.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 확보된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는 미래엔 교과서를 제외한 2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강동 6주’, ‘공민왕의 영토 수복’과 관련된 지도는 3종 교과서가 모두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동 6주’와 ‘동북 9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지도 외에도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강동 6주’의 경우 사회의 외교 담판과 관련된 사료를 3종 교과서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동북 9성’의 경우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도움글 형태로 동북 9성의 위치와 관련된 학설들과 이를 표시한 지도까지 제시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탐구 활동으로 윤관의 별무반 조직과 관련된 사료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3단원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는 조선의 건국부터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단원에서는 조선 초의 영토 확장과 조선후기부터 불거진 영토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6] “한국사” 교과서 3단원의 영토 관련 서술 비교

출판사 서술 주제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4군 6진 개척	<p>세종 때에는 최윤덕과 김종서가 4군 6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새로 개척된 지역에 삼남 지방의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북방 개척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방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p>	<p>세종 때에는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하여 4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지역에 김종서를 파견하여 6진을 설치하면서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삼남 지방의 주민들을 이주시켜 정착하게 하는 사민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p>	<p>세종 때에는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또 이곳에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을 이주시키는 사민 정책을 추진하였다. 4군 6진의 개척 세종 때 4군과 6진을 설치함으로써 오늘날과 비슷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확정되었다.</p>
대마도 정벌	<p>세종 때에는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보조단] 대마도 토벌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토벌은 고려 말부터 이어졌다. 고려 말 창왕 때에는 박위, 조선 태조 때에는 김사형이 각각 토벌에 나섰다.</p>	<p>조선 정부는 이종무에게 명하여 대마도를 토벌하고 일본과의 교역을 중단하였다.</p>	<p>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토벌하였다(1419). [지도 설명] 대마도 토벌 1419년 이종무는 병선 227척과 군사 1만 7천여 명으로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조선은 이 토벌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었다.</p>
백두산 정계비	<p>함경도와 평안도에 거주하던 조선인 중에는 일찍부터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 만주에서 사냥을 하거나 인삼을 채취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청이 자신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일대를 출입 금지(봉금) 지역으로 정해 성역화하면서 조선과 분쟁이 일어났다. 청은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해 왔다. 이에 조선과 청은 대표를 파견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해 정계비를 세웠다(1712).</p>	<p>17세기 말 국경 지역의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청은 이를 문제 삼아 양국 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마침내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는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p>	<p>[특집코너] 청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면서, 원래 자신들의 근거지였던 만주 지역을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 만주 지역에 정착하는 조선인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자 숙종 때 청과 조선은 국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리를 보내 조사한 후,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는 비를 세웠다(1712). 백두산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새겨 넣었는데, 이후 ‘토문’의 위치를 두고 청과 조선 사이에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p>
안용복의 활동	<p>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의</p>	<p>조선 후기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주 침범하여 충돌이 일어났다. 17세기 말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 독도 지역을 침범한</p>	<p>[특집코너] 숙종 때 동래 출신의 한 조선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 어선을 쫓다</p>

	<p>영토라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p> <p>그러나 일본 어민이 울릉도와 독도 지역을 자주 침범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p> <p>속종 때 동래 어민 안용복은 울릉도에 침범한 일본 어민을 내쫓고, 일본까지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관리를 파견하여 살피도록 하는 수도 정책을 펼쳤다. 에도 막부도 일본 어민의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p>	<p>일본 어민들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그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았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이 침범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는 주민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켰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다.</p>	<p>일본에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그 조선 어민은 일본 관리들에게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그가 바로 안용복이다. 안용복이 송환되는 과정에서 일본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 섬 사절단이 조선인의 죽도 출입 금지를 요청하였다. 조선 정부는 죽도가 울릉도임을 파악한 후 일본인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하도록 일본 막부에 요구하였다. 결국 일본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출입을 금지하게 되었다.</p>
--	--	---	---

3단원의 영토 관련 서술은 조선 초의 4군 6진의 개척과 대마도 정벌 관련 내용, 그리고 조선 후기의 간도와 울릉도(독도)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3종의 교과서는 모두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조선 전기 4군 6진 개척과 대마도 정벌 관련 내용은 3종의 교과서 모두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를 다루는 소단원 안에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는 주제를 설정하여 서술하고 있고 4군 6진 개척과 관련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서술 구조와 서술 내용 역시 기존의 교과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백두산정계비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서술에서는 교과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미래엔 교과서는 ‘양난 이후의 대외관계’라는 소단원에서 청·일본과의 기본적인 대외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다’와 ‘안용복,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다’라는 별도의 주제를 설정하여 비교적 자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 또한 백두산정계비 사진과 함께 비문의 내용을 사료로 제시하였고,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그려진 ‘삼국접양지도’를 제시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라는 주제 안에서 양난 이후 청·일본과의 관계 설명에 포함시켜 백두산정계비의 건립 과정과 안용복의 활동을 서술하였다. 학습 자료도 백두산정계비 사진을 제시하고 비문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쳤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백두산정계비와 안용복의 활동을 본문에 서술하지 않고 ‘호란 이후 국제 정세와 영토 문제’라는 주제 탐구 특별 코너에서 다루었다. 1쪽으로 구성된 이 특별코너에는 ‘청과의 외교 관계, 연행사를 보내다’, ‘안용복,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다’, ‘청과의 영토 문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다’라는 3가지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학습 자료로는 안용복 동상과 백두산정계비 사진을 제시하였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서술 구조는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의 서술구

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미래엔과 천재교육의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의 서술 구조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보강해 더욱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2011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독도와 간도 문제가 강조된 것이 교과서 집필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미래엔 교과서는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당대에 제작된 지도를 제시해 이해를 높이려 했음이 주목된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 시기 영토 관련 서술은 현재의 영토과 확립되는 과정을 역대 왕조의 영토 변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구조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조정되어 오다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정형화된 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다만 주변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대두되면서 독도와 간도 관련 서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근현대 시기 독도와 간도 관련 서술의 강화

2011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는 근대 이후를 3개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운동을 다룬 5단원을 제외한 두 단원에서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는 모두 독도와 간도 문제이다.

4단원 ‘국제 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은 흥선대원군 집권부터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까지를 다룬다. 이 시기에는 간도 귀속 문제와 간도협약, 그리고 일본의 독도 침탈 등이 있었던 시기로 영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을 자세히 다루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 강조되어 있다.

[표7] “한국사” 교과서 4단원의 독도, 간도 서술 구조 비교

구분	교과서 서술 구조	학습 자료	분량
미래엔	4. 일제의 침략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1)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2) 간도와 독도 대한 제국,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다 독도를 수호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에 강탈당하다 [한국사백과] 일제의 독도 강점과 대한 제국의 대응 (3) 항일 의병 전쟁 (4) 애국 계몽 운동	[사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강원도 관찰사 이명래의 보고서와 참정대신 박제순의 답변 [지도] 백두산정계비 부근 조선전도(1876, 일본 육군참모국 발행) [사진] 대제국 칙령 제41호와 그것이 실린 관보 이범윤의 허묘 태정관 지령문과 기죽도약도	2
비상교	07 독도와 간도 (1)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하다 독도의 역사적 연원	[사료] 간도 협약 [지도] 삼국접양지도(1785) 대한 제국 지도(간도 일부가 대한제국 영토	4

<p>목</p>	<p>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생각을 키우는 자료] 태정관 지령문과 칙령 제41호 (2) 일본과 청이 간도 협약을 체결하다 간도 귀속 문제의 발생 청과 일본의 간도 협약 체결 [탐구] 간도 영유권 갈등과 간도 협약 체결</p>	<p>로 표시) 백두산정계비의 위치 [사진] 울도 군수 심흥택과 일본 관민 조사단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독도 태정관 지령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수록된 관보 이범윤의 보고 제5호 간도 룡징 시내 모습 백두산정계비</p>	
<p>천재교육</p>	<p>05 국권 피탈과 국권 수호 운동 주제1 일본의 국권 침탈 주제2 항일 의병 투쟁의 전개 주제3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 주제4 일본의 경제 침탈 및 경제적 구국 운동 주제5 독도와 간도 문제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간도문제 [활동하기] 간도 협약</p>	<p>[자료] 간도 협약 [지도] 대한전도(간도가 한국 땅으로 표시된 대한 제국지도) 간도의 위치 [사진] 일본 태정관 지령문 팔도총도(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 울도군 절목(1902)</p>	<p>2</p>

[표7]을 보면, 이전 교육과정 시기에 비해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래엔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수호운동을 다루는 중단원 안에 별도의 소단원으로 독도와 간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서술 구조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 체제로 발행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독도와 간도를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정해 다룬 것, 제7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가 일제의 국권 침탈이란 주제 안에서 독도와 간도를 서술했던 것과 동일하다.³³⁾ 독도와 간도 문제를 일제의 국권침탈과 연관시켜 다루는 것은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일제의 침략사라는 측면, 즉 역사문제로 접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³⁴⁾

그런데 비상교육 교과서는 4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독도와 간도를 하나의 중단원으로 설정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독도와 간도를 4단원의 마지막 성취 기준으로 제시해 강조한 것을 교과서 집필에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독도와 간도를 하나의 독립된 중단원으로 설정해 강조할 경우 자칫 이 문제가 일제의 국권침탈과는 무관한 영토분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서술 분량은 미래엔과 천재교육이 2쪽으로 제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와 비슷한 데 비해 비상교육은 4쪽을 배정하여 서술 분량을 크게 늘렸다. 비상교육 교과서의 서

33) 독도와 간도 문제를 일제가 대한 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부분에 함께 기술하는 방식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까지 이어졌다(신주백, 앞의 글, 60쪽).

34) 신주백, 앞의 글, 55쪽.

술 분량이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것은 독도와 간도를 하나의 중단원으로 설정하다보니, 중단원의 격에 맞는 서술 분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비상교육의 교과서는 시기적으로 3단원에서 다루었어야 할 내용과 자료까지 4단원에 함께 서술하였고, 이 과정에서 본문과 자료가 중복되는 등³⁵⁾ 영토교육의 체계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편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는 독도 사진이나 간도 협약 정도를 사용하던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그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분량도 많아졌다. 다만 간도의 위치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지도나 간도 위치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에서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주로 현재적 관점에서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 과거사 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2009 교육과정부터 강화되었던 부분으로 2011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 기준에도 그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표8] “한국사” 교과서 6단원의 독도, 간도 서술 구조 비교

구분	교과서 서술 구조	학습 자료	분량
미래엔	5. 세계와 대한민국 (1)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갈등 패전한 일본, '평화헌법'이 제정 되다 부활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다 [탐구활동]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반박하기 동북아시아 영토 갈등의 중심에 선 일본 독도는 우리 땅 [한국사 백과] 평화와 화합을 위한 브란트의 눈물 과 한·일 지식인의 노력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다.	[자료] 독도에 대한 일본 교사들의 주장 [지도] 중국의 역사 왜곡 속에 늘어나는 만리장성 동북아시아 영토 갈등 지역 1936년 일본 군사 지도 1949년 맥아더 라인 1952년 일본 영역도 1952년 이승만의 평화선 [사진] 옛 군복 차림의 일본 우익 유대 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 꿇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울릉도에서 바라 본 독도	4
비상교육	06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 (1) 일본이 역사·영토 갈등을 일으키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독도는 우리 땅 [탐구]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일본 역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화해를 위한 노력	[자료]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지도] 1952년 관보에 게재된 평화선 아시아의 영토 갈등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동북 3성 중국의 천지 분할 지도에 표시된 백두산 천지 [사진]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	6

35) 예컨대 비상교육 교과서의 경우 3단원에 이미 사용된 학습 자료인 백두산정기비 사진이 4단원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생각을 키우는 자료]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 (2) 중국과 역사·영토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나라 고대사 서술 간도를 둘러싼 논란 [생각을 키우는 자료] 북한과 중국의 국경 설정 [탐구] 고구려를 둘러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 갈등	독도 수호 국제 연대의 독도 수호 활동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 후생 연금 탈퇴 수당 99엔 재심사 청구 집회 장군총 사진과 표지판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백두산 천지	
천 재 교 육	06 냉전 체제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미래 주제5 미래를 여는 역사 주목받는 한국과 국제 사회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역사 문제 [주제탐구] 동아시아 역사 문제와 한국의 미래 - 연합국의 전후 방침과 독도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불안정한 전후 처리 - 역사 문제로서 동아시아 영토 문제 - 서독의 철저한 과거 청산과 동·서독의 통일	[지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첨부된 지도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 분쟁 지역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 [사진]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교과서 동북공정 반대 시위 제2기 한·일 역사 공동 연구 위원회 한·중·일 청소년 평화 캠프 일본의 항복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인식	3

6단원의 영토 관련 서술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연관 지어 서술되어 있는데, 교과서마다 서술에 큰 차이가 있다. 미래엔 교과서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갈등’이란 소단원 안에서 주로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라는 특집 코너에서 해방을 전후에 제작된 지도를 활용해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냉전 체제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중단원 안에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소단원을 설정하고 ‘동아시아 속의 한국과 역사 문제’라는 주제로 다루었다. 1쪽 분량의 본문에서는 주로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었고 2쪽 분량의 ‘동아시아 역사 문제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 탐구를 통해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동북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을 하나의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일본과 중국과의 문제를 별도의 소단원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서술 분량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 많은 편으로, 다른 교과서들이 영토 관련 서술을 주로 독도 문제에 한정된 것과는 달리, 간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광복 이후 중국과 북한은 1962년에 조·중변계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이 조약에서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되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3분의 2를, 중국은 3분의 1을 영유하기로 하였으며, 간도 지역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중반부터 간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1909년 청과 일본은 간도를 청의 땅으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

결하였다. 그러나 간도협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신해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한 일본의 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간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토문강의 실체에 대해 조선과 청이 명확하게 합의한 적이 없고, 1904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청과 간도 문제를 놓고 회담하였을 때 압록강·두만강 이남 지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점으로 보아, 간도가 우리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게다가 중국과 북한이 이미 국경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공정의 합리적 해결조차 어렵게 할 수 있다.

비상교육의 간도 관련 서술은 현재 우리나라가 간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수 없는 입장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구조는 2009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나 미래엔과 천재교육의 “한국사”가 간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동북공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에 서술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근현대 시기 영토 관련 서술은 독도와 간도에 대한 것으로 2009 교육과정 이후 계속 강조되어 온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서술 분량은 계속 증가하고 제시되는 자료는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교과서마다 서술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크다. 따라서 교과서 서술을 어느 정도의 수준과 내용에서 적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결론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영토문제는 교육과정 초기부터 다루어졌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의 규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나 교과서 집필자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역사교육에서도 영토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을 시점으로 한국사 교육과정에 담긴 영토 관련 내용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변국의 역사왜곡과 영토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역사교육 강화를 표방하며 독도와 간도 관련 서술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독도와 간도에 대

한 내용은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고,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단원에 걸쳐 서술하도록 규정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영토 관련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영토 관련 서술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1 교육과정에 의해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한국사의 시작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토의 변천과정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전근대 시기는 현재의 영토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였고,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 시기에는 독도와 간도 관련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주변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연관지어 서술하고 있다. 조선 중기를 기준으로 영토문제의 주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전근대 시기 영토 관련 내용의 서술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정형화된 모습을 보인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서술 주제와 방향이 정리된 결과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독도와 간도 문제를 포함해 근현대 시기의 영토 관련 서술은 교과서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독도와 간도 문제가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점점 강조되었고, 이를 반영해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서술 분량과 내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현대 시기 영토교육에 대한 체계화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교육에서 독도와 간도 등 영토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영토교육의 체계 안에서 독도와 간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특정 주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독도와 간도 문제의 강조로 교과서의 서술 분량을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학습자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나 학습 자료의 무분별한 제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문교부령 제46호), 1955.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121호) ·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
-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 1974.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88-7호) ·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1988.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2.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 과정(Ⅰ)』(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97.
- 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0호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 2008.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2010.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2011.
- 홍이섭, 『고등 국사 -우리나라 문화사』, 정음사, 1957.
-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0.
-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
-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상) ·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3.
-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상) ·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상) ·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두산동아, 2002.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2006.
- 한철호 외, 『한국 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3.
- 김한중 외,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컬쳐, 2014.
- 도면희 외,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2014.

-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2014.
- 우인수,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 분석」, 『역사교육』 84, 2002.
- 박진동, 「해방 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2004.
-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과연구』 12권 2호, 2005.
- 신주백, 「교과서와 독도문제」, 『독도연구』 2, 2006.
- 김주택,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5, 2007.
- 서길수, 「중화인민공화국 동북공정 5년의 성과와 전망」, 『고구려연구』 29, 2007.
- 심정보,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기술된 독도관련 영토교육」,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서태열, 「영토교육의 개념화와 영토교육모형에 대한 접근」,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7-3, 2009.
- 김정인,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독도연구』 8, 2010.
-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의 변화」, 『독도연구』 8, 2010.
- 박선미, 「탈영토화시대의 영토교육 방향」,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8-1, 2010.
- 강승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사’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역사와 교육』 12, 역사와 교육학회, 2011.
- 김영수,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2012.
- 한철호, 「한국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과 과제」, 『영토해양연구』 3, 2012.
- 김영수, 「한국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의 비교와 분석」, 『평화학연구』 14, 2013.
- 송호열, 「한국 영토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중일 영토교육 비교와 우리의 대응』, 동북아역사재단, 2014.

제2부 제4발표 토론문

「한국 역사교육에서 영토문제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황 인 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국 역사에서의 영토문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위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우리 조상들이 살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 이후 현재의 반도와 부속하는 울릉제도 등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근대 갯벌이나 연안지역이 확장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그 영역은 오랜 반도적 전통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토 국경의식을 갖게 된 것은 근대부터입니다. 오늘의 영토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지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상의 영공과 땅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지 않은 아쉬움이 크지만 강승호 선생님께서 논의하신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영토와 관련한 기술의 현황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초기에는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나 교과서 집필자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역사 교육에서도 영토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어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1) 대체적으로 공감어 가는 부분이 많지만 영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1990년대 중반 외적인 문제 즉,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영토교육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도 영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영토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영토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질서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국가의 영토인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국가 또는 정부의 영토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영토인식 원칙이나 방침이 바로 교과서 서술 지침이 되고 있을 것인데 현재 교과서 서술 지침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3) 그러한 교과서 서술 지침에 의해 검인정 교과서가 서술되고 그것이 검정을 통과해야 교과서로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혹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백제와 고구려의 중국 영토 확대인데 이는 중국 정사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宋書』卷97, 夷蠻列傳 57 百濟, ‘百濟國 本與高麗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麗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晋平郡 晋平縣. 義熙十二年, 以百濟王 餘映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최초의 백두산 관련 사료나 지도에 대한 사실은 교과서에 왜 서술·소개되지 않고 있는지요?

4) 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영토교육의 체계 안에서 독도와 간도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특정 주제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학생의 학습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영토교육의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영토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와 관련하여 역사부도 및 역사지도를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5) 영토교육이야 말로 한·중·일을 포함하는 공동역사교과서를 협의하고 편찬하여 이를 교과서로 사용하여 할 것입니다. 즉, 동아시아 모두 함께 공유하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검인정 교과서 서술 내용이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와 한·중·일 또는 한·일 공동역사 부교재 혹은 대한교과서에 나타난 서술 내용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과 공유점이 있는지요? 최초의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와 『새유럽의 역사』와 비교할

때 미래 언젠가 간행될 세계공동역사교과서 서술시 우리의 영토서술과 영토교육에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사교과서의 동북방 지역 서술

- 民族과 領土問題를 중심으로 -

임 상 선

(동북아역사재단)

-
1. 머리말
 2. 渤海 시기 동북방 지역
 3. 遼·金·元 시기 동북방 지역
 3. 清代 동북방 지역
 4. 맺는말
-

1. 머리말

국경은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領土·國境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教科書에 잘 반영되어 있다. 교과서는 그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고, 관련 국가 학계의 일반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어 있으며, 아울러 지난날 만주 지역(남북한의 북방, 중국의 동북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의 학제에서 初級中學은 우리의 中學校에 해당되는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되고, 본고의 검토 대상인 동북방 지역은 중국의 영역이라 하여 中國歷史 교과서에

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역사교과서(역사교육)에서 민족, 영토문제가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검토할 교과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人民教育出版社의 초급중학 『中國歷史』 교과서이다.¹⁾

2. 渤海 시기 동북방 지역 2)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발해가 언급된 단원의 시기는 당조로서 당 태종이 개명한 민족정책을 시행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5과 “화목한 한집안으로 되었다”는 과에서 당이 개방적 민족정책을 취하였다고 하며, 북방의 여러 민족이 장안에 와서 당 태종을 天可汗이라 하였다고 하여, 이 지역이 당의 지배에 승복하였다고 한다.³⁾ 이 단원은 당대 변강의 소수민족이 누구이고, 이들의 의미는 변강민족 입장에서의 역사 의미가 아니라 조국, 즉 중국의 역사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발해는 “수레도 글도 똑같은 한 집안”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당 시기에 우리나라 동북의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서는 말갈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용맹하고 역세였(32쪽)으며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었다. 7세기 말, 말갈족의(25쪽) 일파인 粟末 말갈이 각부를 통일하고 정권을 세웠다. 뒷날 唐 현종이 그곳에 州를 설치하여 그 수령을 都督으로 삼아 渤海郡王에 봉하였다. 이로부터 속말 말갈 정권을 “발해”라 이름 하였다. 발해는 책봉을 받은 후 면적이 부단히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났으며 내지와외의 무역왕래가 빈번하였다. 발해는 경제문화수준이 비교적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으로서, 본문에서는 편의상 課程標準(中國歷史)이라 약하고자 한다. 현행본과 비교한 이전 판본은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 2002년 10월 제2차 인쇄)은 “九年義務教育全日制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에 근거하여 편찬된 것으로서, 본문에서는 편의상 歷史教學大綱(中國歷史)으로 줄여서 사용하고자 한다.

2) 중국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관련 검토는 임상선, 「중국 歷史教科書의 高句麗·渤海史」, 『고구려 역사 중국에는 없다』, 도서출판 예문당, 2004 및 임상선, 「중국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동북아역사재단 편, 2006)을 참조.

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22쪽.

높았기 때문에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발해정권이 귀족자제들을 늘 長安에 보내어 학습시켰기 때문에 발해에서 唐 문화가 널리 전파되었다. 발해의 한 왕자가 장안에 와서 공부하였는데 그의 문학적 재능은 중원문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주1:당조의 시인 溫庭筠은 일찍이 “귀국하는 발해왕자를 전송하며(送渤海王子歸國)”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쓴 “수레도 글도 똑같은 한 집안(車書本一家)”이란 발해와 당이 본래 수레는 바퀴 폭이 같고, 쓰는 文이 같은 한 집안 사람이라는 말이다) 장안성을 본 따 건설한 발해의 도읍 上京은 거리가 정연하였고 궁전과 절들이 웅위하였다. 발해는 또 당조의 제도를 모방하여 지방에 府, 州, 縣을 설치하였다. 농업생산에는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하였기에 벼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그들이 당상채를 모방하여 제작한 도기는 “발해상채”라고 불렸다. 무역의 편리를 위하여 당조는 산둥 반도에 渤海館을 설치하여 발해의 상인과 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접대하였다.(26쪽)⁴⁾

수당 시기에 북방지역에 대한 설명이 靺鞨의 발해이다. 본문에서는 “동북의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서는 말갈족이 살고 이들이 7세기말에 그 한 갈래인 “속말갈이 여러 종족을 통일하고 정권을 수립하였다. 후에 당 현종은 그곳에 주를 설립하고 그들의 수령을 도독으로 삼았으며 발해군왕으로 책봉하였다”고 하였다. 즉 북방지역에 속말갈에 의해 발해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을 당이 이곳에 주를 설립하고 그들의 수령을 도독으로 삼고, 군왕으로 책봉하였다고 하며, 말갈과 발해가 완전히 당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말갈인 수령은 ‘부자간에 이어받으며 대대로 군장이 되었다(父子相承 世爲君長)’”는 내용이 있었으나,⁵⁾ 현재의 과정표준본에서는 삭제되었다. 아마도 대조영을 말갈인 수령으로서 정권을 수립하였다고 하였는데, 수령의 자리가 당이 아닌 발해국 스스로 계승하였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발해의 건국을 전적으로 말갈족에 의한 것이라 하나, 중국측의 발해사료에는 엄밀히 고구려인이 발해 건국에 참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당 현종이 설립한 주는 당 내지의 주가 아니라, 신라의 계림주와 같은 형식의 주이고, 책봉 자체도 그것이 당의 황족이나 신하에 대한 책봉이 아니라, 외국의 왕에 대한 책봉이다.

4)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2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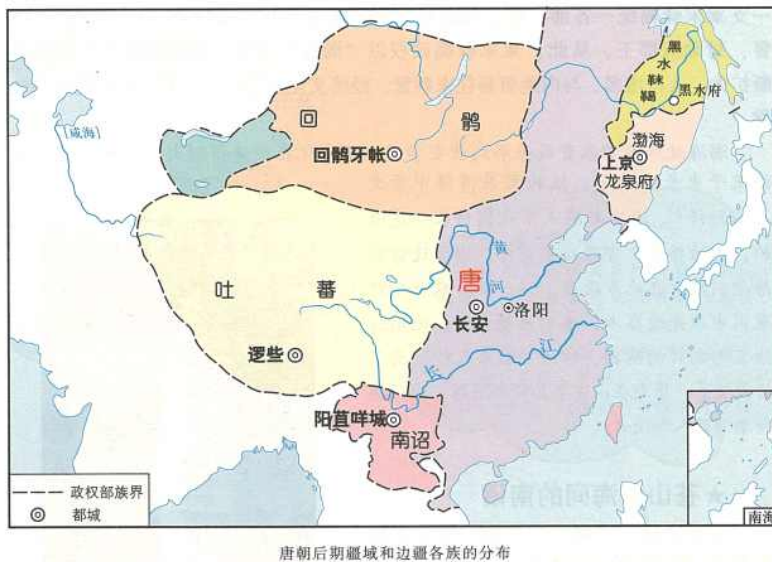
5)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16쪽.

또한 당의 과거시험인 賓貢科에서 발해인이 당인과 구별되고 그것도 외국인으로 취급 받고 있는 것이나,⁶⁾ 『新唐書』와 『舊唐書』 발해전에서 8세기 중엽 이후의 발해가 ‘郡’에서 ‘國’으로, 왕은 ‘郡王’이 아니고 ‘國王’으로 대우받고 있다.⁷⁾ 또한 발해가 황제가 사용하는 연호를 武王의 仁安 이래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독자적으로 사용하였고, 文王이 자신을 大王, 聖人 등으로 부르면서 皇上이라 하고, 일본에 보낸 國書에서 스스로 天孫임을 자처하는 등, 황제국의 질서도 일부 갖추고 있었던 점⁸⁾도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항이다.

운정균의 발해왕자 귀국시의 시에 언급한 수레와 글이 같은 집안이라는 것도, 송별의 즈음에 적은 ‘시’로서 발해의 문학적 소양이 높다는 의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억측이다.

이밖에 발해 시기 동북방의 영역은 아래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지도] 唐朝 후기의 疆域과 邊疆 여러 민족 분포⁹⁾



6) 宋基豪, 「唐 賓貢科에 급제한 渤海人」,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참조
 7) “寶應元年 詔以渤海爲國 欽茂王之”(『신당서』 발해전) 및 “寶應元年 進封國王”(『구당서』 발해전).
 8) 宋基豪, 「발해 文王代의 개혁과 사회변동」, 『韓國古代史研究』 6, 한국고대사학회, 1993.
 9)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25쪽.

당을 중심으로 주변의 吐蕃, 回鶻, 南詔와 함께 ‘渤海’를 ‘政權部族界’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黑水靺鞨도 발해와 별도의 경계로 표시하고 있다. 북방지역은 요동반도와 遼河 서쪽이 당의 영역에 포함되고 그 동쪽이 발해와 흑수말갈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발해는 남쪽의 新羅와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에서 경계 짓고 있으나, 신라라는 국명은 표시하지 않았다.

역사교학대강본에서는 ‘唐朝 전기의 강역과 변강 여러 민족의 분포’ 지도¹⁰⁾가 있었는데, 과정표준에는 빠졌다. 당조 전기 분포도는 당과 한반도의 경계가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이고, 발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 멸망 이후 발해 건국 이전의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요녕·길림 지역이 당의 영역이고, 흑룡강 유역은 ‘靺鞨’이 표시되어 있다.

발해의 영역에 대해서는 『舊唐書』와 『新唐書』의 渤海傳을 통해서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발해의 대조영이 건국한 곳은 오늘날 길림성 돈화에 있는 東牟山 일대였다. 武王 시기에 이르면 ‘大土宇를 개척하여 동북의 여러 夷들이 두려워하여 발해의 신하가 되었다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8세기 전반 발해 강역은 舊國(돈화)을 중심으로 하면서 동으로 목단강을 건너 불널과 서로 이웃하고, 서로 길림·장춘을 넘어 곧바로 박작구에 이르렀고, 북으로 철리·월희와 인접하였으며, 남으로 신라와 접경하고 있었다. 『구당서』에는 이 시기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땅이 영주로부터 동으로 2천리 되는 곳에 있는데, 남으로 신라와 서로 접하고 (서쪽으로) 월희말갈과 접하며 동북쪽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데 영토의 크기는 사방 2천리나 된다.¹¹⁾

3대 文王은 북쪽과 동북쪽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天寶 말년에 中京으로부터 上京으로 도읍을 옮긴 다음, 점차로 5경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宣王(819~830)은 ‘海北(현재의 흥개호 북쪽)의 여러 부락을 정벌하여 大境宇를 열 수 있었다(頗能討伐海北諸部 開大境宇)’. 흑수말갈은 발해의 통제를 받았다. 발해 영토가 광대해짐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는 완비된 관리체제인 5경 15부 62주가 설치되었다. 『新唐書』에는 대체로 후기의 강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0)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14쪽.

11)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越喜靺鞨 東北至黑水靺鞨 地方二千里(『舊唐書』 권199하, 北狄列傳, 渤海靺鞨傳).

발해는 그 지역이 영주로부터 동쪽으로 2천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남쪽으로 신라와 泥河를 경계로 삼고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며 서쪽으로 거란에 이르렀다. 성곽을 쌓고 산다 … 영토의 크기는 사방 5천리가 되며 가구는 10여만호이고 정예의 군사가 수만명이다. 자못 書契를 안다. 부여, 옥저, 변한, 조선, 흥개호 북쪽의 여러 나라들을 모두 얻었다.¹²⁾

발해의 남쪽 경계인 泥河는 井泉郡(고구려의 泉井郡, 현재의 덕원) 북쪽에 있는 강인데 현재의 함경남도 龍興江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해 남쪽은 이곳을 경계로 하여 신라와 이웃하고 있었다.

당·거란과는 遼河가 그 경계였던 것 같다. 서쪽은 거란과 경계를 이루며, 이곳에 발해의 부여부·막힐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신당서』 지리지에 실려 있는 賈耽의 『道里記』에 압록강의 하구에서 약 130리의 상류에 있는 박작성이 발해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나,¹³⁾ 박작구는 당에서 발해에 해상으로 이동할 때 상륙하던 곳이므로, 이곳을 기준으로 당과 발해의 경계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8세기 전반 요동지역이 당보다는 발해의 영향권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쪽은 안원·안변·정리부가 위치하는데, 현재의 러시아 우수리강 동쪽과 광대한 연해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북쪽은 오늘날 흑룡강 일대의 흑수말갈에 이르렀다.

3. 遼·金·元 시기 동북방 지역

중국 역사교과서는 요·금·宋을 “民族政權 并立의 時代”라 규정하고,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학습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거란의 건국설화를 소개하고, 거란족은 요하 상류일대에서 살았으며 유목과 어렵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다.¹⁴⁾

12) 地直營州東二千里 南北新羅以泥河爲境 東窮海 西契丹 築城郭以居---地方五千里 戶十餘萬 勝兵數萬 頗知書契 盡得扶餘沃沮并韓朝鮮海北諸國(『新唐書』 권219, 北狄列傳, 渤海傳)

13) 이 박작성은 지금의 九連城의 동북 약 20리에 있는 압록강에 흘러 들어가는 蒲石河口에 있었다.

14)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0쪽.

1) 요대 동북방

[거란의 흥기와 陳橋兵變]

수당 시기에 契丹이 점차 강대해졌다. 당 말기, 적지 않은 중원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거란지구로 찾아왔다. 거란사람들은 漢人들과 접촉하면서부터 점차 농사, 제철, 집짓기를 배웠으며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10세기초에 거란의 걸출한 수령 阿保機가 거란의 여러 종족들을 통일하고 契丹國을 세웠으며 도성은 上京에 있었다. 아보기가 바로 遼太祖이다. 거란은 건국후 세력을 남으로 부단히 발전하였으며 요 태종 때, 幽雲 16州를 점령하였다. 이때로부터 거란과 중원정권과의 충돌이 격화되었다.¹⁵⁾

수당 시기에 契丹이 강대해진 것을 당조말기에 적지 않은 중원사람들이 전란을 피해 거란지구로 찾아왔고, 이들에 의해 점차 농사, 제철, 집짓기를 배웠으며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역사교학대강본에서는 “당조 말년에 적지 않은 중원의 漢人들이 거란 경내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가지고 갔다. 이때로부터 거란인들은 농경생활과 정착생활을 시작하였다”¹⁶⁾고 하여, 거란의 농경, 정착생활이 중원의 한인에 의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거란은 건국 후 북방에서의 강대한 민족정권이 되었다. 경내에는 거란·漢·女眞·回鶻 등의 민족 인민들이 살고 있었다”¹⁷⁾이라 하였다.

거란과 북송의 관계를 알 수 있는 澶淵之盟을 북송이 유리한데 요와 강화를 맺은 것이라 하지만,¹⁸⁾ 歲幣의 내용으로 미루어 거란이 우위이고 북송이 할 수 없이 강화를 맺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교학대강본에서도 “宋軍이 遼軍을 물리친 후 쌍방은 대치하고 있었는데 서로 역량이 비슷하였다. 요는 이길 가망이 보이지 않자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송 眞宗은 구차한 편안을 탐내, 해마다 은 10만냥, 비단 20만필을 요에 보내주는 데 동의하였다”¹⁹⁾고 하였다.

15)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0쪽.

16)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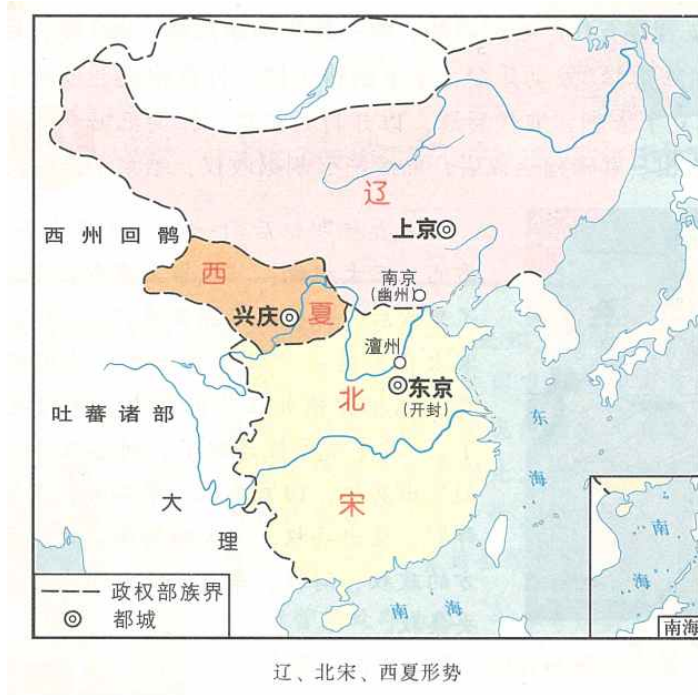
17)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47쪽.

18)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1~52쪽.

19)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48쪽.

요대 동북방 지역은 아래의 지도에 그 영역이 표시되어 있다.

[지도] 遼, 北宋, 西夏の 形勢²⁰⁾



요·북송·서하의 형세를 표시한 지도에는 각국이 ‘정권종족계선’으로 구분되고 있다. 요는 한반도의 고려와 압록강 입구에서 함흥 지역을 경계로 하고, 흑룡강 북쪽의 외흥안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뻗어 고혈도 북쪽 맞은편까지 뻗어있다.

이 지도에서 말하는 요의 동북방 경계는 바로 清朝 영역²¹⁾에서도 유사한 경계를 이루고 있으니, 결국은 요대에 청조 강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밖에 요의 서쪽에는 탕구트족(黨項族)의 西夏가 있었고, 동남쪽은 北宋과 경계를 짓고 있었다.

20)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2쪽.

2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12쪽.

2) 금대의 동북방

[金과 南宋의 대치]

遼宋 시기, 동북지구의 女眞族은 요의 통제와 압박을 받았다. 12세기 초기, 여진의 걸출한 수령 阿骨打가 군사를 일으켜 요에 반항하였으며, 뒤이어 會寧에서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金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金太祖이다.

용감하고 근로한 여진인은 사냥을 잘하였다. 사냥할 때 그들은 樺樹 껍질로 만든 호각으로 사슴의 울음소리를 내어 사슴들을 유인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을 몹시 추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의 창은 모두 동쪽 또는 남쪽에 냈고, 집안에는 구들을 놓고 구들에 불을 때었다. 지금까지도 북방의 일부지역에서는 온돌을 사용하고 있다. 22)

요대 북방지역은 바로 여진족의 활동시기이다. 12세기 초 阿骨打가 군사를 일으켜 요에 반항하였으며 뒤이어 지금의 흑룡강성 아성시에 비정되는 會寧에서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金이라고 하였다고 보았다. 회녕은 요대에 있어서는 동경지역에서 동북쪽에 해당된다. 요대에 동쪽은 오늘날 요녕성과 길림성 서부지구가 요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던 지역이고, 그 동쪽은 요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여진족의 거주지였다. 그 가운데 동북쪽의 회녕 일대에서 여진족이 금을 세우고, 남하하며 요를 멸망시키고, 다시 남하하여 북송을 멸망시키고, 남송을 압박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과정표준에서는 “요송 시기에 동북지구의 女眞族은 요의 통제와 압박을 받았다”고 하여, 여진족의 출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과정표준에 비해 많은 기술이 있다. “요와 북송의 통치가 날로 부패해 갈 무렵, 생기발랄한 여진족이 白山과 黑水 사이에서 일어나, 요와 북송을 멸망시키고 남송과 대치하게 되었고, 또한 “여진족이 바로 당조 말갈의 한 갈래이며, 흑룡강유역·송화강유역과 장백산 일대에서 살았다. 여진인들은 貂皮, 황금, 진주, 인삼 등으로 이웃 민족과 철기 등 물품을 교환하였다”고 하였다. 23) 여기서 여진족이 말갈의 한 갈래라고 하였는데, 黑水靺鞨을 뜻한다. 24) 요만이 아니라 북송이 멸망한 원인으로서는, 부패 등도 열거하고 있다.

2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2~53쪽.

23)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50쪽.

24) 女眞蓋古肅慎氏 世居混同江之東 長白山鴨綠水之源 南鄰高麗 北接室韋 西界渤海鐵甸 東瀕海後漢謂之挹婁 元魏謂之勿吉 隋唐謂之靺鞨 隋開皇時曾入貢 其族分六部 有黑水部即今女眞 --- 五代時始稱女眞. (『文獻通考』 권327, 四裔考4, 女眞)

여진인의 생활을 소개하기를, 사냥을 잘하고 추운 곳이어서 문을 동쪽 또는 남쪽에 내고 집안에 구들을 놓아 난방하며, 지금까지도 북방의 일부지역에서는 온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온돌은 고구려와 발해인의 특색적인 난방시설인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금대 여진인들의 온돌 사용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남송이 금과의 항전과정에서 분전한 岳飛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가. 남송 초년, 금군이 몇차례 남하하자 남송의 항전파 將領들은 용감히 저항하였다. 항금명장 岳飛는 금군의 수중에서 建康을 수복하였다. 후에 금군이 또 남송을 대거 진공하였다. 악비는 언성(鄆城)에서 금군을 대패시키고, 잃었던 많은 땅을 수복하였다. 송 高宗과 權臣 秦檜는 항금력량이 커져 자기들의 통치를 위협할가봐 금에 강화를 구걸하였으며 또 악비 등에게 철군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그들의 兵權을 해제하였다. 진회는 또 이른바 ‘역모를 꾀한다’는 죄를 씌워 악비를 살해하였다.²⁵⁾

나. 악비가 철군한 후 남송과 금은 화의를 달성하였다. 남송은 금에 臣下를 칭하고, 금에 歲幣를 주었으며 쌍방은 淮水로부터 大散關에 이르는 일선을 경계선으로 확정하였다. 남송과 금의 대치국면이 형성되었다. 후에 금은 도읍을 燕京에 옮긴후 그 이름을 中都라고 고치었다.²⁶⁾

다. <자유열독카드- 岳飛墓>

악비묘는 抗州 西湖 기슭의 栖霞嶺에 자리잡고 있다. 1142년초에 악비가 살해당한 후 한 옥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남몰래 악비의 시신을 항주 錢塘江門 밖의 九曲叢祠 옆에 묻었다. 송 고종이 죽은 후 남송의 통치자들은 악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그를 鄂王으로 추봉하였으며 一品에의로 그의 유해를 서하령 기슭에 이장하였다.

악비묘 앞에는 墓門이 세워져 있으며 문 앞의 照壁에는 명조 때의 사람이 쓴 精忠報國이라는 네글자가 새겨져 있다. 묘문으로부터 묘에 이르는 길 양견에는 돌사람, 돌짐승이 배열되어 있다. 악비묘의 묘비에는 ‘宋岳鄂王墓’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묘문 아래에는 무쇠로 주조한 네사람의 조각상이 있는데 저마다 무덤방향으로 꿇어앉아있다. 그들이 바로 악비를 모함하여 살해한 진회와 그의 아

25)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3쪽.

26)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4쪽.

내 王氏이다. 조각상 뒤 묘문에는 ‘청산은 다행히 충신의 뼈를 묻어주었고 / 백철은 무고하게 佞(아첨할 녀)臣을 주조하였도다’라는 주련이 씌어져 있다. 영신이란 간신이란 말이다.²⁷⁾

송고종과 權臣 秦檜가 금에 대한 저항이 자기들의 통치를 위협할까봐 금에 강화를 구걸하고, 이의 일환으로 악비를 살해하였다고 한다. 악비의 항금 과정에서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용감했음을 설명하고 그의 굳은 신념을 소개하고 있다.²⁸⁾

악비가 철군한 후 남송과 금이 화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남송이 금에 굴복하고 금에 ‘세폐’를 주었으며, 쌍방은 회수로부터 대산관을 경계로 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에서는 남송이 금에 준 것은 ‘세폐’가 아닌 ‘歲貢’이었고, 그 굴복의 정도도 요와 북송보다도 훨씬 강하였다. 역사교학대강에서는 “1141년에 남송과 금은 화의를 달성하였다. 규정하길, 남송은 금에 신하를 칭하며, 동쪽의 회수로부터 서쪽의 대산관의 일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그 이북은 금의 통치구역으로 하고 그 이남을 남송의 통치구역으로 하며, 남송은 금에 세폐를 보낸다. 남송과 금의 대치국면이 형성되었다”²⁹⁾고 남송이 금에 굴복한 내용이 있는데, 과정표준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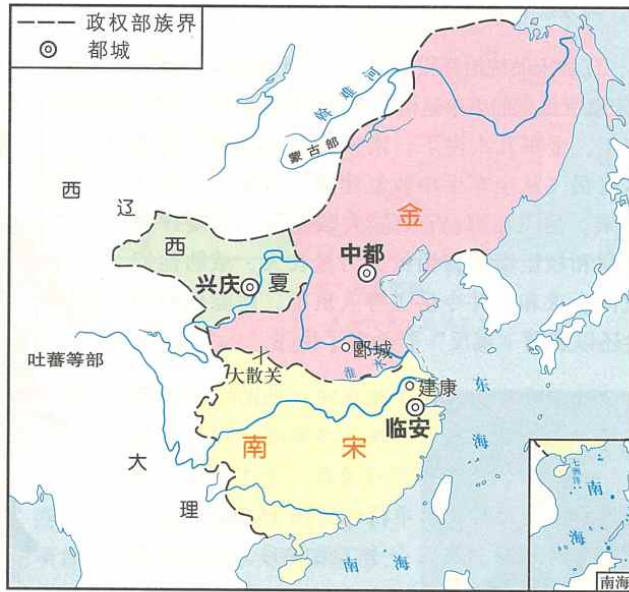
금과 남송시기를 표시하며, 남송과 금은 회수와 대산관이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금의 영역은 남송의 북쪽으로부터 서쪽은 西夏와 접하고, 서북쪽은 韓難河의 몽골종족(蒙古部) 거주지가 보이는데, 요에 비해서는 한층 남쪽으로 축소된 형태이다. 한반도에서는 압록강 입구에서 함흥일대를 잇는 선, 그리고 북방지역 동쪽은 遼代와 같이 외흥안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고혈도 북쪽 맞은편에 이른다.

27)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5쪽.

28) 역사교학대강본에서는 “악비가 금을 반대하여 견지한 정의의 투쟁은 광범한 인민들의 존경을 받았다”(義務教育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 人民教育出版社(연변교육출판사), 2002년 10월 인쇄, 70쪽)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분명히 남송과 금과의 전쟁에서 남송은 정의, 금은 불의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9)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53쪽.

[지도] 金과 南宋의 대치 형세³⁰⁾



金、南宋对峙形势

이상에서 살펴본 바, 辽·西夏와 北宋은 결국 중원(북송)이 동북지방(요)과 서북지구(서하)의 국가(민족)에게 군사상의 패배와 굴욕적인 대우를 감수하는 관계였다. 여기서 요나라로 대표되는 동북지방은 어디까지나 중원, 즉 중화의 세계가 아니다. 금과 송의 대립을 서술하면서, 송의 인물을 금에 굴복하려는 부류와 금에 저항하며 영토를 되찾으려는 인물로 이원적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후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악비에 대한 본문의 강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컬럼에서 부연설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송나라를 正統으로, 요나라와 금나라를 비정통으로 설정하고, 요와 금에 의한 중국 북부지방의 점유를 중원 왕조에 대한 侵入으로 기술하고 있다. 요와 금에 대하여 비우호적인 서술은 금에 대해 향전한 악비를 높이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된다.

요와 북송, 금과 남송의 관계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주로 북송과 남송의 입장에서 요와 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굴욕을 당하였고, 이에 저항한 악비의 행적을 강조하고 있다. 송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송은 평화, 그리고 요·금은 전쟁, 침략의 이미지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북송이 요와 맺은 전연지맹은 굴욕적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 더하여 새로이 양국 간에 교역과 문물이 활발히 교류하였던 장점도 있음을 제기하

30)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54쪽.

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³¹⁾

결과적으로 요·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두 나라가 10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북방지역, 나아가 중원왕조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방지역의 영역은 요와 금 시기 서북쪽은 몽골족의 성장에 따라 금 시기에는 요에 비해 남쪽으로 축소되어 경계가 짓고 있다. 그러나 동북방의 경계는 요와 금이 차이가 없다. 외흥안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뻗어 고혈도 북쪽의 동해에 이르는 것을 경계로 삼고 있다. 또한 한반도의 고려와는 압록강에서 함흥을 잇는 선이 경계가 되고 있다.

3) 원대의 동북방

금이 몽골에 의해 멸망되면서 북방지역의 세력판도도 변하였다. 중국역사 교과서는 “제12과 몽골의 흥기 및 원조의 수립”이라는 항목에서 칭기스칸의 몽골족 통일과정과 원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북방의 몽골고원에서 몽골족이 테무진을 大汗으로 추대하고 칭기스칸이라 하고 그에 의해 몽골국이 수립되었다 하고, 특히 칭기스칸의 정복활동을 설명하며, “그와 그의 자손들은 금, 서하와 남송과 작전한 외에도 구라파의 두나이강 유역까지 곧바로 쳐들어갔다”고 하였다.³²⁾

[구비라이가 원조를 수립]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후 몽골군대는 서하와 금을 계속 멸망시키고 남송에 대한 포위 태세를 취하였다. 후에 구비라이(忽必烈, 칭기스칸의 손자)가 칸위에 즉위하였다. 1271년에 구비라이는 국호를 元이라 정하고 이듬해에 大都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구비라이가 바로 元 世祖이다. 1276년에 원조군이 임안을 점령하고 남송황제를 포로로 잡자 남송이 멸망하였다. 항전파 대신 文天祥은 계속 원조에 저항하였다. 얼마 후에

31)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요와 금도 외국과의 왕래가 매우 많았다. 高麗, 일본, 페르샤, 아랍은 모두 요, 금과 무역 왕래를 하였다. 금조는 고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변경무역이 빈번하였으며, 상호 소통이 있기도 없기도 하였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59쪽)라며 요와 금의 입장에서 외국과 교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나, 현재의 과정표준 교과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송·요·금에서 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3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67쪽.

광동연해에서 패전하여 포로가 된 그는 대도에 구금당하였다. 굳센 의지를 굽힐줄 모르는 그는 송고한 절개를 보여주었으며 나중에 살해되었다.

문천상이 포로가 된 후 원조의 장령이 그에게 항복을 권하였지만 문천상은 거절하였다.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여 그는 비분강개하게 천고에 유전되어온 “零丁洋을 지나면서”라는 시를 써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으려는 결심을 표시하였다.³³⁾문천상이 대도에 구금되었을 때 그의 재질을 중시한 구비라이는 직접 그에게 항복을 권하였고 또 높은 벼슬자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도 문천상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호기가 넘치는 “正氣歌”를 썼다.³⁴⁾

<자유열독카드> 영원히 호기가 넘치는 문천성사

일명 文丞相祠라고도 하는 문천상사는 명조초기에 건설되었으며 북경 동성구 府學胡同에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원래 문천상을 감금하였던 지하감방이었다. 원조통치자들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문천상은 높은 인격과 굳은 절개로 끝끝내 동요하지 않았으며 감방에서 천고에 읊어 내려온 “정기가”를 썼다. 뜰안에는 우뚝 솟은 늙은 대추나무가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나무는 문천상이 심은 나무라고 한다. 경사진 나무줄기는 남쪽방향을 향하여 지면과 45도 각을 이루고 있다. 이 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천상의 “자침과도 같은 신하의 마음 / 기어코 남방을 가리키리라”라는 감정을 연상하게 한다. 지금 사안에는 문천상의 일생사적과 관련한 문화유물과 도판들이 진열되어있다.(94쪽)

역사교학대강본에는 원조의 민족융합 항목에 이어 ‘民族分化政策’이라는 항목에서 “몽골귀족은 여러 민족 지주계급과 결탁하여 공동으로 여러 민족 인민들을 압박하였다”고 하고, 원조내의 민족을 4개로 나누어 차별대우한 것을 기술하고 있었다.³⁵⁾현재 과정표준 역사교과서에서는 앞의 내용이 없고, 원조에 대한 저항은 ‘문천상’의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송의 멸망과정에서 원조의 지배에 저항한 文天祥의 기개를 높이 평가, 서술하고 있다. 항금의 악비에 버금가는 인물로서 문천상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서 한족의 송

33) 시의 끝 두 구절은 “인생은 자고로 뉘 아니 죽으랴 / 일편단심 고이 남겨 청사에 빛내리”(義務教育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 人民教育出版社(연변교육출판사), 2002년 10월 인쇄, 84쪽).

34)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67쪽.

35) 민족 중 1등은 몽골인, 즉 몽골족이고, 2등은 色目人인데 이전의 西夏人과 畏兀儿人 등을 포함하고, 3등은 漢人으로, 이전의 금 통치지구의 한족과 거란, 여진 등의 족이고, 4등은 南人으로 이전의 남송 통치구의 한족과 기타 여러 민족이다(『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64쪽).

이 몽골족의 원에 멸망당한 것에 대한 역사교과서의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원조 지배에 항거한 문천상을 기리는 사당을 명조 초에 건설한 것은 명을 세운 한족이 이전의 몽골족의 지배가 옳지 않고, 명조의 건립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현재의 중국이 명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원조와 관련된 내용 중 과정표준과 역사교과대강본의 차이의 하나는 바로 문천상에 대한 기술이다. 과정표준이 역사교과대강에 비해 전체적으로 분량이 줄어 내용이 줄었음에도 문천상에 대한 기술은 증가하였다. 위의 자유열독카드의 내용이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역사교과서가 몽골족에 저항한 남송의 입장에 있다는 의미이고 또한 국가가 외침을 받았을 때 충성을 다하는 인물을 강조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역사교과대강본에는 문천상에 대한 내용에 더하여 “원조군이 임안을 점령한 후 남송의 대신인 張世杰, 陸秀夫 등이 전후로 열 살도 안되는 두 어린 황제를 옹립하여 동남 연해에서 떠돌아다녔다. 원조군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였는데 쌍방은 치열한 해전을 벌였다. 1279년에 원조군이 애산을 겹겹이 포위하자 육수부는 어린 황제를 안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義務教育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 人民教育出版社(연변교육출판사), 2002년 10월 인쇄, 84쪽)는 내용이 있다. 즉, 역사교과대강본이 남송의 원조 침략에 대한 저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역사교과서는 元代 몽골족을 비롯한 변강 민족들이 중원과 강남으로 이주하며 한족과 잡거하며 민족융합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융합의 발전]

원조 때에 많은 한족들이 변강에 가서 변강의 개발에 기여하였다. 몽골족을 망라한 변강의 여러 민족들이 중원과 강남에 대량으로 이주하여 한족 등 민족과 잡거하였다. 그 먼저 황하유역에 들어온 거란족, 여진족 등 민족은 장기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한족들과 별다른 구별이 없게 되었다. 당조 이래 중국에 정착한 적지 않은 페르샤인,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신앙하였다. 그들은 한족, 몽골족, 외울족(주1:원조, 명조 시기에 회홀을 畏兀儿이라고 불렀다. 외울은 지금의 위그르족이다) 등 민족들과 장기간 잡거하여 서로 통혼하고 점차 융합되면서 새로운 민족인 回族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원조 경내에서의 대규모적인 인구유동은 여러 민족의 경제, 문화의 발전과 융합을 촉진하였다.

원조 때에 嶺北지구에 대량의 한족과 서역의 장인들이 들어오자 이 지방의 수공업이 발전하였다. 화림을 방문한 프랑스의 한 선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도시의 한족주민들은 거의 모두 장인들이었다. 그들은 당지에서 집을 짓고 비단을 짜고 금은기물과

옥기들을 제조하였다. 많은 회족상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였다. 그들은 서역, 漠北과 중원지구를 드나들면서 양식과 견직물로 유목민족의 성축, 모피들을 바꾸어왔다. 원조시기에 운남지구에서 몽골족과 회족들이 이주해갔는데 원조정부에서 파견한 최고 책임 지방관리가 바로 회족사람들이었다.…³⁶⁾

원조 시기의 민족융합을 한족이 변강개발에 기여한 점, 그리고 변강민족이 중원과 내지에 이주하여 한족과 융합을 이루었다는 두가지 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몽골족·거란족·여진족·외옥족이 한족과 장기간 잡거·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란족·여진은 한족과 별다른 구별이 없게 되었고, 페르시아인·아랍인은 한족·몽골족·외옥족과 잡거·통혼하며 새로운 민족인 회족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원조 때에 영북지구, 즉 오늘날의 몽골국 지역이 한족과 서역의 장인들에 의해 수공업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족들이 몽골국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 지역의 개발에 이바지한 것을 강조하는 기술이다.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영북지구로 간 한족장인들이 전쟁과정에서 포로였다고 하였다. “통일전쟁에서 포로된 内地의 많은 漢族 工匠들이 嶺北으로 갔다. 몽골군이 西征한 후 畏兀儿의 많은 공장들도 내지로 옮겨왔다. 원조정부에서는 또 한족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영북·외옥 등지에 보내 屯田 임무를 맡게 하였다. 운남에서 원조 정부는 몽골족·한족·외옥족으로 구성된 군대를 파견하여 변방을 지키고 둔전을 다루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조경내에서의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민족융합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경제,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다”³⁷⁾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국역사교과서의 요·금·원시기에 대한 서술은 한족 입장에서 중원을 빼앗긴 것에 대한 비분강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족 입장에서 북방민족을 이족시하는 관념이 밑바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많은 인물의 대부분이 송대 사람으로서 요·금·원의 지배에 저항하는 인물이다. 하물며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언급되는 인물이 대부분 송조 인물이고 요금원 출신은 없다. 가령, 송원문화의 특징의 하나로 노래 부르기 편리한 일종의 新體詩歌라는 詞를 들고 그 대표적 인물이 蘇軾(호가 東坡居士이다)·李清照·辛棄疾을 들고 있다.³⁸⁾ 본문에서 이들의 작품 및 특징으로 드는 기준이 강산, 중원 회복 등이다.

36)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69쪽.

37)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 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64쪽.

38)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78~79쪽.

특히 신기질이 젊은 시절에 북방에서 금에 반항하는 투쟁에 참가하였고, 남방으로 온 후 마음속에 줄곧 중원을 수복하려는 강한 뜻을 품고 있었고, 강산이 분열된 데 대한 비통의 감정이 토로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과서의 독자로 하여금 금에 의해 북송이 멸망되고, 중원을 잃은 것에 대한 회한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역사교과서에서는 원조의 영역을 본문과 지도를 통하여 표시하고 있다.

원조의 영역은 전례없이 광활하였다. 전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세조는 중앙에 中書省을 설치하고 지방에 行中書省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行省’이라고 약칭하였다. 우리나라 성급행정구의 설립은 원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원조정부는 西藏에 대한 관할(주3:원조정부는 중앙에 宣政院을 설치하여 장족지구의 행정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다)을 강화하였는데 서장이 원조의 정식행정구로 되었다. 원조는 또 유구(주4:유구는 지금의 대만이다)에 대한 관할을 강화하였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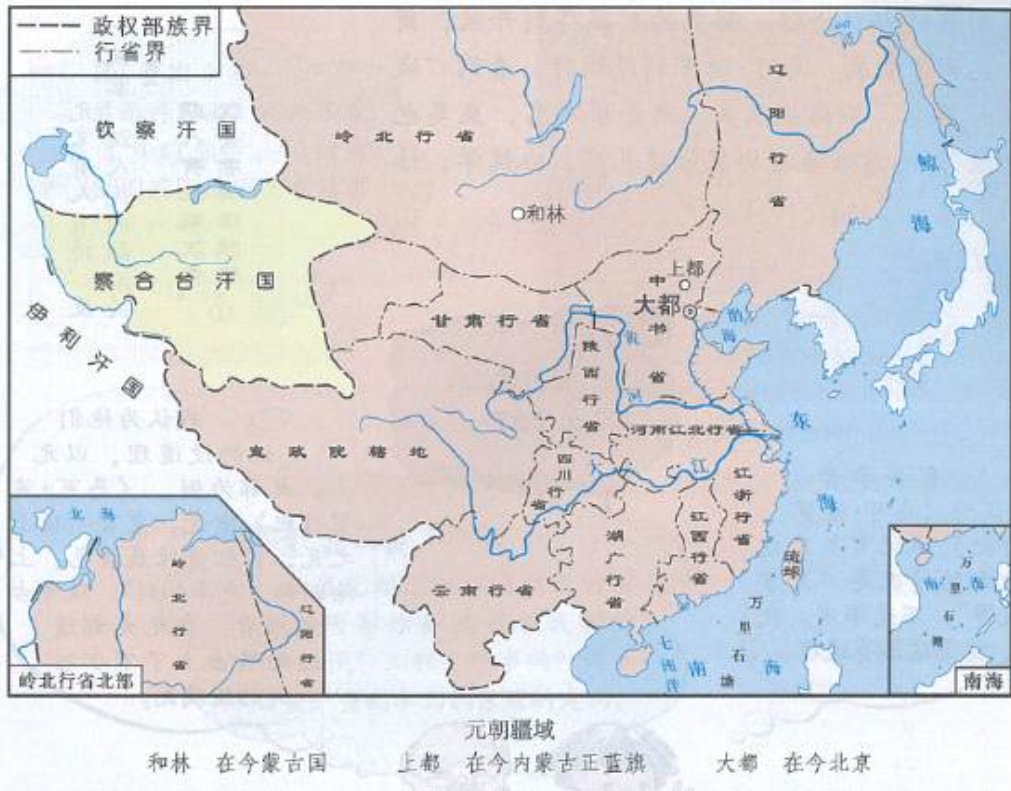
원조의 영역이 전례 없이 광활하였고 전국에 대한 효과적인 통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원세조는 중앙에 中書省을 설치하고 지방에 行中書省을 설립하였는데, 이를 ‘行省’이라고 약칭하였다. 우리나라 성급행정구의 설립은 원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언급은 행성이 설치된 곳은 바로 원의 직접지배를 받는 지역이고, 이것이 원조의 정식행정구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설명에 의한다면, 만주지역은 요양행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서장지구는 행성도 아니고, 중앙에 서장 행정을 담당하는 선정원이 있다고 하여, 선정원관할지로 표기하고 있다.

위의 원조의 강역도는 ‘政權部族界’ ‘行省界’로 경계를 표시하는데, 원조의 직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서하-몽골·운남, 그리고 요동을 포함한 북방지역은 ‘행성’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몽골지역은 영북행성이고, 만주지역은 요양행성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서쪽으로는 대도와 상도를 잇는 선을 남북으로 확장하여, 그 동쪽으로부터 금대의 외흥안령에서 고혈도 맞은편을 훨씬 넘어 북쪽으로 확장되어 있다. 한반도와는 압록강 입구에서 원산만을 잇는 선에서 정권종족계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조의 강역 지도에서 서쪽은 킨차칸국·차허타이칸국·일리칸국이 있고, 다시 선정원관할지가 정권종족계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39)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68쪽.

[지도] 元朝의 강역(화림-지금의 몽골국 경내, 상도-지금의 내몽골 쉈른호호기, 대도-지금의 북경)40)



4. 清代의 동북방 지역

원대 이후 동북방과 관련된 내용은 후금과 함께 다시 등장한다.41)

40)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69쪽.

41) 명대에는 포르투갈이 澳門을 차지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정도이지만, 이것도 외세로부터 중국의 영토가 침정당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일환이다.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98~99쪽).

1) 청 건국 전후

[滿洲의 흥기와 清朝의 건립]

女眞은 우리나라 동북지구에 거주하던 오랜 민족이며, 명조 전기에 奴兒干都司(주1: 명조가 설치한 놀간도사는 그 관할범위가 지금의 흑룡강, 우수리강, 송화강 유역 등지와 고철도였다)의 관할에 속하였다. 명조 후기에 여진의 걸출한 수령 努尔哈赤가 여진의 여러 部를 통일하였다. 1616년에 누르하치는 스스로 汗이라 칭하고 국호를 金(주2:허투알라에 도움을 정하였는데 지금의 요녕성 신빈이다)이라고 하였다. 역사에서 이 왕조를 後金이라고 한다.

명조에서는 그를 建州衛(주1:명조가 동북 여진지구에 설치한 방어구역의 하나였다)의 軍事長官으로 임명함과 동시에 龍虎將軍을 더하여 책봉하였고, 수차나 戰功을 세웠다. 그는 30여년의 전쟁을 거쳐 여진의 여러 부를 통일하는 사업을 완성하였다.

후금은 명조의 민족 압박에 반항하여 군사를 일으켜 명조를 공격하였는데 몇 년 사이에 명조의 遼東 70여개 성을 탈취하였다. 누르하치는 도움을 심양에 옮긴 후 盛京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누르하치가 죽은후 皇太極이 汗位를 계승하였다. 그는 생산 발전을 중시하고, 내정을 개혁하였으며 또 인재를 선발하는 데 주의하고, 몽골의 각 部와 연합하여 세력을 부단히 확대해갔다. 황태극은 여진족 명칭을 滿洲로 고쳤다. 1636년에 그는 성경에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淸으로 고쳤다. 황태극이 바로 淸 太宗이다. 그후 청태종은 명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1644년에 청군이 關內로 들어가, 북경에 도움을 옮겼고 점차 전국에 대한 통치를 수립하였다.

황태극이 민족의 명칭을 고친 목적은 일찍 여진인이 명조에 臣服한 역사를 의식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으로 淸과 明이 평등하다는 것을 표시하며, ‘犯上’이란 죄명에 대한 部衆의 심리압력을 해소하고 장병들의 투지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었다.⁴²⁾

동북지구의 오랜 민족 여진의 걸출한 수령인 누루하치에 의해 명조를 대신한 금이 건국되었다고 한다. 누루하치가 세운 금을 후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주족이 전대의 금의 후신을 자처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後金の 興起]라는 항목이 “제19과 변강민족의 발전과 대외관

42)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99~100쪽.

계”라는 과에 있고, 후금 항목 앞에는 [알탄칸(俺答汗)과 明朝의 친선]이라는 항목에 元順帝가 북쪽으로 달아난 후 몽골이 韃靼 등의 部로 분열되었고, 16세기 중기에 달단부의 수령인 알탄칸(俺答汗) 때 명조와 교류한 것을 기술하였다.⁴³⁾ 여기서 역사교과대강본에서는 달단과 여진을 변강민족으로 보고, 후금이 변강민족에 의해 건국된 것으로 기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 사람들의 청의 지배에 대한 저항을 ‘반청투쟁’이라 표현하고, 특히 청군의 北京 점령 이후 명조 관료들이 南京에서 조성한 작은 조정, 즉 南明을 진압한 후 청이 漢人들에게 머리와 복종을 만주사람들의 것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을 [南明과 인민의 反清鬪爭] 이란 항목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⁴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과정표준 역사교과서에는 이 단원 전체가 삭제되었다.

청 건국 후인 17~18세기, 중국역사 교과서의 영토기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臺灣⁴⁵⁾·新疆⁴⁶⁾·西藏이다. 교과서의 課 위의 單元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活動課’인데 3단원은 그 주제가 ‘신강·서장·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로서, 본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新疆, 西藏, 臺灣은 예로부터 中國의 領土이다.

나는 祖國을 사랑한다. 또한 조국의 大自然의 경치를 사랑한다.

나는 조국의 산천과 대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포기의 풀, 한 그루의 나무, 한

43)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87~88쪽

44) 『九年義務教育三年制初級中學教科書 中國歷史』第2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1월 제1판 ; 2002년 10월 제2차 인쇄), 96쪽.

45) 대만은 명조 후기에 荷蘭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淸初에 동남연해일대에서 ‘반청투쟁을 견지하고 있던 鄭成功’이 공격하여 수복한 것을 서술하고 있다. 鄭成功(1624~1662)이 대만공격시 하란 植民長官 쿠이(揆一)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만은 중국땅이지만 오래동안 귀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찾으러 왔은즉 반드시 돌려야 한다.”고 한 것을 통하여, 현재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성공의 화란으로부터의 대만 수복은 현재의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만의 원주민인 高山族으로부터 정성공이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매개가 차, 천 등 일용품이었다.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03~104쪽).

46) 서북의 天山산맥 이남의 광대한 지역에는 위글족 등 민족 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청대에 보통 이 지역을 “回部”라 하였고, 청조는 伊犁將軍을 설치하여 발하슈호(巴尔什湖)를 망라한 전반 新疆地區를 관할하였다고 한다(『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11쪽).

송이의 꽃, 하나의 돌덩이도, 한 장의 벽돌, 한 조각의 기와도 나는 또한 친근하게 느껴지며, 여운이 남고 愛撫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

나는 우리의 조국대지를 사랑한다! 광풍이 이 대지를 휩쓴 적도 있고 우박이 대지를 두드린 적도 있었으며 빙설이 대지를 푹푹 얼게 한 적도 있었고 세찬 불길에 대지를 불태운 적도 있었고 폭우가 마구 쏟아내린 적도 있었다. … 시련을 겪은 대지였건만 여전히 말없이 그대로 살아있다. 봄이 오면 대지는 또다시 소생하여 신심 가득히 넘쳐나는 생기와 여러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경치를 보여준다.

절절한 정에 넘치는 이 글은 이미 세상을 뜬 한 작가의 산문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我愛我的祖國)”에서 발췌하였다. 조국의 산천, 조국의 역사는 정직한 中華의 아들 딸들의 조국에 대한 진지한 감정의 영원한 원천이며 中華民族이 세계민족의 대열속에서 자립하는 토대이다. 우리 함께 조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조국의 산천을 기억해 두자.

<활동 내용>

‘신강, 서장,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는 주제로 역사지식경연을 벌인다 (동북지구의 학교는 ‘동북지구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는 내용을 더할 수 있다).

<활동 목적>

‘신강, 서장,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는 역사지식경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국의 疆域, 領土主權에 대한 역사적 공감을 높이도록 하며, 인문 지식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정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며, 단체의식과 경쟁의식을 배양하도록 한다.

<활동 요구> (생략)

<활동 提示>

2. 경연참가자들은 ‘신강, 서장,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에 관련한 지식을 사전에 열독, 정리하고 장악하여야 한다. 중요한 역사 인물, 사건, 제도, 기구에 유의하여야 하고 중요한 시간과 공간(지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런 地區가 正式으로 中央政權의 管轄에 歸屬된 情況 및 正식으로 귀속되기 전후에 內地와 내왕한 正황에 유의하여야 한다. …

6. 학급에서의 경연을 토대로 학년에서 경연을 벌릴 수 있다.⁴⁷⁾(173쪽)

47)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32~134쪽.

중국 역사교과서의 중요 목적이 영토교육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3단원의 ‘활동과’이다. 여기서는 조국의 산천, 조국의 역사는 정직한 중화의 아들 딸들의 조국에 대한 진지한 감정의 영원한 원천이며 중화민족이 세계민족의 대열 속에서 자립하는 토대라 한다.

동북지구의 학교에서는 본 활동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 즉, 경연활동에서 예시한 주제 이외에 “동북지구의 학교들에서는 ‘동북지구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는 내용을 더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중국이 신강·서장·대만에 이어 잠재적 영토문제가 있는 지역이 동북지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교과서의 서술내용에 한정하여 추정한다면, 청대 러시아에 약탈당했다는 동북방 외흥안령 지구,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경연참가자들에 대한 요구는 ‘신강, 서장, 대만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이다’에 관련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중요한 역사 인물, 사건, 제도, 기구에 유의하여야 하고 중요한 시간과 공간에 유의하고, 이런 지구가 정식으로 중앙정권의 관할 하에 귀속된 정황 및 정식으로 귀속되기 전후에 내지와 내왕한 정황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본 경연에서 유의할 부분은 앞의 지구가 중국의 영토라는 기본지식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지구들이 중앙정권의 관할에 귀속 정황과 귀속후의 내지와 내왕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각 지역의 영토교육에서의 핵심적인 관점이고, 교육목표인 듯하다.

청조 동북지방에서의 영토 기술은 17세기 중엽, 러시아와의 국경확정에 대한 것이다.

제18과 臺灣 수복과 帝政 러시아(沙俄)에 대한 반격

[야크싸(雅克薩)에서의 싸움]

17세기 중기, 帝政 러시아 세력이 우리나라 흑룡강 유역을 침입하여 야크싸(雅克薩)와 니부추(尼布楚)에 城堡를 쌓고, 침략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그들은 중국 영토에서 방화, 살인, 약탈을 감행하였으며 심지어 짐승같이 사람고기를 먹었다. 청군과 여러 민족 인민들은 용감하게 저항을 진행하였다.

帝政 러시아는 원래 유럽국가로서 우리나라와 영토를 접하지 않았다. 16세기 후기부터 帝政 러시아는 우랄산맥을 넘어 점차 동쪽으로 팽창하였으며 또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와 영토를 접하게 되었다.

帝政 러시아 침략자들은 야크싸를 점령한후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소수민족인 따고르족(達斡爾族) 사람들의 城寨에 기어들었다. 그자들은 따고르인들에게 황제에

게 ‘모피공물’을 바치라고 강요하였다. 따고르인들은 ‘우리는 중국의 順治皇帝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줄 공물이 어디에 있는가?’고 대답하였다. 따고르인들은 일제히 활을 쏘면서 침략자들이 성새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였다. 帝政 러시아 침략자들은 대포로 성새에 돌파구를 낸 다음 쳐들어왔다.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따고르인들은 긴 창을 들고 적들의 총포에 대항하였다. 침략자들은 잔인한 대학살을 감행하여 온 성새를 피바다로 만들었다. 재난에서 벗어난 사람은 15명 밖에 안되었다.

조국강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康熙皇帝는 청군에 수로와 육로를 병진하여 야크싸에 동지를 틀고 있는 침략군을 포위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帝政 러시아 침략군은 할수없이 투항하였으며 더는 야크싸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청군이 철수한 후 帝政 러시아 침략군은 신용을 지키지 않고 재차 야크싸를 점령하였다. 강희황제는 다시 군대를 파견하였다. 반년간의 전투를 거쳐 침략군 두목 톨프진(托尔布津)이 격살당하고 800여명의 침략군에서 겨우 60여명이 살아남았다. 帝政 러시아정부는 할수없이 담판을 통하여 중국-러시아 두 나라 東段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였다.

1689년에 중러 쌍방대표는 니부추에서 담판을 진행하였는데 평등한 협상을 거쳐 첫 국경조약 “니부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庫頁島를 망라한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지역이 모두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법률상으로 긍정하였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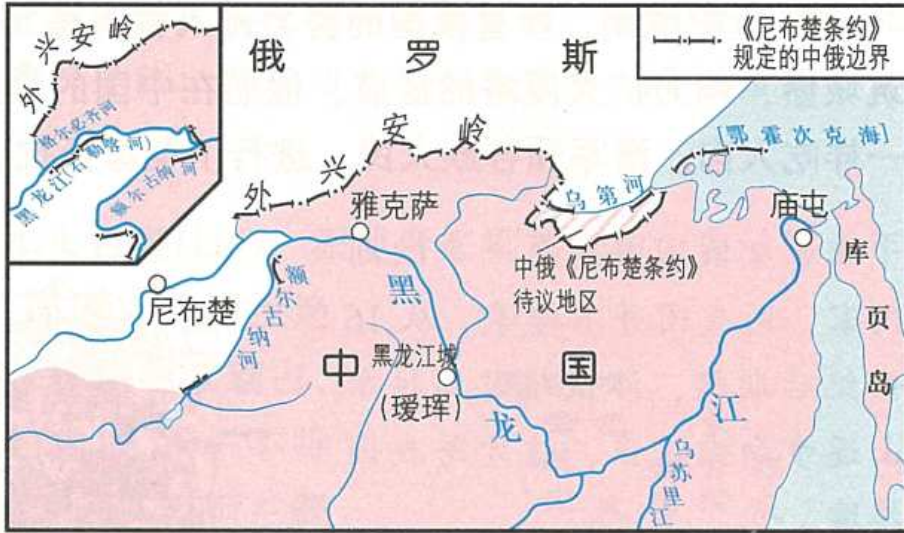
帝政 러시아가 16세기 후기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점차 동쪽으로 팽창하면서 중국과 경계문제가 발생하였다. 17세기 중엽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으로 진출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던 따고르족과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교과서에서는 따고르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나아가 따고르인들이 러시아의 모피공물 요구에 ‘우리는 중국의 순치황제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줄 공물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청의 관할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후 청과 러시아간의 야크싸 충돌에서 청측이 승리한 후 양국은 1689년에 중러 쌍방대표는 니부추에서 평등한 협상을 거쳐 첫 국경조약 “니부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고혈도를 망라한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광대한 지역이 모두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법적으로 긍정하였다고 하였다.

교과서는 청대 만주지역, 즉 동북지역의 북쪽 경계 획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1689년의 국경협정이 맺어지게 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보조문·지도·사진·활동탐구 등의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48)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05~106쪽.

[지도] ‘니부추조약’에서의 중국-러시아 국경 설명도(니부추-지금의 러시아 네르친스크, 묘둔-지금의 러시아 니콜라예브스크, 야크싸-지금의 러시아 경내)⁴⁹⁾



《尼布楚条约》中俄边界示意图

지도는 ‘니부추조약에 규정된 중국-러시아 변계’를 표시하고 있는데, 니부추에서 흑룡강 북쪽의 외흥안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뻗어 오호츠크해에 이르는 선이 경계가 되고 있다. 흑룡강 하류 맞은 편 고혈도는 중국 영역 내에 표시되어 있다.

청조 전기의 영역에 대해서는 본문과 지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청조 전기에 우리나라 영역은 서쪽으로는 忽崙을 지났고 서북쪽으로는 발하슈호(巴尔什湖)에 이르렀으며 북쪽으로는 西西베리아와 접하고, 동북쪽으로는 흑룡강 이북의 外興安嶺과 庫頁島에 이르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하고, 동남쪽으로는 臺灣 및 대만에 부속된 섬들인 釣魚島·赤尾巖 등 섬들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南海諸島(주1: 남해제도)에는 동사군도·서사군도·중사군도·남사군도 등 4대 군도와 황암도 등이 망라된다. 남해제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 명조·청조 때에 남해제도를 ‘만리장사’·‘천리석당’이라 불렀으며 광동성 경주부의 만주에 귀속시키었다)에 이르러, 아시아에서 최대 국가가 되었다.

청조의 광활한 영토에는 漢·滿·蒙·回·藏 등 50여 개 민족이 살고 있었다. 청조는 변강지구에 機構를 나누어 설치하여 효과적인 관할을 진행하였다. 청조의 통일은 여러

49)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06쪽.

민족간의 경제·문화 연계를 강화하여 변강지구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된 다민족국가가 한층 공고해지도록 하였다.

淸 정부는 전국을 直隸 등 18개 省 ; 盛京, 길림, 흑룡강, 일리(伊犁), 우리아썬타이(烏里雅蘇台) 등 5개 將軍割區 ; 西藏, 西寧 두 개 辦事大臣割區 등 도합 25개 省級 행정구역과 內蒙古盟旗 등으로 구분하였다. 淸 정부는 각 省, 區에 總督, 巡撫, 將軍, 辦事大臣을 두고 지방을 관리하였으며 중앙에 또 理藩院을 설치하여 소수민족사무를 관장하였다.⁵⁰⁾

[지도] 청조의 강역⁵¹⁾



위의 기술은 청조 시기의 영역에 대한 개관의 글이다. 청조 전기에는 서쪽으로는 忽崙을 지났고 서북쪽으로는 발하슈호에 이르렀으며 북쪽으로는 시베리아에 잇닿았고 동북쪽으로는 흑룡강 이북의 외흥안령과 고혈도에 이르렀으며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임하고 동남쪽으로는 대만 및 대만에 부속된 섬들인 釣魚島, 赤尾巖 등 섬들에 이르렀으며 남쪽

50)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12~113쪽.

51)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7年級 下冊(人民教育出版社, 2001년 12월 제1판; 2011년 11월 제10차 인쇄), 112쪽.

으로는 남해제도를 망라하였다고 한다.

청조의 광활한 영토에는 한족, 만족, 몽골족, 회족, 장족 등 50여개 민족이 살고 있었다. 청조는 변강지구에 각기 기구들을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관할하였다. 청조의 통일은 여러 민족 간의 경제적·문화적 연계를 강화하여 변강지구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된 다민족국가가 진일보로 공고해지도록 하였다고 한다.

청의 영역을 25개 성급 행정구역과 내몽골맹기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만주·북방지역은 盛京, 길림, 흑룡강, 일리, 우리아쑤타이 등 5개 장군관할구라고 하였다. 이곳은 이른바 성급 관할구와 엄밀히 구분되었는데, 그 차이에 대해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지도는 '1820년 청조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서쪽에서는 서장·신강을 모두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만주지역은 외흥안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흘러 廟屯(지금의 러시아 니콜라예브스크) 북쪽, 고혈도 북쪽이 포함되고 있다. 단, 이 지역에 중국-러시아 니부추조약에서의 미정지구가 있음을 표기하고 있다. 한반도는 두만강과 압록강이 경계가 되고 있다.

2) 개항과 근대 시기

동북방 지역의 영토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제2차 아편전쟁 전후이다. 중국역사 교과서는 이 부분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리 나라의 광활한 영토를 侵占]

제2차 아편전쟁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불만 집에서 도적질하는 격으로 청 정부를 강박하여 일련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동북영토와 서북영토를 도합 150여만 평방킬로미터나 분할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불평등조약을 통하여 분할 점령한 중국 북방영토 일람표

시간	불평등조약의 명칭	분할 점령한 영토범위	분할 점령한 영토면적
1858년	중로 “애훈조약”	중국 동북 외흥안령 이남, 흑룡강 이북	60여만평방킬로미터
1860년	중로 “북경조약”	고혈도를 포괄한 중국 우쑤리강 이동	약 40만평방킬로미터
1860년	중로 “북경조약”	중국 발하슈호 이동, 이남	44만여평방킬로미터
1864년	중로 “서북국경측량획정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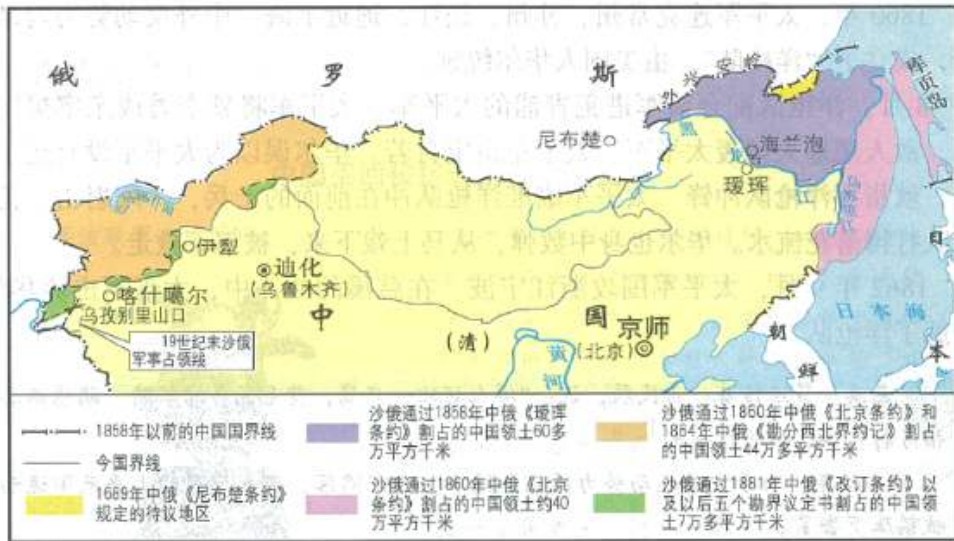
	기록”		
19세기 80년대	중로“개정조약” 및 그후의 다섯 개 국경측량의정서	중국 서북부	7만여평방킬로미터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年級上冊, 人民教育出版社(연변교육출판사), 2005년 5월 인쇄, 10쪽)

1858년에 帝政 러시아 동부시베리아 총독은 兵船을 이끌고 瓊瑯城에 이르러, 청조의 黑龍江將軍 奕(클, 겹칠 혁)山에게 중로변계를 다시 구분하자는 무리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혁산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帝政 러시아의 동부시베리아 총독은 기세등등하여 혁산을 찾아왔다. 그는 ‘河로 경계를 삼자’, ‘同義 여부는 나는 내일까지만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팔소매를 뿌리치고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날 저녁 帝政 러시아 병선들은 대표를 쓰면서 시위하였다. 부패무능한 혁산은 굴복하였다.

[지도] 러시아가 중국의 북방영토를 분할 점령한 설명도⁵²⁾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8年級上冊, 人民教育出版社(연변교육출판사), 2005년 5월 인쇄, 11쪽)



俄国侵占中国北方领土示意图

청나라가 영국·프랑스 연합군 간에 1856년부터 1860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제2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하기 전후, 러시아가 그 틈을 타고 중국의 동북 영토와 서북 영토를

52) 이상은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年級 上冊(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3월 제 2판; 2010년 5월 인쇄), 8~9쪽.

불평등한 조약으로 강탈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1858년에 러시아 동부시베리아 총독이 애훈성에 들어와 청조의 흑룡강 장군 奕山에게 중로변계를 다시 구분하자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영토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 이 지역에 대한 영토를 넘겨주는 결정을 내린 흑룡강 장군과 청조의 관계는 어떠한지, 흑룡강 장군이 이러한 영토 획득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의 분할 점령도는 앞의 일람표의 내용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동북방, 즉 1858년 애훈조약으로 흑룡강 북쪽으로부터 외흥안령까지의 영토 60여만km²를 러시아에 할양하였고, 다시 1860년 북경조약으로 흑룡강 이남으로 우수리강 동쪽, 그리고 고혈도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빼앗겼다는 150여만 평방킬로미터 중 100만 평방킬로미터가 바로 동북방 지역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중국 동북지방, 만주지방의 영역이 흑룡강 이남, 우수리강 서쪽으로 설정되는 것이 이때로 보인다.

이밖에 新疆 지역이 청의 영역에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강을 수복하다] 라는 과에서 신강이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는데, 1865년 중앙아시아의 호칸드국(浩罕國)이 침입을 받은 후 1876년에 左宗棠이 청군을 이끌고 신강에 진입하였고, 1878년에 일리(伊犁) 이외의 신강이 또다시 조국의 품속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그후, 1884년에 청 정부는 좌종당의 건의에 따라 신강에 行省를 설립하였다고 한다.⁵³⁾

5. 맺는말

중국 역사교과서는 각 시기별 단원, 과의 내용이 주로 현재의 중국을 구성하는 소수민족, 중국 영토의 형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민족의 역사, 그리고 중국 영토의 역사가 교과서에서 중점을 두는 주제이다.

심지어 역사의 주요 구성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내용에서도 앞의 전체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가령 각 단원·과에서 등장하는 인물도 바로 민족융합, 영토확정, 영토수호와 관련된 인물이다. 단, 여기에서 중국 민족, 중국 영토라고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국민족은 현재 한족을 비롯한 56개 민족이 구성원인데, 교과서 내용은 한족이 중심으로 이민족에 의해 한족이 압제를 받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애쓴 인물(가령 악

53) 『義務教育課程標準實驗教科書 中國歷史』 8年級 上冊(人民教育出版社, 2006년 3월 제2판; 2010년 5월 인쇄), 12~15쪽.

비, 문천성, 정성공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족이 아닌 상대 민족의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현재의 중국 역사교과서가 56개 민족의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족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주지역, 즉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말하는 동북지역, 즉 요동과 오늘날 흑룡강·길림성·요녕성이 요, 금대에 이미 관할지역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요·금의 발상지로서의 의미가 강한 지역임에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연고나 주민에 대한 설명이 없이 중국사의 당연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장이나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기별로 중국과 이 지역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행정지구가 되었다느니, 혹은 중원왕조가 이 지역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이 해당 시기 설명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역사교과학대강본에 비해 현재의 과정표준 교과서는 북방지역과 이 지역의 민족에 대한 서술이 줄어들었지만, 영토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늘어났다. 중국 역사교육의 방향이 영토·민족문제를 중시해가는 변화를 교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동북방 지역 서술 - 민족과 영토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박 장 배

(동북아역사재단)

이 글은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중국 동북방 지역의 민족과 영토문제를 개괄한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역사지리 인식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서술이 현재의 중국 영토에 속하는 지역이면 과거까지 중국 강역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한 현재주의적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은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논리에 따른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토론자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해시기부터”라고 개괄하였다.(120쪽)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술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실제에 가깝지 않을까?

둘째, 동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1870년 이후에야 국경을 선으로 긋는 인식이 등장하였다는 지적들이 있다. 전근대의 국경지대 개념과 근대의 국경선 개념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발표자의 글에 나타나는 영토와 국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경 인식과 개념의 시대적 차이가 거의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교과서에는 ‘실지회복론’의 입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셋째, 같은 맥락에서 네르친스크조약(1689)은 베스트팔렌 조약보다 중요한 조약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조 시기의 판도가 매우 강조되는 것도 현재 중국 학계의 주류적 관점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연해주와 사할린 등 '잃어버린 땅'들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한 영토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최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원제국에 대해서도 서술의 비중이 낮은 편이라지만, 이민족 국가라는 이질성 때문에 그 활용도는 그다지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청 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평가를 주고 있지만, 청조는 영토를 대거 상실했다든지 하는 현대주의=최대주의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복왕조'론을 부인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라 역사시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비, 문천상에 대한 높은 평가, “요금원 시기의 서술이 한족 입장에서 중원을 빼앗긴 것에 대한 비분강개에 해당한다.”는(135쪽) 평가를 하고 있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화이론은 충돌의 여지가 큰데, 발표자는 화이론 입장에서 북방민족을 이적시하는 관념이 깔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애국주의와 한족중심주의의 괴리라고 보는가, 아니면 단순히 애국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가?

다섯째, 이 발표문은 교과서의 서술내용 중에서 영토나 경계 관련 내용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학계의 어떤 학설이 어떤 방식으로 교과서에 반영되었는가 것처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작업은 이 발표문에서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학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형 국책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나 하는 점도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

조 성 운

(경기대 사학과)

-
1. 머리말
 2.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영토문제 관련 기술의 추이
 3.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영토문제 서술
 4. 맺음말
-

1. 머리말

현재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중국과는 센카구제도(尖閣諸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일본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도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특히 2012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은 2005년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13년에는 정부의 주요인사가 참여하고 2014년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등 독도에 대한 침탈 의지를 보다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도, 국제

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기반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게시하여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역사학·지리학 등의 국내 학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의 교과서를 비롯한 제반 매체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점에 대한 연구이다. 신주백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의 변화 경향을 비교·분석하였고,¹⁾ 다와라 요시후미(俵義文)는 1990년부터 2000년 후반까지 일본 초중고등학교의 독도 기술을 분석하였다.²⁾ 손용택은 일본 교과서와 지리부도에 나타난 독도 표기의 실태를 검토하였다.³⁾ 남상구는 일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해설과 독도 기술 내용 전반을 살핀 바 있다.⁴⁾ 그리고 한철호는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독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⁵⁾ 이러한 연구는 인문학적 연구라는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8년 6월에는 한국해양연구원(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동해연구소를 경북 울진에 설치하고, 동해연구소의 독도전문연구센터와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를 설치하여 생태학적 측면에서 독도를 연구하고 있다.⁶⁾ 이는 역사학이나 지리학적인 인문학적 접근이 아닌 생태적인 접근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제반 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2013년 검정 통과된 현행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본에서는 영토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의 내용을 살핀 후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남구렁도, 센카쿠제도 등의 영토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1) 신주백,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독도에 관한 기술 변화」, 『독도연구』 8, 2010.
 - 2) 俵義文, 「竹島/独島は日本の教科書にどう書かれているか」, 『戦争責任研究』 64, 2009.
 - 3) 손용택, 「일본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다케시마)’ 표기 실태와 대응」, 『교과서연구』, 한국학술정보, 2010.
 - 4) 남상구,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창간호, 2012;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8, 2013.
 - 5) 한철호, 「독도에 관한 역사학계의 시기별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0, 2007.
 - 6) 동해연구소는 독도 해저지질 및 구조, 독도 해양물리 및 해양환경, 독도 주변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특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독도-울릉도-동해 연계 연구, 독도 주변 해양관측시설 구축 및 운영, 독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독도 4D 종합시뮬레이터 센터 운영, 국가지정 독도전문연구기관 운영 및 독도연구 성과 확산 등을 도모하고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2.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영토문제 관련 기술의 추이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서 교과서 기술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보다 상세하게 해설한 ‘학습지도요령해설’은 교과서 기술의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본의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고에서 검토할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역시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패전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을 살필 때 ‘학습지도요령해설’의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표1]은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영토문제 관련 기술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1]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영토문제 관련 기술 추이

연월일	내 용
1964.4.15	『사회』 : 관련 기술 없음
1972.5.31	『정치·경제』, 『지리』 : 관련 기술 없음
1979.12.25	『현대사회』, 『정치·경제』 : 관련 기술 없음 『지리』 :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해결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989.12.25	『현대사회』, 『정치·경제』 :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 사이에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국제평화 유지와 안정 그리고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넓은 시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지리A』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문제에도 착목시켜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리B』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4) 세계와 일본’의 ‘나. 일본의 지역성과 그 변용’과 관련한 조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1999.12.28	『현대사회』, 『정치·경제』 :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 사이에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국제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넓은 시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지리A』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문제 등을 거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지리B』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2009.12.24	<p>『현대사회』, 『정치·경제』 :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 사이에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국제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넓은 시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킨다.</p> <p>『지리A』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문제 등을 거론, 국경이 갖는 의의와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p> <p>『지리B』 :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p>
------------	---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영토문제의 서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197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의 『지리』부터였다. 이 1979년의 학습지도요령해설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해결의 영토문제’라 표현하여 어느 지역이 영토분쟁지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학습지도요령해설부터는 영토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방영토’(『지리A』) 혹은 ‘북방영토 등’(『지리B』)이라 기술함으로써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지리B』에서는 ‘북방영토 등’이라 기술함으로써 북방영토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영토분쟁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즉 독도문제를 염두에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9년에는 『지리A』와 『지리B』 모두 ‘북방영토 등’이라 기술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의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검정 통과된 제국서원판 『신지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영토문제는 원유 등의 천연자원과 민족의 분포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 것이 많다. 일본에서는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영토문제가 있다. 国後島, 択捉島, 齒舞群島, 色丹島으로 구성된 섬들은 이미 제정 러시아시대에 일러 양국이 인정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지금은 북해도에 귀속해 있다. 그러나 이들 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소련(현 러시아)에 점거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양국이 한층 우호관계를 구축한 후에 시급히 반환이 요구된다. 또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관해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오키나와현의 센카쿠제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학습사판 『지리A』에서는 “일본은 1996년에 어업전관수역으로 바꾸어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케시마 귀속문제가 있고, 중국은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해역은 잠정 수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는 러시아와 한국에 점거”(교육출판, 138쪽)되었다거나 “일본의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문제, 한국과의 다케시마 문제가 있고,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동경서적, 155쪽), “일본은 북방영토(홋카이도 동부의 에도로후섬, 쿠시나리섬, 시고탄섬, 하보마이섬)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다케시마(시마네현 바다)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해결 영토문제가 있다”(교연출판, 131쪽)고 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남쿠릴열도와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상태이거나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서술을 하였다. 『정치경제』에서는 “일본은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영토문제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 귀속을 둘러싼 대립, 중국과 센카쿠제도 문제가 있다”(제일학습사, 73쪽)고 기술하였다. 이렇게 보면 『지리A』, 『현대사회』, 『정치경제』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2009년 학습지도요령해설이 공포되기 이전에는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에서 ‘점거’, ‘영유권 문제’, ‘미해결의 영토 문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 중국과는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 러시아와는 남쿠릴열도에 대해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수준에서 기술하였다. 다만 제국서원판 『지리B』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 표기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2009년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검정 통과된 『지리A』와 『지리B』 모두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였는데, 2008년도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편에서는 영토문제를 다음과 같이 교육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4면환해의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고 있지 않은 것에 착목하여 국경이 가진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이 근거하여 당연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의 문제 등에 착목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때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것 등 우리나라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도 착목하도록 하는 것’(내용의 취급)이란 점에서 북방영토(齒舞群島, 色丹島, 国後島, 択捉島)에 관해서는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함께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임이 현재 러시아연방에 의해 불법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적확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 등에도 주의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깊게 할 것도 필요하다.⁷⁾

즉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죽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존재하며, 이를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교육할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방영토가 일본의 고유영토인 것과 마찬가지로 ‘죽도(독도)’도 일본의 고유영토로 교육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경서적·제국서원·이궁서점판 『지리A』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였고, 제일학습사와 청수서원판에서는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지리B』에서도 제국서원판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 기술하였고, 이궁서점판은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공민과에 대한 기술에서 “국가 사이의 문제로 영토(영해·영공을 포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미해결의 문제도 남아있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제기구 이외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고 하여 일본이 타국과의 사이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육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영토문제에 접근하는 지리과의 입장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하여 기술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현대사회과나 정치경제과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 사이에 미해결 문제가 있으나 국제평화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넓은 시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여 영토문제 기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과나 정치경제과와 자국의 지리와 영토를 담당하는 지리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영토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은 지리과를 정치경제과·현대사회과 등 사회과였고 역사과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1957년 이승만라인을 설명하는 지도에 竹島라 표기한 것이 최초이며, 1963년 삼성당판 지리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한국과의 사이에 이승만라인과 다케시마의 귀속문제 등이 있고”라 하여 독도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한 이래 1980년대까지는 이러한 기초가 유지되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전제로 영유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기술과 지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⁸⁾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9년 학습지도요령의 『지리A』와 『지리B』에서 북방영토라 명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나, 학습지도요령이 일본정부에 의해 제정된다는 점에서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일본은 남쿠릴열도에 대한 본격적인 영토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기술을 강화하였던 것으로

7) 문부과학성,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사회편』, 2008, 49쪽.

8) 남상구, 앞의 논문, 『영토해양연구』 8, 139~140쪽.

보인다. 그리고 1982년 200해리 경제수역을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는 지도가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독도를 명백하게 표기하지 않은 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키던 지도도 점차 독도를 ‘竹島’라 표기하고 국경선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⁹⁾

3.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영토문제 서술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 고등학교의 영토교육은 지리과나 현대정치과·정치경제과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1999년 『고등학교학습지요령』의 『일본사B』에서는 ‘현재의 일본과 세계’ 항목에서 “국제이해의 추진과 일본문화의 특색, 세계 속의 일본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국제공헌의 확대 등에 착목하여 현대세계의 동향과 일본의 과제 및 역할에 관해 고찰”하도록 하였다. 이 항목에 근거하여 2001년 명성사판 『일본사B』에서는 ‘현대 일본의 과제와 문화의 창조’라는 소항목에 영토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 있으며, 한국이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¹⁰⁾

이 명성사판 『最新日本史B』의 기술의 특징은 남쿠릴열도·독도·센타쿠제도를 고유영토로 기술하면서 남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점령한 상태이며, 독도와 다케시마는 각각 한국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영토분쟁이 있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2007년 김정 통과된 명성사판 『최신 일본사』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사 교과서에서의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은 20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노골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2년 12월 탄생한 아베정권의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 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30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21세기에 어울리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거나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연구

9) 남상구, 앞의 논문, 『영토해양연구』 8, 139~140쪽.

10) 『最新日本史A』, 明成社, 2001, 270쪽.

를 본인이 듣기도 하겠으며, 외교·정치문제화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2013년 4월 22일 국회 참의원의 답변에서는 “아베내각으로서는 이른바 무라야마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다음 날에는 “침략의 정의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마치 일제의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2013년 5월 15일 아베총리는 국회 참의원의 답변에서 무라야마담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정부는 침략도 식민지 지배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정권으로는 무라야마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역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자학사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은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위안부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식민지 지배문제 등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제국과의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금까지 기술하지 않던 독도의 일본 고유영토설을 일본사 교과서에 기술함으로써 한일 간의 영토분쟁을 보다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9년 3월 9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일부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였고, 이 학습지도요령은 2013년도 입학생부터 실시하도록 하면서 2010년부터 경과조치로서 총칙 등의 일부를 선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공포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 일본사A에서는 지도계획의 작성과 지도상의 배려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일본사A』가 지리역사과에 속하는 과목이며, 지리 학습과의 관계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지리적 조건’이 한층 중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대산업의 발전의 무대가 되었던 제지역에 관해 지도장과 지형도의 활용을 꾀하면서 학습시키는 등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를 지리적 조건과 관련지어 다면적·다각적으로 고찰시키도록 한다. 그 때 『지리A』·『지리B』와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와의 관련을 충분히 유의하도록 한다.¹¹⁾(밑줄은 인용자)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일본사』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에 유의하여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영토문제에 대한 기술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은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서술하거나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식으로 기술하였다. 즉 『일본사A』(山川出版社)에서는 1965년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독도가 ‘미해결의 문제’라 기술하였고, 『일본사A』(第一學習社)에서는 국가 영역의 변화에 대한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11) 문부과학성,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 2010.6, 58쪽.

로 표기하고 일본의 국경선 안쪽에 포함시켰다. 『일본사B』(明成社)에서는 영토문제를 칼럼으로 특화시켜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지도가 새로 들어갔고, 기술도 상세해졌다.

이렇게 보면 2009년 학습지도요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일본사 교과서에서 영토문제는 곧 남쿠릴열도에 대한 것이었고,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학습지도요령이 공포되면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혹은 『지리A』·『지리B』와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와의 관련을 충분히 유의’하여 영토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지리A』·『지리B』와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와의 관련을 충분히 유의’하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2012년 검정 통과되어 2013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는 [표2]와 같다.

[표2] 2013년 현재 사용되는 일본사교과서

교과목	교과서 제목	출판사	검정연도	사용기한
日本史A	日本史A 現代からの歴史	東京書籍	2012	2013~
	高校日本史A	実教書籍	2012	2013~
	現代の日本史	山川出版社	2012	2013~
	高等学校 日本史A 人·くらし·未来	第一學習社	2012	2013~
日本史B	詳説日本史	山川出版社	2012	2013~
	最新日本史	명성사	2012	2013~

일본의 교육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교육은 중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을 교수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A와 세계사B, 근현대사 중심의 고등학교 일본사A와 통사로 서술된 일본사B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중학교의 역사과목은 일본사의 큰 흐름을 세계사를 배경으로 이해시켜 일본의 전통과 문화의 특색을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사A는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계사B는 고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서술되어 있어 일본사A와 일본사B 교과서와 같은 맥락에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검정을 통과하여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천출판사판 『日本史A』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토와 관련하여 기술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표기하고,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미해결’, 오키나와와 류큐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일본에 복귀한 지역이라 표기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한 일본의 영토’라는

지도를 수록하였다.

1951년(소화 26),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일본과 48개국과의 사이에서 조인되어, 다음해인 1952년(소화 27) 4월 28일에는 조약이 발효되었다. 일본은 햇수로 7년에 이르렀던 점령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강화조약을 거부한 소련과의 사이에서 북방영토문제가 미해결인 것으로 남는 한편* 오키나와·오가사와라는 계속해서 아메리카의 점령 하에 놓였다.¹²⁾

*일본은 현재도 고유의 영토인 齒舞群島, 色丹島, 国後島, 択捉島の 4개 섬의 반환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를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1952년 이후 한일회담은 간헐적으로 개최되었고, 식민지 통치 무렵에 대한 인식, 배상청구권과 어업문제 처리 등에서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1964년 말부터 열린 7차 회담에서 하의가 성립되어 외교관계 수립을 정한 기본조약 외에 어업, 청구권 경제협력,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 문화협력의 4협정이 체결되었다. 단 ‘죽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¹³⁾

또한 명성사관 『日本史B』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한편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지도를 수록하였다.

- (1) **북방영토** 홋카이도의 네무로시초(根室支庁)에 속하며, 에도로후(択捉), 쿠나시리(国後), 시고탄(色丹), 하보마이(齒舞)군도로 이루어진 섬들이다. 에도시대 초기부터 일본이 영유하고 있는 확실한 기록이 있으며, 막말 개국시 러시아와의 국경협정교섭에서도 일본영토임이 거의 확인되었다. 대동아전쟁 종전 전후 소련에 의해 불법점령을 계속한 러시아가 점거의 기정사실화를 근년에 진행하고 있으며, 반환교섭은 정체되고 있다.
- (2) **다케시마** 시마네현 오키시마(隱岐島)의 북서 약 157km에 위치하며, 두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마쓰시마(송도)라 불렸던 무인도로서 에도시대부터 일본인에 의한 어업개척이 행하여졌다. 메이지 38년(1905) 정부는 정식으로 영유를 확인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1952년(소화 27) 이승만 한국대통

12) 『現代の日本史A』, 山川出版社, 2012, 153쪽.

13) 앞의 책, 159쪽.

령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연안에서 60해리까지의 주권을 주장하고(이승만라인) 다케시마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점령하였다. 이후 한국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3) **센카쿠제도** 이리오모테(西表島)의 북방 160km 부근에 위치한 무인의 군도. 1895년(명치 28) 정부는 외국의 지배하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영유를 결정하고 오키나와현에 편입하였다. 일시는 카쓰오부시회사가 있어 약 200명의 일본인이 생활하였다. 전후는 1972년(소화 47)에 반환되기까지 미국의 시정 하에 있었다. 1968년(소화 43) 국제연합의 기구가 ‘부근의 해저는 석유 자원 매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돌연 중국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그 자체가 근년 강경해졌다.¹⁴⁾

그리고 산천출판사판 『日本史B』에서는 『日本史A』와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라는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해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남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미해결’이라 표기하면서도 ‘일본 고유 영토’라 특기하였고, 오키나와·류큐제도·센카쿠제도를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일본에 복귀한 지역이라 표기하였다.¹⁵⁾

2012년 검정 통과된 일본사 교과서에는 남쿠릴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 규정되어 있으며, 독도와 센카쿠제도는 각각 한국·중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서술되어 표현상의 차이가 있다. 또한 서술 분량도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서술은 남쿠릴열도에 비해 매우 적다. 독도나 센카쿠열도에 대한 서술은 출판사에 따라 없거나 매우 소략하고, 지도 속에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일본 영해에 포함시키는 정도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독도나 센카쿠열도가 남쿠릴열도와는 달리 일본의 영토라는 전제 하에서 서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이상에서 보았듯이 1999년 학습지도요령해설까지의 교과서에서 남쿠릴열도만을 특정하여 일본정부가 영토문제를 제기한 것은 남쿠릴열도가 1875년 가라후토·치시마교환조약에 의해 근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나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을 대가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스탈린과의 밀약을 통해 소련에 남가라후토와 쿠릴열도를 러시아에 양도하기로 밀약하였고, 이에 근거해 소련이 같은 해 8~9월에 소련이 남쿠릴열도를 강제 점령하여 소련의 영토로 편입하고, 1947년에 남쿠릴열도의 일본인 약 17,000명을 강제 퇴거시키고 실질적 지배권을 확립하였다는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기

14) 『最新日本史A』, 明成社, 2012, 295쪽.

15) 『詳説日本史A』, 山川出版社, 2012, 383쪽.

16) 김호동,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와 독도 문제의 차이점」, 『독도연구』 8,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0.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냉전체제 속에서 소련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소련은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쿠릴열도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하여 남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였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 중의 하나인 하보마이섬은 홋카이도의 부속지이며, 예로부터 시고탄섬·쿠나시리섬·에도로후섬이 남지시마라 불려왔으므로 일본이 이를 고유영토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한편 2009년 학습지도요령 이후 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이 고유영토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즉 홋카이도와 남쿠릴열도에는 일본인이 아니라 아이누족을 비롯한 선주민족이 거주하였고,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이 지역을 ‘개척’하여 식민지화하였던 것이다. 즉 이 지역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근대 이후 식민지로 개척하였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반환 요구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냉전, 미일동맹, 중소대립 등의 국제정치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센카쿠제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대만을 식민지로 영유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도 현재의 센카쿠제도라 불린 것이 아니라 다표위다오(釣魚島)·다오위타이(釣魚台)·다오위위(釣魚嶼) 등 중국식 지명으로 불렸고, 이후 영국의 사마랑호(Samarang)호 선장인 벨처가 이 섬들과 암초들을 Pinnacle Rocks로, 영국 해군수로부에서는 Pinnacle Groups로 명명하였다. 이후 1895년 구로이와 히사시(黒岩恒)가 이러한 영어식 표기를 번역하여 ‘센카쿠 레토(尖閣列島)’라 부르면서 오늘날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¹⁸⁾ 이로 보아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역사적으로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카쿠제도는 1895년 1월 21일 일본 내각각의에서 편입을 결정하였으나 일본이 다이토지마(大東島)를 편입할 때 사용하였던 ‘통고’, ‘고시’, ‘칙령’의 형식이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국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국은 일본에 항의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¹⁹⁾

한편 일본은 1951년 이승만정부와 외교정상화를 추진하던 시기부터 고유영토론과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고유영토를 무주지 선점의 논리로 영유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17세기 중반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17) 김영호, 「일본 아베정권의 영토정책과 역사정책」, 『독도연구』 14,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13~14쪽.

18) 박성용, 「19세기의 센카쿠열도」, 『지방사와 지방문화』 15-2, 2012, 130쪽.

19) 송한용, 「尖閣列島/釣魚島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추이」, 『민주주의와 인권』 12-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2, 13~14쪽.

영유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논리로 설명한다.²⁰⁾

이처럼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토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후 일본의 정치권이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추동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본 정치권의 이와 같은 보수화와 영토문제의 제기는 결국 동일한 목적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전총리는 ‘강한 일본’을 주창하면서 전후 금기시되었던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베 총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하면서 평화주의헌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현재에도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등 일본 사회의 보수화를 선도하였다.²¹⁾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의 보수세력은 남쿠릴열도·센카쿠제도(은둔도)는 물론이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는 한편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선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세력의 정치적 노선이 교과서에 반영되고 그것이 영토문제에 대한 서술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9년 학습지도요령이 채택된 이후 지리과를 중심으로 남쿠릴열도·센카쿠제도·독도 등에 대한 고유영토론이 수용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아직까지 고유영토론이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성사관 『일본사B』에서는 남쿠릴열도는 고유영토라는 뉘앙스로 기술하였으며, 센카쿠제도와 독도는 시마네현과 오키나와현에 편입한 것으로 기술하여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중학교 사회과 지리적 분야에 충분히 유의하여 기술하도록 하여 고유영토론에 대한 교육도 행하여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서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2009년 개정된 ‘의무교육 제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 및 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검정 기준의 일부를 개정한 고시’의 사회과(지도를 제외함)에 따른 것이었다.

(3) 근현대 역사적 사상 속 통설적 견해가 아닌 교수자 등의 사향에 관해서 기술할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아닌 것이 명시됨과 함께 아동 또는 생도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없을 것,

(4) 각의 결정 기타의 방법에 따라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

20) 박배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역권원주장에 관한 一考-고유영토론과 선점론」, 『국제법학회 논총』 50-3, 2005, 101쪽.

21) 진창수, 「동북아 영토분쟁의 일본 국내적 정치적 조건」,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을 참조.

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기초한 기술이 되어있을 것²²⁾

그리고 이 검정기준은 2014년 1월 17일 ‘의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다음은 사회과의 기준이다.

- (4) 각의 결정 기타의 방법에 따라 나타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에 기초한 기술이 이루어질 것.
- (5) 근린의 아시아제국과의 사이에서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의 취급에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되어 있을 것²³⁾

이렇게 보면 일본은 ‘정부의 통일적 견해’ 혹은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교과서를 기술할 것을 검정기준으로 제시하여 이에 위배될 때에는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을 공식 결정해 발표하였던 것이다.

4. 맺음말

22) 『義務教育諸学校教科用図書検定基準(改正後全文)』(일본 문부성 홈페이지에서 인용).

23) 『義務教育諸学校教科用図書検定基準(改正後全文)』(일본 문부성 홈페이지에서 인용).

「일본 역사교육에서의 영토문제 -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인 호

(동의대 사학과)

본 연구는 2013년 개정 통과된 현행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본에서는 영토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연구이다.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 및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를 통하여 일본의 영토교육에 대해 살핀 것이다. 이것으로 최근 일본이 지향하는 영토교육의 목표와 일본사교과서를 통하여 실제 이뤄지는 영토교육의 실상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이다. 토론자가 이 방면에 과묵한 관계로 하나는 교육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사실관계라는 측면에서 간단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실례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교육의 효과 문제이다. 70년대 이후 교과서 영토 관련 기술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본시 한국 국민이나 중국국민이나 각기 역사적 경험으로 교과서로 제공된 강고한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적 구호에 크게 현혹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나름 민주적 수련이 상당히 진행된 일본 국민들이 쉽사리 그러한 배타적 영토론 주장에 현혹되는 이유는 그저 국민주의적 선동의 결과물일지 의구심도 든다. 예를 들어 교과서 기술에서 “최고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혹은 “다케시마 회복은 불편한 국제관계의 민주적 해결의 요소”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라는 주장 등을 염두에 둘 때 교과서에 나오는 영토 문제가 나름 합법과 사회적 합의 혹은 보편주의적 가치를 담보한 듯한 여운을 남기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체계에서 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간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국민적 영토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교과서 상의 각종 노력이나 조치에 대한 분석도 필

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사실 관계에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1989.12.25.)부터 급격하게 영토 문제에 대한 내용이 증가하는데 그것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후(1999년, 2009년)의 지도요령해설서에는 그다지 내용상 큰 변화가 없음에도 중학교지도요령(1999)에는 오히려 다케시마 문제가 포함되는 등 중고 단계별로 교과서에 담긴 영토론 내용이나 활용 방법이 차이가 있는 듯한데, 그 내막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주로 영토문제 관련 지리나 사회·현대사회 등 사회과목에 대한 것으로 집중되고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것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아가 그러한 교과서 개편 과정에 대하여 일본국민들의 비판은 어떠했는지(교과서 개정 반대운동)? 정규 교육과정 이외 영토의식을 고양하는 다른 활동이나 비교과서적 수단은 없는지? 등을 묻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규정에 의한 일본의 영토’라는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의 영해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이라는 서술이 있는데, 실제로 그 평화조약에 독도 항목이 그렇게 처리되어 있는지? 등을 질문한다.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

박 재 영

(중앙대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
1. 들어가기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
 3. 독일-폴란드 국경문제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
 4. 나가기
-

1. 들어가기

폴란드의 역사가 피스코르스키(Jan m. Piskorski)는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의 역사적 변천을 6단계(960년부터 1370년까지 중세 피아스트 왕조시대를 2시대로 구분, 17세기 폴란드-리투아니아 왕국시대, 18세기 3차에 걸친 폴란드 분할시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폴란드 공화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그 정도로 양국 사이에 점령, 분할,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¹⁾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민족주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서로를 ‘적대적 타자’로 규정하게 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가 독립을 쟁취하면서 양국 간의 국경분쟁은 첨예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패전국 독일이 폴란드에 오버솔레지엔 일부,

1) Jan M. Piskorski, "Die deutsch-polnische Grenze und die historisch-geographische Nomenklatur von Grenzterritorien", Stöber & Maier(eds.), *Grenzen und Grenzräume in der deutschen und polnischen Geschichte*, Hannover, 2000.

포젠, 서프로이센 지역을 할양해야 했던 사실과 단치히의 자유도시화, 동프로이센과의 육로가 차단되는 현실을 경험한 때문이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정된 오데르-나이세 국경선(폴란드어: Granica na Odrze i Nysie Łużyckiej, 독일어: Oder-Neiße-Grenze)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점은 또 다시 독일과의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폴란드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이 새로 확정되면서 전쟁 이전의 이 선 동쪽의 독일 영토(면적: 바이마르 공화국 영토의 23.8%)는 전쟁 이후 폴란드와 소련의 영토가 되었으며, 기존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은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은 국경선을 둘러싸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게르만 문화와 슬라브 문화가 중첩된 게르마니아 슬라비카(germania Slavica) 지역에서는 양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통합되어 가는 유럽문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²⁾ 이 지역은 민족주의 시대의 영토분쟁과 이와 관련된 역사분쟁이 평화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³⁾ 본 발표문은 거의 천년 동안 지속된 양국의 불편했던 역사적 경험과 민족적 적대감, 나치독일의 전쟁범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날 통합 유럽의 일원으로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해 협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한 작업을 밝힌다.

본 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머리말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세 이래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문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의 확정 과정을 테헤란 회담, 알타 회담, 포츠담 회담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독일인 추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1972년 이후 추진되기 시작했던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 과정과 독일-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마지막 결론에서는 독일-폴란드 양국 간 국경문제와 역사분쟁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동아시아 영토문제와 역사분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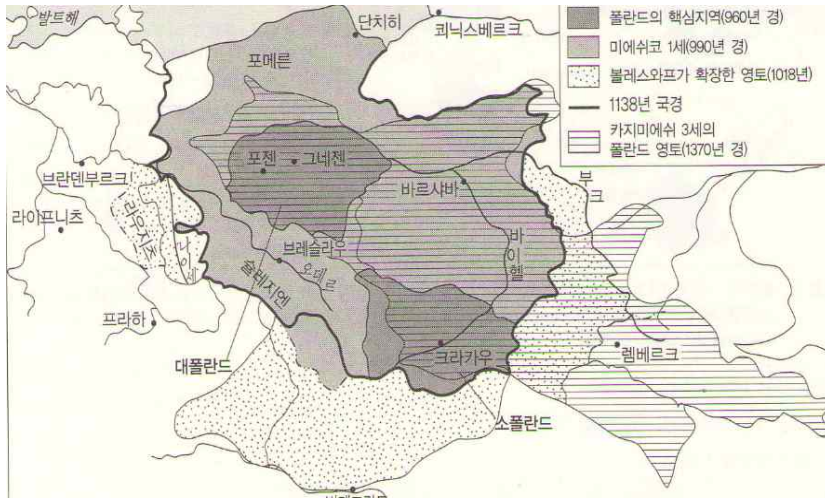
2)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슬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30쪽.

3) 차홍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고방, 2011, 313쪽.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

오늘날 독일과 폴란드의 접경인 프로이센 지역에는 발트계 민족인 고(古) 프로이센족이 살고 있었고, 오데르 강 저지대는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이었다. 11세기경 폴란드 왕국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1세기 초 피아스트 왕조의 볼레스와프 1세는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1018년에는 피아스트 왕조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 13세기에 이르러 피아스트 왕조는 폴란드 북부 이민족의 선교를 위해 독일기사단(Deutscher Orden)을 불러들였다.⁴⁾

[지도1] 피아스트 왕조 시기 폴란드 영토⁵⁾



이렇게 시작된 독일-폴란드 관계사에서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있었지만, 18세기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에 의한 세 차례의 폴란드 분할 이전까지 소급하기는 어렵다. 폴란드 왕국과 영토분쟁을 했던 독일기사단이나 프로이센이 폴란드 왕국에 비해 그리 간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가 여러 영방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로이센과 폴란드에 민족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신분에 기초한 귀족의 집단의식에 불과했다. 독일인 상공인이나 농민들은 폴란드 왕국에서 폴란드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중대한 민족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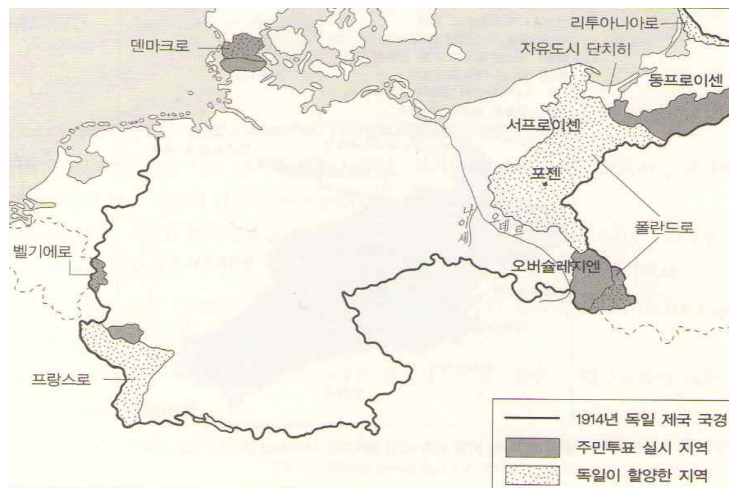
4) Walter Günzel, "polen",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ehen GMBH, Hannover, 1963, p.14~18.

5)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Polen und Deutschland", ein kurzer Leitfaden zur Geschichte ihrer Nachbarschaft, Warszawa, 1999, p.6.

드 분할은 독일과 폴란드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폴란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폴란드 민족국가의 독립을 지상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프로이센은 이를 통하여 비로소 유럽의 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⁶⁾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가 폴란드 농민, 상인, 귀족들을 폴란드인이라는 이유로 탄압한 일은 폴란드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데 자극을 주었고, 폴란드는 18세기에 폴란드 분할로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독립하였다. 폴란드의 독립은 중세 피아스트 왕조 이래 폴란드의 오랜 국가적 전통에 대한 승전국들의 합의 아래 성취될 수 있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영토 변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제국, 오스만투르크 제국은 해체되었고, 제국 내 피지배 민족들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창하며 독립해 나갔다. 이러한 원칙은 실제로 동일한 언어와 민족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이 첫 번째 적용대상이었고, 그 같은 판단이 쉽지 않은 민족의 혼주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한 국가 귀속문제 해결이 두 번째 적용방법이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전 독일제국에 속해 있던 슐레스비히, 오버슐레지엔, 동프로이센 등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주민투표가 평화적으로 치러진 지역도 있었지만 오버슐레지엔의 경우와 같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도 있었다.([지도2] 참조)

[지도2] 베르사이유 조약 이후 할양된 독일영토⁷⁾



신생국 폴란드와 독일의 서부 국경은 1919년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확정되었고, 제2차

6)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슐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34쪽.

7)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93쪽.

세계대전까지 유지되었다. 이는 과거 폴란드의 역사적인 국경을 따라가지만, 일부 지역은 인종 경계를 따라가도록 조정되었다. 포메른과 오버슐레지엔은 분리되었고, 독일 쪽 영토에는 폴란드계 및 슬라브계 소수 인구가, 폴란드 쪽 영토에는 독일계 소수 인구가 있었다. 또한 이 국경선으로 독일은 폴란드 회랑과 단치히 자유시를 사이에 놓고 둘로 분리되었다. 단치히 자유시에는 독일계 인구가 많았으나, 폴란드가 발트 해로 나가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리되었다.([지도3] 참조)

[지도3] 폴란드영토 1918~1921(폴란드 제2공화국 건국상황)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설정된 독일과 폴란드 국경은 두고 두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협상국들에 의한 폴란드 회랑과 주민투표를 통한 오버슐레지엔의 분할로 폴란드에는 독일인이, 독일에는 폴란드인이 남게 되었고, 오버슐레지엔을 둘러싼 분쟁은 독일 민족주의의 극단화를 초래했다.

1938년 9월 1일, 독일이 전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양국 국경 변경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문제에 대한 연합

8)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Polen und Deutschland", ein kurzer Leitfaden zur Geschichte ihrer Nachbarschaft, Warszawa, 1999, p.32.

국 측의 논의는 1943년 12월 테헤란 회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은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오데르 강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루즈벨트는 폴란드 서부 국경을 오데르 강가로 확장하고, 동부 국경을 서쪽으로 축소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문제는 국경에 관련된 임시 협정에만 합의할 수 있었고, 전후 폴란드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후 협상으로 유보되었다. 이 회담에서 폴란드 국경문제는 소련이 1919년의 경우와 비슷한 폴란드 국경을 수용한다는 데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후 영국 정부는 1944년 1월 유럽 자문 회의에서 동프로이센, 단치히 및 그 외의 지역을 폴란드에 영구 할양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폴란드의 새 국경선을 오데르 강으로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폴란드 문제는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점령하고 독일과 폴란드 국경지역에 접근하고 있었던 1945년 2월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가 만난 얄타 회담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에서는 폴란드에 세워질 정부의 구성, 폴란드를 포함한 연합국이 점령한 국가에서의 자유선거, 영토를 포함한 독일로부터의 폴란드 배상 문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연합국이 점령한 지역의 위치 조정 등이 논의되었다. 폴란드-소련 국경은 1919년 영국 외무장관 커전(Lord Curzon)의 제안대로 조정되었다. 소련은 이로써 1939년 리벤트로프-몰로토프 협정 결과, 이미 소련에 편입된 것과 같은 크기의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동쪽 국경을 소련에 양도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동프로이센 일부, 단치히, 동부 포메른 및 고지 슐레지엔을 할양받는 데 동의하였다. 얄타 회담은 소련이 서방에서 제안한 독일-폴란드 국경을 지지하는 첫 사례로 여겨진다.⁹⁾ 하지만 나이세 강의 동안 및 서안을 따라 국경선을 설정할지는 미정이었고, 폴란드의 서부 국경의 정확한 위치는 이후 포츠담 회담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다.

독일이 항복한 지 두 달 이후인 1945년 7월 연합국 측은 포츠담에서 다시 모여 얄타 회담에서 합의한 전반적인 협정에 따라 폴란드 국경을 다시 그었다.¹⁰⁾ 이 회담으로 독일의 영토는 크게 축소되었다. 동프로이센은 양분되어 쾨니히스베르크 시를 포함한 북반

9) Debra J. Allen, *The Oder-Neisse line: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Germany in the Cold War*. Westport: Praeger, 2003, p.17.

10) 1945년 7월 17일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포츠담에서 논의한 중요한 결정들은 독일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나치체제의 폐지, 군사력 해체, 무기생산 금지, 산업통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회복, 독일 영토의 축소, 배상문제, 4개국 분할점령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이 논의되었고, 패전국에 대한 처리방안과 전후 문제가 다루어졌다. 그러나 전후 모든 문제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 처리, 트리에스테 문제, 루르지대 문제, 다다넬즈와 보스포루스 문제, 독일의 통치방안, 알바니아의 그리스에 대한 영토 주장, 유고슬라비아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영토 주장, 일본과의 강화조건, 버마, 인도차이나, 홍콩, 네델란드령 동인도의 문제 등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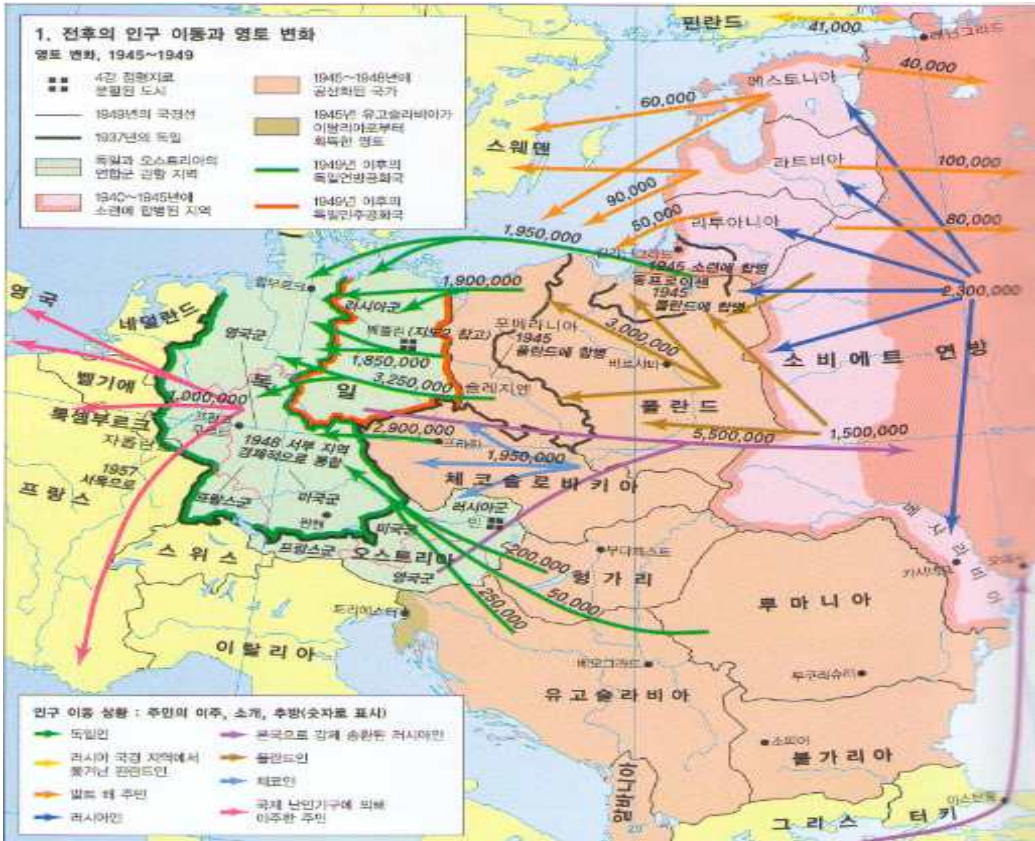
부는 소련으로, 남반부는 폴란드로 귀속되고 또 폴란드는 단치히 자유시를 다시 갖게 되었다. 오데르 강과 나이세 강 동쪽의 모든 독일 영토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폴란드에 의해 관장되도록 하였고, 기존 폴란드 영토에 있는 독일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폴란드 국경 조정에 대한 포츠담 회담에서의 결의안 내용(1945년 8월 2일, 발췌)은 아래와 같다.

새 정부의 원수들은 폴란드 서부 국경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슈비네 강 입구 바로 서부의 동해와 그로부터 오데르 강을 따라서 나이세 강 서부의 입구까지, 그리고 서부의 나이세를 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선의 동부에 있는 동프로이센 지역, 이 지역은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일치하여 소련의 관할 하에 놓이지 않는다. ... 이전에 자유도시 단치히 지역을 포함한 이전의 독일의 지역들은 폴란드 국가의 관할 하에 두고, 이 점에서 독일에서 소련 점령지역의 일부로서 간주되지 않는다.¹¹⁾

폴란드가 할양받은 독일의 동부 영토는 과거 피아스트 왕조의 영토였고, 폴란드 분할 당시 프로이센 왕국으로 넘어간 영토를 포함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는 재수복 및 회복된 영토로 불렸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폴란드는 과거 독일 영토 112,000 km²를 할양 받았고, 폴란드 동쪽 지역 187,000 km²를 소련에 할양하였다. 새롭게 확정된 독일과 폴란드 국경선의 총 길이는 472km이었으며, 체코의 최북단에서 시작하여 오데르 강 하구의 발트 해 최남단으로 연결된다([지도4] 참조).

11)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 tat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pp.340~347.

[지도4] 독일-폴란드 국경 지도12)



영토 변화에 따라서 전쟁 중에 이동한 사람을 포함한 1,400만여 명이 이동하였다. 폴란드에 합병된 영토의 독일인들은 대부분 추방당했으며, 독일에 강제 징용된 폴란드인들은 귀국하였다. 과거 제2폴란드 공화국의 동부는 소련에 합병되었으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새 영토로 이동하였다. 1945년 8월 2일자 포츠담 회담 결의안 제13항에서는 새로운 국경의 확정으로 야기된 독일 국경 밖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 추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찾아볼 수 있다.

회담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헝가리로부터 독일인들의 추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협정에 도달했다. ... 독일계 주민 혹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에 남아 있는 그 구성요소들을 독일로 이송하는 일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그러한 실행이 ... 규정에 맞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12) 지오프리 파저 저/ 김성황 역, 『아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10, 154쪽.

한다.¹³⁾

이러한 결정은 오데르-나이세 국경 이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인, 기타 독일의 인접국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왔다. 독일인에 대한 추방은 이미 1945년 1월 소련군의 브레슬라우 점령에 관한 파울 파이케르트(Paul Peikert) 목사의 연대기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1945년 5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이 진주하면서 오데르 강 동부의 슐레지엔 전체 주민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이제 브레슬라우에는 밤낮으로 종일 피난길에 오른 주민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보였다. … 어린이들은 동사하고, 가족들은 이들을 도로변에 갖다 놓는다. 그렇게 동사한 아이들을 실은 화물차 전체가 이곳의 시신 보관실로 이송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이 몰려드는 난민들이 어디에 수용되어야 할지는 알 수 없다. 한 보도에 따르면 모두는 그들의 집, 소유, 경작지로부터 폭력적으로 추방당하였다. 전날에 모든 보유 가축 및 돼지가 도살되었다. … 혹독한 겨울에 대부분 얼어 죽게 될 것이다. 슐레지엔은 30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곤경을 경험했다.¹⁴⁾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세계에 대규모의 난민과 인구이동을 야기했다. 약 6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난민은 극히 적은 소지품만 가지고 낮은 곳을 헤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집과 생계수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가 해방된 제3제국의 약 8백만 명과 수용소의 수백만 명은 전후에 사실상 주택과 직업이 없는 난민 신세가 되었다 유럽 각국은 외국인을 자국 영토에서 몰아냈다. 루마니아는 헝가리인을 몰아내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헝가리인과 독일인을 추방하였다. 독일이 폴란드의 독일화를 위해 이동시켰던 독일인은 폴란드를 다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나치가 강제 퇴거시킨 1,500만 명의 폴란드인 대부분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독일의 패전으로 수백만 명의 전쟁포로와 강제노동자들이 풀려났고, 약 50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 전쟁포로와 전쟁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1938년 이후 나치 독일이 합병한 지역에서 약 1,200만 명이 전쟁 전에 살던 고향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고, 소련의 서진으로 200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이 새롭게 합병된 소

13)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 tat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pp.340~347.

14) 한국교육개발원, 『20세기의 독일과 폴란드 분석, 사료, 교수법 시사(독일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6(연구자료 RM2002-61))』, 한국교육개발원, 2002, 213쪽.<Paul Peikert, Festung Breslau in den Berichten eines Pfarrers(22. Januar bis 6. Mai 1945)>.

런 영토로 이주했다.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의 붕괴에 다른 행정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합의한 4D원칙(무장해제; to disarm, 비군사화; to demilitarize, 나치의 해체; to denazify, 민주화; to democratize)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이 수립되었다.¹⁵⁾ 그러나 전범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독일 재건에 착수한 연합국은 과거 나치 때 추방된 독일인의 귀국 절차에 관해서부터 점차 의견대립을 노출하게 되었다. 더욱이 서방측 점령국은 독일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을 우방으로 만들려 하였으며, 소련은 노골적으로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한 갈등은 1948-1949년의 베를린 봉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

1952년 스탈린은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통일 독일의 국경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200만 명의 실향민이 정착한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우어 총리는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할슈타인 독트린의 일부로 서독은 동독 및 폴란드 인민 공화국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소련과 모스크바 조약, 폴란드와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하였고 오데르-나이세 선을 현재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부 독일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에 영향을 주었다. 고향 방문은 여전히 힘들었으나, 폴란드령이 된 옛 고향에 재정착은 불가능한 채로 남았다. 1990년 11월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연방 공화국과 폴란드 공화국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전에 독일은 헌법을 개정하였고, 과거 동부 독일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독 기본법 23조를 폐지하였다. 1990년 독일-폴란드 국경 조약은 오데르-나이세 선을 폴란드-독일 국경으로 확정하였다. 1991년 6월 체결된 우정 조약과 함께 1992년 1월 16일 발효되었다. 우정 조약에서는 국경 양쪽에 살고 있는 독일 및 폴란드계 소수의 문화적 및 정치적 권한 등을 보장하였다. 1990년 이후 폴란드에 할양된 영토에는 약 15만 명의 독일인들이 살고 있으며, 독일에는 150만 명의 폴란드인 및 폴란드계가 살고 있다.

15) 1945년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연합국에 의해 4개 점령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소련이 전쟁 전 수준의 1/3로 추락한 경제를 부흥하려던 1946년의 5개년 계획은 공공연히 동부 독일과 점령 지역의 수탈에 의존한 것이었다. 소련 점령지역 내의 수도 베를린 역시 연합국 4개국의 공동 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3. 독일-폴란드 국경문제에 대한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내용

본 장에서는 1972년 독일과 폴란드의 교과서 협의 과정과 1976년 합의되고 1977년 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 연구소에서 간행된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의 양국 국경관련 권고 내용, 그리고 <권고안> 이후 독일 역사교과서의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인 추방에 대한 서술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폴란드가 독일과의 교과서 협의에 나선 것은 독일정부가 폴란드와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 선을 인정한 이후 부터였다.¹⁶⁾ 독일과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27년이 지난 후인 1972년 2월 22일에 독일의 중등학교 교사 마이어의 「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독일-폴란드 역사서술에 대한 47개 테제」라는 논문을 기초자료로 하여 교과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합의는 ‘양국 모두가 동의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두 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 아래 진행되었다. 덧붙여, 우선 가능한 사안들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최소해법의 원칙을 적용하였다.¹⁷⁾

1972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 유네스코협약회의 초청으로 독일(11명)과 폴란드(29명)의 역사가, 지리학자, 교육학자, 교과서전문가, 교과서출판업자들이 바르샤바에 모여 우선 방법론상의 문제들과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양국의 역사 및 지리교과서와 수업의 개선을 위해 일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색하였다. 양국의 유네스코 협약회의는 유네스코의 정신 속에서, 평화보장과 양국의 이해증진을 위해 대화를 이끌어간다는 데 합의했다. 양국 협의회들은 바르샤바 조약에 표현된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의지가 교과서 개선의 영역에서 학문적 및 교육학적 협력에 유리한 분위기를 창출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 결과, 1977년 초 독일 게오르그 에케르트 연구소에서 양국어로 된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 초판이 발간되었다.¹⁸⁾ 그러나 이러한 권고

16)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88, 52쪽.

17) E. Meyer, “Deutsch-polnische Schulbuchgespräche,”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vol. 24, Braunschweig, 1973.

18) Gemeinsame Deutsch-Polnische Schulbuchkommission, *Empfehlungen für Schulbücher der Geschichte und Geograph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Volksrepublik Polen*,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Braunschweig, 1977.

안을 잘 따랐던 교과서도 있는 반면 분명 그렇지 못한 교과서도 있었다.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인 1976년 제9차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회는 앞으로 해마다 각 국을 번갈아가며 학술회의를 지속할 것을 협의하였다. 권고안 이후 열띤 논쟁을 해왔던 독일에서의 관심도 서서히 시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의 무관심 속에서도 학술회의는 국경을 넘나들며 꾸준히 이루어졌다. 권고안 이후에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회의 학술연구에 대한 실적이 10권의 책으로 출간되었고 1988년에 열린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교육적 성과를 결산하였다.¹⁹⁾ 그들은 더 이상 독일과 폴란드 양국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를 못 느꼈다. 양국 관계사를 유럽사의 맥락 속에 자리매김하는 일과 권고안이나 그 이후에 학술회의에서 얻은 연구실적을 교수법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중심적인 과제로 삼기에 이르렀다. 폴란드에서는 1989년 12월 29일 의회에서 헌법이 개정되어 공산당 정권이 종식되어 민주적인 공화국이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폴란드의 역사가들에게도 새로운 전환기가 되었다. 그때까지 금기시 되어오던 폴란드에 사는 독일인 소수민족에 대한 민감한 테마가 새로운 연구주제로 떠오른 것인데, 이와 함께 폴란드도 자기반성적인 역사성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교과서 시장이 다원화되어 역사서술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²⁰⁾

그렇다면 <권고안> 이후 독일 역사교과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볼프강 야콥마이어는 1976년부터 1988년 사이 독일의 역사교과서들에서 폴란드 역사와 독일-폴란드 관계사의 서술 변화를 분석하였다.²¹⁾ 그의 연구는 독일 역사교과서에 실제로 권고안에 따른 개선이 상당히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권고안>에 따른 교과서 서술의 개선 유무는 시대별로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중세 초기에 대한 서술에서는 자주 텍스트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르네상스에서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대사 부분에서는 빈번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권고안> 역사 관련 항목 16개 중에서 14개 항이 현대사에 몰려 있을 정도로 독일과 폴란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문제들이 많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필자는 1997년에서 2000년까지 출판된 독일역사교과서 5종을 대상으로 오테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인의 <추방(Vertreibung)>과 관련된 서술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각

19) KEDI(ed.), *German-Polish textbook conferences and academic performance 1972-1987 in history Section(RM 2002-62)*. Seoul: KEDI, 2002.

20) 박재영,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2014, 110~111쪽.

21) 볼프강 야콥마이어, 「독일 및 폴란드 권고안 발표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교재 변화」,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91~165쪽.

교과서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²²⁾

독일의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전승국들이 1937년 당시에 만들었던 점령지역 분할을 도입하기로 했다. 게다가 폴란드는 동쪽 지역을 소련에 넘겼고 그 지역은 곧 발트 국가들로 자리를 잡았다. 그 대신 독일의 동쪽지역 오데르 및 나이세 강 주변은 폴란드에게 넘겨졌다. 그곳에 살던 독일인들은 (동유럽에 살고 있던 다른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로 “이주”되었다. 이 이주로 독일인들이 사실상 큰 손실을 입고 강제적으로 쫓겨났다.²³⁾

비록 영국이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자신이 원했던 영토의 재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소련이 1939년 점령했던 폴란드 (동부)지역을 소련의 관할 하에 두는 대신에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독일의 항복 이후 오데르-나이세 선 이동 지역은 폴란드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련의 관할 하에 들어간) 폴란드 동부에서 강제 이주된 폴란드인들로 채워졌다.²⁴⁾

… 다른 한편, 소련은 폴란드 영토의 서쪽으로의 이동 및 정착과 함께 거기에 살고 있는 독일계 주민의 추방을 기정사실화 했다.²⁵⁾

퀴니히스베르크와 동프로이센의 북부지역에 대한 소련 영토로의 합병은 영국과 미국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미·영 양국은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의 독일 영토는 폴란드의 행정 관할 하에 두기로 하는 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서부

22)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 Braunschweig, 1997;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Hilke Günther-Arn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2002.

23)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p.157,

24)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Braunschweig, 1997), p.133.

25)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p.147.

국경은 미래에 있을 평화회의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또한 소련과 폴란드가 점령하고 있는 독일 지역에서 독일인 및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 독일인들에 대한 강제이주를 포츠담 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다.²⁶⁾

종전 직전인 1945년 2월 초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은 얄타회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동의했다. 1. 이후 사실상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던 구분된 점령지에 있어서 독일의 분할점령은 당시에는 의도된 것은 아니었음. 2.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폴란드 동부지역에 대한 독일의 보상으로서의 폴란드인들이 서부 이동.²⁷⁾

위 5종의 독일 역사교과서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첫째,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미·영·소 연합국 세 나라에 의해 독일 영토의 폴란드 할양이 결정되었으며, 소련이 폴란드의 동쪽 지역을 할양하는 대가로 폴란드에 오데르-나이세 강 이동 지역의 독일영토를 폴란드의 관할 하에 두게 되었다는 서술이다.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은 단순히 논리의 싸움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의 논리가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나치청산과 과거극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무시할 수 없으며 패전 이후 국경의 변경과 독일의 분단은 연합국의 결정에 의한 결과였기 때문이다.²⁸⁾ 독일 역사교과서는 연합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영토의 상실에는 별다른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다. 둘째, 독일 역사교과서는 오데르-나이세 강 이동지역 영

26)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p363.

27) Hilke Günther-Arn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p.207.

28) 오데르-나이세 국경의 확정과 독일인의 추방에 대해서 1966년 출간된 폴란드 역사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포츠담 회담에서의 결정 사항 중 폴란드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서유럽의 세 강대국들이 폴란드의 서쪽 국경을 결정한 것이다. 이미 회담 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세 강국은 폴란드가 오드라 동쪽과 니사 우취츠키 동쪽 지방의 피아스트 왕조부터 내려오던 영토와 발틱 연안의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동 프러시아 지방의 대부분이, 특히 (p. 266) 쾨니히스베르크 남쪽 지방이 폴란드에 새로 속하게 되었다. 세 열강의 대표자들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지역 안에 거주하던 독일인의 이주를 결정했으며, 이는 곧 서유럽 열강들이 폴란드에 오드라-니사 지역까지의 서쪽 지방의 영토권을 인정한 것과 같았다. 회담에서 폴란드의 서쪽 국경선에 대한 마지막 인정은 후의 평화 협정의 한 부분으로 발표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공식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폴란드 땅에서 독일인의 이주에 대한 결정은 바로 폴란드에게 이전에 빼앗겼던 땅에 대한 권리를 재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역사의 공정함은 이런 식으로 행사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4: 1966년도 폴란드 역사교과서 발췌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9)』, 한국교육개발원, 42쪽.

토상실보다 독일인들의 강제이주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포메른, 슐레지엔, 동프로이센,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추방된 독일인들은 역 1,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독일의 인구이동 정책에 따라 이주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 땅과 집, 재산을 잃고 강제로 추방당한 사람들이었다. 추방 과정에서 독일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추위와 굶주림, 추방당한 나라 국민들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폭행과 테러, 무자비한 강제퇴거 조치 등으로 추방된 독일인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데, 1945년 7월 14일 폴란드 바트 잘쯔브룬(Bad Salzbrunn) 시의 독일계 주민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특별 명령은 그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사료라 하겠다.

잔트베르크 구를 포함한 바트 잘쯔브룬 시의 주민들에 대한 특별명령
 폴란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1945년 7월 14일 6시에서 9시까지 독일계 주민의 강제이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2. 독일계 주민은 나이세 강 서쪽 지역으로 강제이주된다.
3. 모든 독일인은 최고 20kg까지 여행용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4. 어떠한 운송수단(마차, 황소, 말 따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생략)

6. 마지막 강제이주 시한은 7월 14일 10시에 종료된다.
7.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처벌에 처해지며, 거기에는 무기사용도 포함된다.

(생략)

11. 도시에 있는 모든 집은 열려 있어야 하고, 집 열쇠는 밖에 꽂혀 있어야 한다.

바트 잘쯔브룬, 1945년 7월 14일, 6시

지역사령관

육군 중령 진코브스키²⁹⁾

위에서 살펴 본 5종의 독일 역사교과서의 서술내용만을 가지고 오테르-나이세 국경과 독일인 추방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경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간 교과서 협의는 1976년 권고안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이에 힘입어 2008년 1월 독일과 폴란드의 외무 장관들은 독일-폴란드 공동 교과서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008년 5월에 시작되었으며, 독일-폴란드 프로젝트 그룹은 양국의 학자와 정치활동

29) Friedrich Arnholt(Hrsg), Anschlag, Politische Plakate in Deutschland 1900-1970, Frankfurt u.a. 1972, p.130.

가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뿐, 동일한 형태로 독일과 폴란드의 중등 역사교육에 쓰일 수 있는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부가적인 교재가 아니라 양국의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역사교육에 사용될 국가적으로 승인받은 교과서라는 점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독일-폴란드 관계에서 높은 교육적, 과학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다. 양측은 학교의 역사교육에 이웃 나라로의 역사적 경험을 통합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에 대한 대화를 심화할 것을 표명했다. 2010년 12월 1일, 바르샤바에서 공동 교과서위원회는 역사교과서의 개발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권고안은 독일-폴란드의 관점에서 유럽과 세계에 대한 접근, 고대에서 21세기에 이르는 시기로 나누어진 다섯 개의 섹션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다. 이 권고사항은 협력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향후 작업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2012년 봄, <독일-폴란드 공동 역사교과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인 공동 역사교과서 집필이 시작되었다. 폴란드 측에서는 WSiP 출판사가, 독일 측에서는 universe Communication과 미디어 AG 출판사가 프로젝트의 협력 출판사로 나섰다. 교과서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은 2015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³⁰⁾

4. 나가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의 차이는 정치적 노력과 학문적 협의, 그리고 상호이해에 바탕한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한 역사교육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세대에게 민족주의적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역사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공존이라는 역사해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문제와 역사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동방정책을 통한 동구권 국가들, 특히, 첨예한 국경문제로 대립했던 폴란드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독일-폴란드 양국 역사가들의 학문적 접근을 위한 역사분쟁의 해결, E. Meyer, G. Eckert, K. Zernack, W. Markiewicz, W. Borodziej 등 양국 역사교육자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부단한 인내가 필요했던 교과서 협의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 유럽통합이라는 유럽인

30) <http://deutsch-polnische.schulbuchkommission.de/home.html>(2014.08.02.)

들의 이상이 작용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오늘날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대립했던 영토와 주민에 대한 주권을 공유하는 지점을 넓혀가도 있다.³¹⁾ 이는 새로운 영토분쟁을 촉발하는 외교적 대립이 아니라 영토주권을 인정하면서 접경지역이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과거 국민들을 구분하고 분열시켰던 ‘피 흘리는 국경선(Blutende Grenze)’에서 국민들을 연결하는 ‘상호 소통의 장’, 즉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아울러 독일-폴란드의 교과서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양국 간의 정치적 현안문제 해결(국경문제)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된 교과서 협의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972년 처음으로 교과서협의회에 의한 몇 가지 테제가 합의된 데 이어 1976년에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때 까지 물론 파행의 길을 걸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장시간에 걸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협력해 나가 결국은 근본적인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해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학술회의가 열리면서 진지한 학문연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이를 통하여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권고안 완성 → 권고안을 보충하기 위한 학술연구 → 공동의 교과 안내서 제작 → 공동 역사교과서 출판’이라는 교과서 협력과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31) 김승렬 외 6인,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 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20쪽;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슐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19~20쪽.

참고문헌

1. 독일 역사교과서

Bernhard Askani und Elmar Wagener(ed.), ANNO 4(Das 20. *Jahrhundert*), Band 4, Westermann, Braunschweig, 1997.

Bernd Mütter, Falk Pingel und Norbert Zwölfer unter Mitarbeiter von Dirk Hoffmann, *Geschichtsbuch 4(Die Menschen und ihre Geschichte in Darstellungen und Dokumenten: Von 1918 bis 1995)*, Neue Ausgabe, Cornelsen, Berlin, 2000.

Ludwig Bernlochner(ed.), *Geschichte und Geschehen 2(Oberstufe Ausgabe A/B)*, Ernst Klett Verlag(Stuttgart, Düsseldorf, Leipzig, 2000.

Hilke Günther-Arndt, Dirk Hoffmann und Norbert Zwölfer(ed.), *Geschichtsbuch (Das 20. Jahrhundert)*, Band 2(Oberstufe), Cornelsen, Berlin, 1998.

한국교육개발원,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부록 2: 독일 인문계 김나지움 4학년 역사교과서 <우리가 만드는 역사> 번역본(연구자료 RM 2002-57)』, 한국교육개발원, 2002.

2. 국내 문헌

곤도 다카히로 저/ 박경희 역,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김승렬, 「두 개의 시선으로 바라본 관계사: 독일-폴란드 역사교과서 대화」, 『역사대화의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III)』,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김승렬, 「독일·폴란드의 국경분쟁과 역사분쟁 -슐레지엔·실롱스크의 경우」, 『유럽의 영토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2008.

김제한, 「통일독일 국경의 탈근대적 안정화」, 『영토해양연구』, 3권. 2012.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88.

라이너 리펜슈나이더, 「1935-96년 간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 협의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98.

로베르트 마이어, 「독일-폴란드 간 역사교과서 협의 난제 해결에 관해」, 『역사대화의 경험 공유와 동아시아 협력모델 찾기(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국제심

- 포지엄 III』,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 박재영, 「유럽의 교과서협약의와 국제교과서연구소의 활동」,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자료원, 2008.
- 박재영, 「국가 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의미」,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6집, 2014.
- 블프강 야콥마이어, 「독일 및 폴란드 권고안 발표 이후 독일에서의 역사교재 변화」, 『독일-폴란드 교과서 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블로지미에르 보로지에, 「폴란드-독일 협력활동」,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98.
- 지오프리 파저 저/ 김성황 역, 『아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10.
- 차용구,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화해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적 해석을 중심으로-」, 『동서양 역사 속의 소통과 화해』, 학고방, 2011.
- 클라우디아 슈나يدر, 「유럽의 경험 및 동아시아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본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선인, 2008.
- 페터 가이스,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 휴머니스트, 2008.
- 한국교육개발원, 「20세기의 독일과 폴란드 분석, 사료, 교수법 시사」(RM2002-61),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66년도 폴란드 역사교과서」(RM2002-59),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역사분야 「독일-폴란드 교과서회의의 학문적 성과 1972-1987」(RM2002-6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역사분야 독일-폴란드 교과서회의의 교육학적 성과 1972-1987」(RM2002-63),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교육개발원, 『독일-폴란드 교과서협의 사례연구(연구보고 CR 2002-32)』,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운석, 『독일의 역사화해와 역사교육』, 신서원, 2009.
- 홍승진,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교과서 협의」, 『세계의 역사교과서 협의』, 백산자료원, 2008.

3. 외국어 문헌

- Debra J. Allen, *The Oder-Neisse line: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Germany in the Cold War*. Westport: Praeger, 2003.

- Enno Meyer, "Deutsch-polnische Schulbuchgespräche," *Geschichte in Wissenschaft und Unterricht*, vol. 24, Braunschweig, 1973.
- Enno Meyer, *Deutschland und Polen*(1914–1970), Ernst Klett, Stuttgart, 1981.
- Hansjacob Stehle, *Deutschlands Osten – Polens Westen?*, Ficher Bücherei KG, Frankfurt am Main, 1965.
- Jan M. Piskorski, "Die deutsch-polnische Grenze und die historisch-geographische Nomenklatur von Grenzterritorien," Stöber & Maier(eds.), *Grenzen und Grenzräume in der deutschen und polnischen Geschichte*, Hannover, 2000.
- KEDI(ed.), *German-Polish textbook conferences and academic performance 1972-1987 in history Section*(RM 2002-62). Seoul: KEDI, 2002.
- Michael Antoni, *Das Potsdamer Abkommen Trauma oder Chance? Geltung, Inhalt und staatsrechtliche Bedeutung für Deutschland*, Berlin, 1985.
- Manfred Overesch, *Deutschland 1945–1949: Vorgeschichte und Gründung der Bundesrepublik, Ein Leitfaden in Darstellung und Dokumenten*, Athenäum/Droste Taschenbücher Geschichtw, 1979.
- Gemeinsame Deutsch-Polnische Schulbuchkommission, *Empfehlungen für Schulbücher der Geschichte und Geograph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Volksrepublik Polen*, Georg-Eckert-Institut für internationale Schulbuchforschung, Braunschweig, 1977.
- Walter Günzel, *polen*,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ehen GMBH, Hannover, 1963.
- W. Borodziej, H. H. Hahn & I. Kakolewski, *Polen und Deutschland, ein kurzer Leitfaden zur Geschichte ihrer Nachbarschaft*, Warszawa, 1999.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와 독일 역사교과서」에 대한 토론문

최 선 아

(서원대 교양학부)

본 발표문은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선 분쟁 문제를 제시하고, 양국 간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일정 성과를 거둔 독일의 역사교과서 개정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독일·폴란드 양국은 불편했던 역사적 경험과 세계대전을 겪으며 민족적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독일은 나치독일의 전쟁범죄를 극복하면서 국경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역사교과서 개정에서 반영하면서 오늘날 통합 유럽의 일원으로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논문은 언급하고 있다.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를 둘러싼 독일과 폴란드의 영토문제와 역사인식의 차이는 정치적 노력과 학문적 협의, 그리고 상호이해에 바탕한 역사교과서의 서술을 통한 역사교육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국 학자들이 협의하여 개정된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민족주의적 편견, 자민족 중심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배제를 통한 새로운 역사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본 논문은 평가하고 있다. 즉, 필자는 갈등과 분쟁이 아닌 소통과 공존이라는 역사해석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필자는 새로운 영토분쟁을 촉발하는 외교적 대립이 아니라 영토주권을 인정하면서 접경지역이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존중과 과거 국민들을 구분하고 분열시켰던 ‘피 흘리는 국경선(Blutende Grenze)’에서 국민들을 연결하는 ‘상호 소통의 장’, 즉 접경지역의 탈민족주의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국 역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 식민지 시기와 세계대전을 겪으며 근대화 시기에 영토 분쟁 및 역사교과서 서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필자의 논문과 같이, 유럽에서 발생한

영토 분쟁 및 역사 서술방향을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 독일과 폴란드 양국은 국경선을 둘러싸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게르만 문화와 슬라브 문화가 중첩된 게르마니아 슬라비카(germania Slavica) 지역에서는 양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통합되어 가는 유럽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참여한 대립을 했던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는 민족주의 시대의 영토분쟁과 관련된 역사분쟁을 평화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으며 높게 평가했다.

필자의 문제제기와 관점은 토론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단, 몇 가지 발표문의 부분적인 서술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필자는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 분쟁 및 역사적 대결이 천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제2장 앞 부분에서는 양국 간에 상공인이나 농민들이 공존하며 살았고 민족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이후 폴란드인에 대한 탄압이 민족주의를 자극하였다는 서술을 하였다.

둘째, 필자의 발표문 175쪽의 서술관점은 전체적으로 제2장의 서술 방향과 맞지 않은 별도의 장으로 보인다. 즉, 발표문 169~174쪽까지 폴란드의 관점에서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가 제기된 과정을 역사적인 배경서술과 함께 세계 강대국들의 제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각종 회담과 연관시켜 서술했는데, 175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유럽에서 발생한 인구이동과 난민 문제, 독일의 나치청산 과거사 문제, 소련과 서방 유럽 국가들의 갈등과 베를린 봉쇄 문제가 나열되어서, 제2장의 서술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다. 또한 175~176쪽에서 언급한 아데나워의 정책과 할슈타인독트린,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각주나 표, 논문 안에서 부가 서술 등으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셋째, 필자의 발표문 제3장은 본 논문의 또 다른 핵심 부분으로 국경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의 역사 문제를 교과 과정에서 서술하는 방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 발표문 180쪽에서 필자는 각주 28 뒤에 “독일 역사교과서는 연합국의 힘의 논리에 의한 영토의 상실에는 별다른 비판 없이 서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독일 역사교과서는 오데르-나이세 강 이동지역 영토상실보다 독일인들의 강제이주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서술했다. 이것은 독일 역사교과서에서, 혹은 이를 둘러싼 독일인의 국경인식 및 역사 문제에서 독일인 강제 이주가 더 문제시되었다는 의견인지? 만약 그렇다면

면 독일인들이 국토 상실보다 독일인의 강제 이주를 더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혔으면 한다.